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後續措置關聯研究

「統一예멘共和國」合意過程事例研究

열람용
(특별 열람실)

國 土 統 一 院

本 研究는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의 後續措置와 關聯한 自体
研究報告書이며 對北政策樹立에 基礎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後續措置關聯研究

「統一예멘共和國」合意過程事例研究



研究執筆 및
刊行責任

金

洪

柱

(調查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統一예멘共和國」合意過程事例研究

〈 要 約 〉

1. 南北예멘의 統合 合意 過程

- 예멘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單一 民族性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北예멘은 1918年 오스만터키로부터, 南예멘은 1967年 英國의 保護領으로부터 각각 獨立 分離된 以後 南예멘은 親蘇 左傾國家로 北예멘은 右傾 正統回教國으로 發展되어 왔음.
- 北예멘의 回教原則에 立脚한 統合主張과 南예멘의 赤化統合 追求 姿勢가 根本적으로 對立되는 가운데 兩國은 '72.11.28 트리폴리 頂上會談에서 統合原則에 合意를 보게 되었음.
- 以後 統合努力과 紛糾가 되풀이 되는 가운데 兩國間에 意見이 조금씩 接近되어 '81.12.2 아덴

頂上會談에서 統合閣僚理事會 構成과 經濟, 教育文化 情報分野에서 統合을 위한 共同推進 方向이 合意되고 그동안 推進하여온 統合 憲法草案이 兩國頂上間에 合意되어 現在 批准을 得하기 위하여 兩國 議會와 政府에 提出되어 있음. ('82.1.9 發表)

2. 統合 合意의 動因 (南北韓과 南北예멘의 統一政策 變數比較 側面에서)

- 이데올로기의 對立, 地政學的 位置에서 오는 美蘇의 競爭的 接近, 그리고 統合을 願하지 않는 強大國의 影響에도 不拘하고 南北對話마저 열리지 않고 있는 南北韓의 狀況과는 달리 兩國이 統合 合意에 이르게 된 動因은 무엇일까?

가. 爭取에 의한 獨立과 강한 民族主義 性向

- 日帝治下 36年과 比較가 안되는 長期間의 外勢의 支配下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鬪爭하였고 이를 土臺로 강한 民族主義 性向을 가지게 되었으며 (特히 反西歐的인 아랍民族主義로 發展)
- 南北예멘은 外勢에 의한 不勞所得的 獨立이 아니라 北예멘은 터키 支配에 대한 反亂을 通하여, 南예멘은 反英 暴動 테러와 유엔의 壓力에 의하여 爭取된 것으로 이와같은 爭取

에 의한 獨立의 結果로 兩國은 外交의 幅을 多樣化 시킬 수 있었고 統合運動을 主體的으로 展開할 수 있었음.

- 特히 南예멘의 獨立은 北韓과 같이 蘇聯의 “ 화차정권 ” (baggage train gov't) “ 占領共產主義 ” 의 產物이 아니라 自生的 共產主義者들이 爭取하였다는 點에서, 政治指導者의 成分, 共產政權의 性格 등이 北韓의 狀況과는 크게 다름.

나. 地政學的 位置 (強大國과의 關係)

- 예멘은 홍해人口를 完全히 掌握할 수 있는 戰略的 要衝地이기는 하나 大陸 勢力과 海洋 勢力이 맞부딪히는 地點이라기 보다는 南예멘의 左傾化를 통한 蘇聯左翼 勢力의 上陸에 대한 사우디등 아랍保守國家의 反撥로 부딪히는 힘의 強度가 우리와는 다르며,
- 예멘은 사우디, 오만 등 親美 아랍保守國家들과 國境을 接하고 있고 蘇聯은 바다를 건너

影響力을 行事하여야 한다는 不利한 立場에
놓여 있으며,

- 北예멘에 대한 後見者는 美國이 아니라 사우
디라는 점, 南·北예멘 共히 사우디의 經濟的
援助와 影響을 받아야 한다는 點에서 우리의
立場과는 相當히 다름.
- 이와 같은 外勢의 影響의 差異가 兩國間의
紛爭과 統合協商이 交替되면서 敵對關係가 漸
次 解消되어 가고 있는 重要な 差異點이라고
보여짐.

다. 外交政策

- 建國後 親美·親蘇(親中共)政策으로 一貫하고
있는 南北韓의 現實과는 달리 南·北예멘은 共
히 反英(反美) 感情을 가지고 있으며,
- 北예멘은 共和政府樹立後 親蘇·親中共政策에서
漸次 親사우디로 轉換하였으나 ('74. 쿠테타 以
後) 아직은 軍事武器의 相當部分이 蘇聯製이며
蘇聯 및 共產勢力과 外交關係를 維持하고 있고

언제든지 親蘇政策을 追求할 수 있으며 美國의 影響이 直接으로 北예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點에서 親美·反蘇로 一貫하고 있는 우리의 現實과는 다르고,

- 左傾國家로서의 南예멘은 左傾化의 原因이 反帝 反植民地 感情에서 스스로 左傾化 되었기 때문에 主體性이 强하며 最近에는 아랍國家와의 關係 改善을 摸索하고 있다는 點에서 (76年 6月 大統領 사우디 訪問) 梗塞된 北韓의 外交 政策과는 差異가 있음.
- 結局 親蘇 對 親美로 對立하고 있는 南北韓과는 달리 右傾中立(多少 親共產) 對 親蘇 非同盟 이라는 點에서 差異가 있음.

라. 同 質 性

- 아랍世界에서는 이슬람教라는 精神的·文化的·社 會的 共通 分모가 內在되어 있어 왕왕 統合運 動이 일어나고 있으며 (58. 이집트, 시리아 合 併外 6件) 兩國은 이러한 共通 分모外에 强

한 民族主義 性向, 單一民族性 때문에 統合 熱
意가 끊어질 수 없고,

- 이슬람 文化의 特殊性으로 128年 동안 東西
아덴 保護領으로 支配한 英國도 法律과 教育制
度を 除外하고는 統治의 遺産을 남기지 못하였
으며,
- 지금 南예멘에 移植되어 있는 막스·레닌 主義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 政治, 法律 등 上部 外形
構造를 除外한 社會·文化的 뿌리는 兩國 共히
同質性を 간직하고 있다는 點에서 異質化되어
있는 南北韓의 現實과는 큰 差異가 있음.

마. 南北關係

- 兩國間에 國境線이 確定되어 있지 않아 往來가
可能하고 兩國間의 國境衝突도 우리의 6.25 와
같이 終局的 勝利와 領土占領을 目的으로 한 總
力戰이 아니라는 點에서 戰爭의 後遺症도 그렇
게 深刻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兩國民間의 敵
對感情도 크지 않으며

- 南예멘은 宗教勢力이 수니파인데 비해 北예멘은 시어파와 수니파가 對立하고 있으나, 南예멘의 宗教的 同志인 北예멘의 수니파가 左傾的 統合熱誠派인데다 國境 地方인 南部地域에 居住하고 있어 서로가 一體感을 느끼고 있음.

※ 이와 같은 南北예멘의 강한 民族主義 性向, 地政學的 位置, 外交政策, 同質性 및 南北關係의 特殊性은 비록 北예멘에서 反政府 게릴라들이 南예멘의 支援을 받아 強力한 테러活動을 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兩國으로 하여금 統合憲法草案에 合意하게 한 動因으로 作用하였음.

3. 우리의 統一政策과 比較

가. 統一政策

(1) 統合目標

- 統一國家의 政治體制는 自由民主體制나 共產主義體制나라는 共存不可能한 이데올로기의 對立이 아니라 赤化統合對 正統回教國固守라는 共存 가능한 目標가 對立되고 있었고, (아랍세계에서는 社會主義 回教國 可能)
- '72.11.28 最初로 兩國間에 合意한 統合原則에서 國家理念을 共和主義, 民族主義, 民主主義로 하고 政治體制를 單一 大統領制, 統合된 議會와 行政府 및 司法府로 合意하였는바, 이는 政府形態上으로는 오히려 3權分立에 基礎한 自由 民主體制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 '82.1.9 南예멘에서 發表된 統合憲法案 要旨에서는 國教를 回教로 하고 立法府를

國民의 選出에 依하여, 行政府를 統合 閣僚評議會로 構成하기로 合意하였는바 이는 北예멘의 正統回教國 固守의 立場이 反映된 것으로서 兩國은 一方의 힘에 의한 統一을 目標로 한 것이 아니라 實質的 平和的인 統合을 追求하고 있음.

(2) 統合推進方法

(가) 協商過程

- 兩國간의 統合問題 合意過程이 紛爭時마다 敵對關係 解消策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72年 트리폴리頂上會談에서 統合原則 合意後 10餘年間 꾸준히 統合實務委員會의 協議가 進行되어 왔고
- 兩國 頂上間的 頻繁한 接觸과 會談을 통하여 合意內容이 조금씩 發展하였으며 트리폴리頂上會談, 쿠웨이트頂上會談등 아랍國家들의 仲介 調整이 統合合意의 發展에 큰 寄與를 하였음.

(나) 統合方法

- 兩國은 72年 트리폴리頂上會談에서 統合 憲法作成, 批准을 통한 平和的인 統合推進에 合意한 後
- '79. 4 쿠웨이트頂上會談에서 憲法 起草委員會 構成 → 憲法草案 兩國首腦承認 → 國民投票 → 國家統合이라는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과 類似的한 統合段階를 追求하고 있으며,
- '81.12 統合을 위한 閣僚會議 構成과 經濟分野에서 連結 道路建設, 農產物 共同販賣機構 設置, 教育文化 情報分野에서 라디오, 텔레비존 共同프로 製作合意(아덴頂上會談)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機能主義的 統合方法을 併行하고 있음
- 특히 아덴頂上會談에서 合意한 “ 兩國協力 및 調整에 관한 協定 ”은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後續措置研究에 시사하는 바가 많음.

(3) 우리의 20 個 示範事業과 比較

- 77.12 카타바 首腦會談, 80.5 아덴 首腦會談의 結果도 機能主義的 統合研究에 參考가 될 것이나 資料가 없어 81.12 아덴 頂上會談의 結果인 “兩國協力 및 調整에 관한 協定” 內容과 우리의 “20 個 示範事業” 만을 比較 하기로 함.
- 協力 및 調整에 관한 協定과 20 個 示範事業의 比較

예멘 協力 및 協定	韓國 20 個 示範事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兩國 聯合公社에 의한 隣接地域에 있어서의 鑛物과 水資源의 共同調査와 開發 ○ 水資源 研究와 農耕地 擴張을 위한 共同研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由로운 共同漁撈 區域 設定 ○ 南北韓 自然資源의 共同開發과 共同利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타바 - 두라인 連結道路 建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 평양간 道路連結

예멘協力및調整協定	韓國 20 個示範事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其他地域의 道路 連結에 關한 研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 텔레비존의 共同 프로 製作과 兩國 同時 放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放送聽取 統制裝置除去로 雙方正規放送 自由 聽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兩國의 弘報機關은 예멘의 風俗과 民族藝術을 說明하고 市民들에게 그들의 祖國예멘을 알게끔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文化의 繼承發展을 위하여 民族史의 共同 研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境에서 共同學校 設置 ○ 隣接한 마을의 便宜를 위해서 共同會合場所 設置 ○ 南北學生으로 하여금 居住地에 가까운 學校 入學 許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武裝地帶內, 共同競技場 施設과 親善競技 ○ 非武裝地帶內 自然生態界 共同學術 調査

예멘協力및調整協定	韓國 20 個示範事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兩國의 農産物 販賣를 위한 共同機構設置에 關한 研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一製造業體間의 技術者交流 및 生産物 展示會 交換 開催 ○ 日用生産品의 交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地域 市民은 兩地域을 往來할 權利를 지닌다. 단, 1980. 6.12 兩側 內務長官사이에 締結된 協定에 包含된 條件에 맞는 身分證을 지녀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의 相逢實現 ○ 海外僑胞 및 外國人 雙方地域 自由 往來

※ 自然 資源의 共同開發과 連結道路 建設은 一致하고 있고 民族史의 保存 共有는 우리와 같은 立場이라 할 수 있음.

4. 南北예멘 統合展望과 그 敎訓

가. 統合展望

- 兩國은 統一國家의 未來像, 平和的인 統一推進 方法, 統合憲法 草案에 合意하였다고 하지만 合意 以上の 具體的 實踐措置는 進行되지 않고 있음.
- 兩國 共히 美·蘇·사우디등에 대한 依存度가 높으며 이들 背後 支援勢力이 急激한 統合을 願하지 않는다는 點, 兩國의 現實的인 當面課題가 國家財政의 補填과 經濟 開發計劃 推進이라는 點, 體制內에 不安要素가 많다는 點에서 實質的인 統合으로 發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展望되나
- 兩國間에 우리의 20個 示範實踐事業과 類似的한 連結道路의 建設등은 政治指導者의 결심 如何에 따라 쉽게 推進될 수 있다고 보여짐.

나. 教 訓

- (1) 南北예멘의 統合合意事例研究를 通하여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이 合理的임을 알 수 있다.
根據：- 統一憲法の 國民投票를 通한 統合 推進
- 兩國 連結道路의 建設과 같은 機能主義的 統合方法 併行(20 個 示範實踐 事業과 類似)
- 頂上會談의 推進등
- (2) 統合推進의 動因은 民族主義며 政治指導者의 統合熱意가 重要하다.
- (3) 外勢의 影響을 中立化시키면서 統合을 推進시킬 수 있는 主體力量이 必要하다.
- (4) 統合目標은 어느 一方의 힘에 의한 “統一”이 아니라 協商을 通하여 共通分母로 接近하는 “統合”이 라야 한다.
- (5) 統合協商은 理由如何를 不問하고 中斷되어서는 안되며 頂上會談이 절실하다.
- (6) 外交의 多變化가 時急하다. (北예멘： 右傾中立 國, 南예멘：親蘇 非同盟強硬國)

目 次

1. 研究方向	19
2. 概 況	20
가. 兩國關係 概要	20
나. 北예멘의 特殊性	21
다. 南예멘의 特殊性	22
3. 地政學的 位置 (強大國과의 關係)	24
가. 地政學的 位置의 變遷	24
나. 南예멘 獨立以前的 國際關係 (英國과 이집트)	24
다. 最近의 國際關係	26
4. 統合推進過程	31
가. 事件進行 過程	31
나. 트리폴리 頂上會談 ('72.11.28)	32
다. 쿠웨이트 頂上會談 ('79. 3.30)	37
라. 아덴 頂上會談 ('81.12.2)	41
마. 統合憲法草案合意 發表 ('82.1.9)	47
5. 우리의 統一政策과 比較	52
가. 政策變數	52
나. 統一政策	57

6. 南北예멘 統合展望과 그 敎訓	65
가. 南北예멘의 統合展望	65
나. 敎訓	67

* 參考資料 *

1. 兩國國力 比較	71
2. 兩國體制 比較	72
3. 北예멘 政治略史	73
4. 南예멘 政治略史	101
5. 兩國關係史	133
6. 南北예멘 協力 및 調整에 관한 協定 ('81.12.2)	156
7. 예멘아랍共和國憲法 (1971.12)	164
8. 예멘人民民主共和國憲法 (1972.5)	199

1. 研究方向

- 南北예멘은 紅海入口를 掌握할 수 있는 戰略的 要衝地로서 美·蘇가 競爭적으로 接近하고 있고 左傾國家와 右傾國家로 分斷되어 紛爭이 持續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統合協商이 간단없이 進行되어 統合合意에 이르게 되었음.
- 南北예멘은 그 地政學的 位置와 이데올로기의 對立이라는 側面에서 南北韓과 類似的한 狀況임에도 不拘하고 마침내 統合合意에 이르게 된 動因이 무엇이며 교착되었던 協商이 어떠한 過程을 밟아 合意를 보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研究의 초점으로 하여
-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南北예멘의 統一政策을 比較하여 어떠한 差異가 있고 統合의 沮害要素와 促進要素가 무엇이 다르고 같은 것일까를 알아내어
- 이와같은 疑問의 糾明을 通하여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後續措置 研究開發의 教訓과 資料를 抽出하고자 하였음.

2. 概 況

가. 兩國關係 概要

- 兩國은 歷史的으로 種族(아랍族), 言語(아랍語), 宗教(回教) 등이 同一한 “힘야라드” 單一國이었으나 6世紀初 “이디오피아” 에 征服된 以來 “오스만 터키” 時代(1583~1918) 에 이르기까지 外勢의 支配下에 있었음.
- 北예멘은 1918年 오스만 터키로부터, 南예멘은 1967.11 英國의 保護領으로부터 各各 獨立하여 2個國家로 分離된 以後 南예멘은 “맘스-레닌” 主義를 標榜, 親蘇 左傾路線을 追求해 오고 있는데 반해 北예멘은 正統回教國의 立場을 固守 사우디와 密着하는 등 右傾性向을 追求해 오고 있음.
- 兩國間에는 政治理念上의 相異에서 基因한 紛糾속에 宗教 社會 등의 同質性을 背景으로 한 統合努力이 浮沈을 거듭해 왔는바, 北예멘은 回教原則에 立脚한 統合을 主張하고, 한편 南예멘은 赤化統一 追求 姿勢를 堅持함에 따라 兩國은 根本的으로 對立하는 가운데 緊張高潮時마다(72年, 79年, 80年, 81年) 相互敵對關係의 解消手段으로서 統合協商을 展開해 오고 있음.
- 兩國은 '72.11 트리폴리 頂上會談에서 統一原則에 合意한 後
'79. 3 合同憲法起草委員會 開催(쿠웨이트 頂上會談)

'80. 5 經濟·安保·通信部門 合同委員會 協力強化
(아덴 首腦會談)

'81.12 統合 閣僚理事會 構成(아덴 頂上會談)에
合意한데 이어 '82.1.9 統合 憲法草案에
合意하기에 이르렀음.

나. 北예멘의 特殊性

(1) 體制의 不安定

- 地域적으로 北部아랍人과 南部아랍人의 葛藤이 있고 執權勢力인 “자이디” 土候勢力과 左傾統合派인 “사파이” 土候勢力이 宗教적으로 “시어”派와 “수니”派로 對立하고 있어 이 나라의 體制의 統合과 近代化를 根本적으로 가로막고 있으며 政權의 安定性 조차도 막강한 土兵을 가진 이들 土候勢力을 어떻게 調整하느냐에 달려있음.
- 體制의 形式은 立憲共和國이나 軍部가 支配하고 있으며 議會는 '74년에 이어 '75年 10月 機能이 재정지되었고 政黨 역시 '74年以後 活動停止 狀態임. 民主化問題를 놓고 사우디 支援의 保守勢力과 南예멘側의 急進派의 對立이 繼續되고 있음.
- 南예멘의 支援을 받고 있는 反政府團體인 民族民主 戰線의 게릴라(5,000名) 活動이 熾烈한 不安定한 社會實情임.

(2) 親蘇國家에서 親사우디國家로 轉換

- 1962年 親蘇 이집트派(共和派)의 軍事쿠데타로 사우디가 支援하는 王政派와 7年間の 內亂을 거쳐(1962~1969) 共和體制가 定着됨. 共和體制의 出發時期에는 武器의 大部分을 蘇聯制로 具備하는등 親蘇, 親中共의 左傾中立國家로서 出帆하였으나 '74年 軍事쿠데타以後 親사우디 아라비아國家로 漸次 變化하여 왔음.
- 年間 政府財政赤字가 35%에 達하지만 이를 거의 사우디아라비아의 援助로 補填하고 있으며, 軍事武器는 아직도 蘇聯製이고, 軍將校 教育은 이집트에서 받는등 심한 外勢依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임.

다. 南예멘의 特殊性

(1) 中東唯一의 마르크스-레닌主義國家

- 建國初의 強穩派의 對立, 親中共派, 親蘇聯派의 對立으로 國政이 매우 不安하였으나 漸次 安定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左傾政府로서의 性格外에 北예멘 要人の 暗殺, 國際테러의 支援과 오만 反政府團體에 대한 支援등 과격한 外交政策으로 隣接 아랍만 國家들로부터 外交的 孤立을 免치 못하고 있음.
- 蘇聯, 北韓 및 共產圈 軍事顧問團의 駐屯, 아덴항등을 蘇聯에 海航空軍基地로 提供, 리비아, 이디오피아와 3國軍事 友好協力條約의 締結등으로 親蘇 左傾國家와 聯合路線을 追求, 蘇聯의 中東包圍 戰略의 重要 고리가 되면서 아라비아 南

端의 緊張의 原因이 되고 있음.

(2) 北예멘과의 統合推進

- 歷史的 傳統性, 人口, GNP 등으로 南예멘 獨立以前에는 北예멘이 統合의 主導權을 가지고 있었으나 獨立以後 南예멘은 그들 體制의 相對的 先進性, 北예멘내에 있는 左傾 急進派 勢力의 活動, 北예멘의 “수니사파이”派와의 宗教的 同志愛등으로 兩國統合을 積極 推進하고 있음.

(3) 經濟構造의 特殊性

- 아덴港의 中繼基地 및 給油基地로서의 役割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英國系 精油工場이 南예멘 工業總生産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其他 産業은 完全 國有化
- 慢性的인 貿易赤字 補填을 위해 年間 約 5,000 萬弗의 財政援助를 蘇聯으로부터 받고 있음.

3. 地政學的 位置 (強大國과의 關係)

가. 地政學的 位置의 變遷

- 수에즈운하의 開通以前에는 아덴港은 홍해와 印度洋을 連結하고 페르사만과 東아프리카海岸의 地方貿易活動의 據點으로서 商業의 要衝地였으나 수에즈운하의 開通과 홍해港路의 再開 (1853)로 아덴港은 東西港海의 要衝地로서 그 重要性이 크게 增加되었음.
- 20世紀初에 들어와서는 給油 給水基地로서 東西港海의 必須地點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란革命과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侵攻以後 부터는 침에 화되고 있는 美·蘇의 中東軍事戰略의 海上 要衝地가 되었음.

나. 南예멘 獨立以前の 英國과 이집트

(1) 南예멘의 英國植民地化

- 1799年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占領하자 英國은 對프랑스 封鎖計劃의 一環으로 이 一帶에 進出하여 1839年 “아덴港”을 占領하고, 수에즈운하開通에 따라 “아덴”港의 戰略的 位置가 增加되자 (1853), 이 地域에 있던 20個 小國家와 保護協定을 맺고 植民地化 하였음 (1882-1914)
- 1次大戰後 새로운 獨立國家로 面貌를 갖춘 北예멘의 “야흐야”이맘 (回教國家의 宗教的 指導者)이 아랍國家의 支援

하에 아덴保護令에 대한 侵入을 繼續하였으며 (1926 , 1956-59) , 1953 年에는 아덴과 그 保護令에 對한 領有權 主張을 유엔에 呼訴하였음 . 이는 外勢에 依해 領土를 強占當하고 있는 分斷國으로서의 당연한 統一運動으로 볼 수 있으며 아랍세계의 支援은 아라비아 地域에서 英國 帝國主義 勢力을 몰아내려는 아랍民族主義의 產物이었음 .

(2) 이집트軍隊 “사나 ” 駐屯 (1963-1967)

- 이집트의 나세르 아랍民族主義 (親蘇傾向) 가 北예멘에 上陸하여 內亂을 일으키고 (1962) 공화파를 支援하기 위하여 사나 (北예멘의 수도) 에 駐屯한 이집트軍隊는 다시 南예멘의 反英獨立運動에 강한 影響을 미쳤음 .
- 이집트는 아라비아반도에서 英國勢力을 몰아내기 위하여 공화파를 支援하고 英國은 아덴保護令을 固守하기 위하여 , 사우디는 공화파의 좌익 共和主義의 擴散을 防止하기 위하여 王政파를 支援함으로써 內亂은 長期化 되었음 . (1962-69)
- 親蘇 國家이던 이집트의 影響으로 左翼思潮과 아랍民族主義 , 反英國主義가 植民地解放을 念願하던 南·北예멘에 影響을 미쳐 北예멘은 일찍부터 中共 , 蘇聯과 國交를 開設 , 손을 잡았고 (1956) 南예멘은 獨立과 더불어 좌경國家로 되었음 .

(3) 南예멘의 獨立 (1967)

- 英國으로부터의 南예멘의 獨立은 英國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北예멘의 軍事的 壓力, 南예멘內에서의 激烈한 反英테러와 暴動, 유엔總會議決 (1963.12) 등의 國內外的 壓力에 기인한 것임.
- 獨立直前에는 강온파의 激烈한 對立 戰鬥을 거쳐 온건파인 NLF 勢力이 勝利한 狀態에서 獨立을 하였지만 이 勢力도 漸次 강경파에 밀려 사라지게 되었음.
- 南예멘 獨立當時만해도 南北예멘은 모두 親蘇, 親中共國家였으며 그들의 獨立역시 反植民 鬪爭의 產物이었다는 點에서 共通性を 지니고 있어 兩國間의 統合論議는 解放以後의 南北韓 分斷 狀況보다 훨씬 더 가열될 수 밖에 없는 특색을 지니고 있음.

다. 最近의 國際關係

(1) 北예멘의 親 사우디化

- 62.9 北예멘의 親蘇軍事 쿠데타를 契機로 사우디아라비아가 北예멘의 王政파를 支援함으로써 外交關係가 斷絶되어 오다가 (1962) 74.6 “하마디” 前大統領이 軍事 쿠데타로 執權한 後 脫蘇, 親사우디 政策을 追求하면서 兩國間에 外交關係가 再開되고(75.5) 그 以後부터 兩國間에는 協力關係가 增進되어 왔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立場에서는 北예멘의 左翼思潮의 擴散을

防止하고 北예멘의 對蘇接近을 견제함으로써 同地域에 對
한 共產勢力의 浸透可能性을 排除하는 한편

- 아랍만 國家協力會議 (GCC) 를 통한 페르샤만地域 集團安
保를 構築하고, 北예멘을 비롯한 수단, 소말리아, 요르단등
과 함께 “ 홍해 安保體制 ” 를 構築하려는 長期的 포석의
一環으로 北예멘에 대한 軍事經濟援助를 繼續하고 있음.
- 사우디의 對北예멘援助 內譯

年 度	內 容
1975	○ 道路建設 및 財政支援 : 2億 7,300 萬弗
1976	○ 病院建設 및 製藥會社建設支援 : 1億 7,000 萬弗
1977	○ 北예멘 經濟開發 (76-80) 支援 : 5億 7,100 萬弗 ○ 治安 및 國防裝備 提供 : 未 詳
1978	○ 財政支援 : 1億 5,000 萬弗
1979	○ 財政支援 : 7,000 萬弗 ○ 武器導入資金 支援 : 1億弗
1981	○ 財政支援 : 800 萬弗

(2) 南예멘의 親蘇化

- 南예멘은 獨立과 더불어 中東唯一의 左傾政權을 樹立하고
68.8 蘇聯과 軍事技術 協力協定을 締結한 後 “ 아덴 ”,
“ 소크트라 ” 港을 蘇聯海軍艦艇 기항지로 提供 (1975) 한
데 이어, 1979. 10 準軍事同盟의 對蘇友好協力條約의 締結
과 81. 8 南예멘, 리비아, 이디오피아간의 3國 友好協力

條約의 締結을 通하여 蘇聯의 對 中東아프리카 浸透를 위한 교두보적 役割을 擔當해 오고 있음.

- 蘇聯의 立場에서는 南예멘을 中東의 “쿠바” 화하여 “오만” 및 北예멘 등지에 共產勢力 浸透를 強化하고 이러한 물결을 사우디, 아랍 托후국 聯邦에도 波及시켜, 中東 全域의 不安을 造成시키면서, 리비아, 이디오피아, 南예멘軍事同盟을 利用, 紅海入口를 完全히 掌握하려 하고 있음.
- 蘇聯의 南예멘內 軍事力 增強 動向

○ 78. 6	蘇聯의 南예멘內 軍事基地 建設에 관한 秘密協定 調印
○ 80. 1	蘇聯, 南예멘에 MIG-25 機 2 個 中隊配値 및 아덴港에 核潛水艦 保護施設 建設
○ 81. 7	蘇聯, 南예멘 - 오만 國境地域에 미사일基地 建設

- 蘇聯의 南예멘 駐屯現況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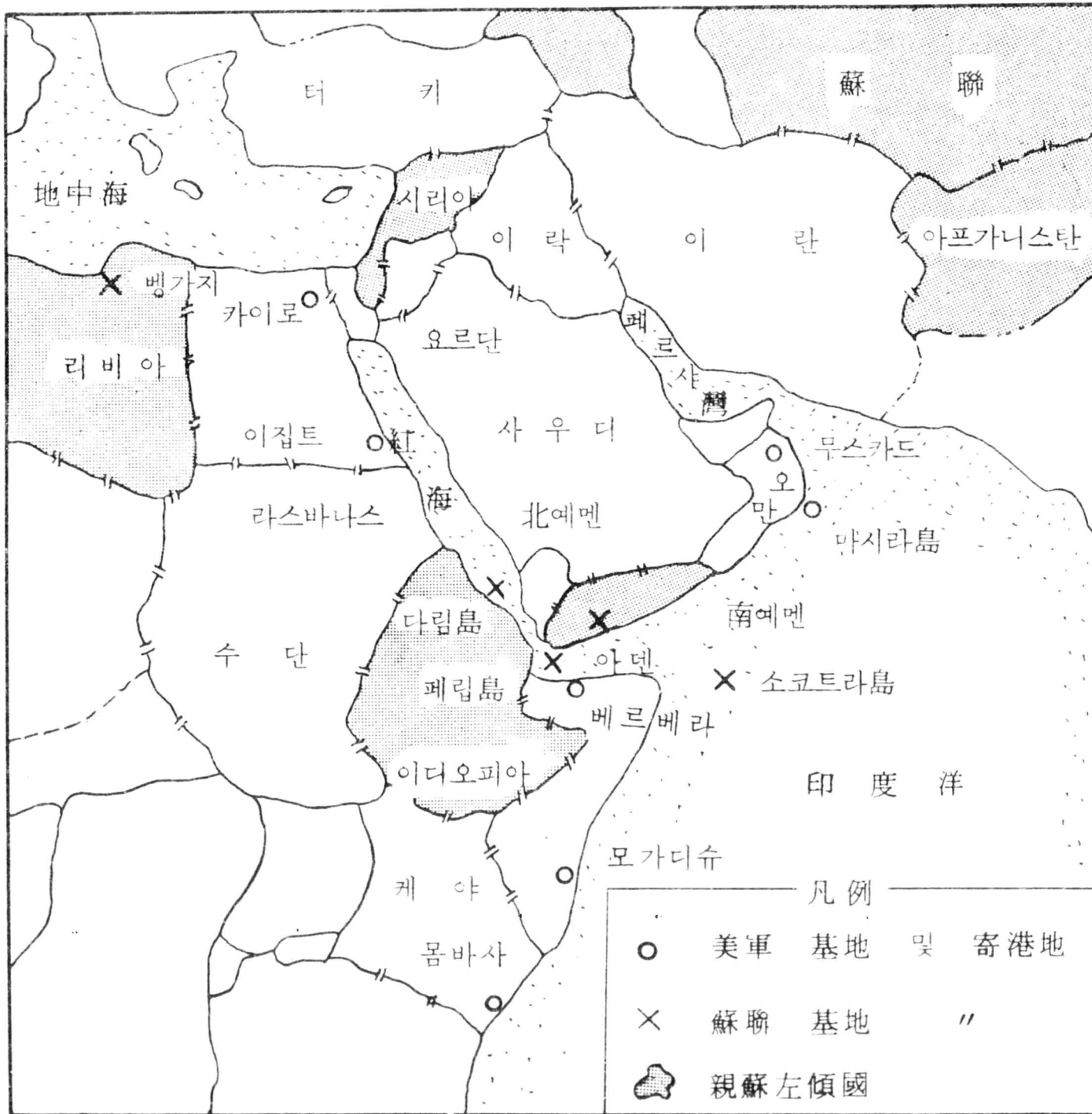
位 置	兵力數 및 裝備數	備 考
소 크 트 라 도	2,000 名	레이다技術要員
아 덴 海軍 基地	1,500 名	蘇聯의 印度洋 艦隊
코르막사르 空軍基地	戰鬥機 50 臺	

(3) 美·蘇의 對決

- 蘇聯의 中東包圍戰略에 對處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 美國의 共同立場에 따라 北예멘의 親사우디化는 美國의 對 中東戰略의 일익을 擔當케 되었음.

○ 同地域에서 사우디 - 요르단 - 수단 - 이집트 - 소말리아 - 오만 - 케냐로 이어지는 美國의 中東戰略과 아프가니스탄 - 남예멘 - 이디오피아 - 리비아 - 시리아로 이어지는 蘇聯의 中東包圍戰略이 날카롭게 對立되고 있음.

○ 中東阿地域 美·蘇 軍事基地 및 기항지 現況圖



* 圖表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美·蘇의 中東海上作戰이 南예멘을 中心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蘇聯의 海空軍基地가 南예멘에 依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아덴항, 소코트라섬, 페림섬)

(4) 南・北예멘의 親 아랍化

- 兩國 共히 아랍民族主義에 精神的 뿌리를 같이하고 있고 사우디, 오만등과 國境을 接하고 있으며 아랍保守國家들로 부터 經濟的 援助가 必要함에 따라 아랍圈에로의 復歸의 길을 열어 놓고 있음.

(北예멘 : 아랍만 國家會議에 加入 希望)

(南예멘 : ○ 사우디 援助同意 (1976)

○ 모하메드 大統領의 사우디訪問 (80. 6.28)

- 이와같이 아랍세계의 影響은 (특히 사우디) 北예멘을 親사우디로 轉向하였고 (74. 쿠데타) 南예멘의 親蘇政策에 제동을 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兩國의 國內政治, 統合運動에 影響을 미치고 있음.

4. 統合推進過程

가. 事件進行過程

- 1972.
 - 國境衝突 (9.26)
 - 카이로 會談 (10.28)
 - 兩國軍隊撤收 및 兩國統合會議
 - 1年以內 統一憲法 草案作成을 爲한 兩國 特別 委員會 開催
 - 트리폴리 頂上會談 (11月)
 - 國家理念등 統合原則 合意
 - 73年末까지 統合實現을 爲한 實務委員會 發足 合意
 - 同委員會 活動
- 1973.
 - 카타바地域 國境衝突 (5月)
 - 사나 頂上會談 (統合推進期間 1年間 延長)
- 1976.
 - 南北예멘 相互 영공폐쇄 (11.29)
- 1977.
 - 카타바首腦會議 (12月)
 - 外務, 經濟, 通産相으로 構成되는 統合特別委員會 設置合意
 - 同會議를 “사나”와 “아덴”을 번갈아가며 6 個月마다 會議開催
 - 兩國 經濟, 通産 小委員會 設置

- 1979.
 - 베이 다 . 카타바 地域 國境 衝突 (2 月)
 - 쿠웨이트 頂上 會談 (3 月)
 - 休戰 및 統合 原則 合意
 - 合同 憲法 起草 委員會 開催 合意
 - 살레 北예멘 大統領을 統合 國家 원수로 推薦
- 1980.
 - 아덴 수뇌 會談 (5 月)
 - 經濟, 安保, 通信 部門 合同 委員會 協力 強化 및 統合 推進 繼續 合意
 - 情報, 文化 등에 關한 3 協定 締結
- 1981.
 - 北예멘 民族 民主 戰線 反政府 鬭爭 激化 (8 月)
 - 쿠웨이트 頂上 會談 (11 月)
 - 兩國 關係 改善 및 統合 推進 再 確認
 - 아덴 頂上 會談 (12 月)
 - 統合을 爲한 閣僚 理事會 構成 合意
- 1982.
 - 統合 憲法 合意 發表 (南예멘 1.9)

나. 트리폴리 頂上 會談 (72.11.28)

(1) 1972 年 9 月 26 日 兩國 戰鬭 발발과 그 背景

- 南예멘은 建國 初期에는 除去된 FLOSY 勢力과 南아라비아 聯盟의 殘存 勢力이 北예멘과 사우디의 支援을 받아 國境 地域에 시 繼續 도발하는 바람에 이들로부터 끊임없는 괴로움을 당했으며 70 年에는 “ 루바야 ” 大統領이 中共 訪問後 親中共으로 政策 調整을 하려고 하자 친소파인 “ 이스마일 ” 서기장

과 深刻한 權力鬭爭을 벌리게 되었음.

(* FLOSY 勢力 : 北예멘에 주둔하고 있던 이집트군의 支援下에 南예멘 내에서 테러 등 과격 反英運動을 하던 急進左翼 勢力)

- 72年初에 이들 反政府勢力이 國境地域에 集結하자 72.4.11. 南예멘軍이 선제공격하게 되었음. 9月の 大規模 戰鬪도 이러한 情勢와 脈絡을 같이 하고 있었으며 이들 戰鬪는 領土의 占領과 종국적 勝利를 目標로 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政략적인 戰鬪였음.

(2) 會談開催過程

- 72年9月26日 國境衝突後 10.28 “아이니” 北예멘 首相과 “하사니” 南예멘 首相이 카이로에서 정전 促進을 위한 아랍國家 頂上會談을 갖고 兩國間의 統合에 合意한 以後 11月 트리폴리에서 兩國頂上間에 會談이 開催됨.
- 카이로 會談合意 內容
 - 兩國軍隊 撤收
 - 兩國 統合과 1年以內 統一憲法 草案作成을 위한 兩國 特別委員會 開催

(3) 트리폴리 頂上會談合意 內容

(가) 合意內容

- 國 號 : 예멘共和國
- 首 都 : 사나 (北예멘首都)

- 國家理念：共和主義，民族主義，民主主義
- 政治體制：單一大統領制，統合된 議會와 行政府 및 司法府
- 期 間：1年以內 統合

(나) 特 徵

- 首都를 “사나”로 하였음은 人口，國力，歷史的 傳統性에 있어서 北예멘이 民族的 傳統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國家理念을 共和主義，民族主義，民主主義로 함은 後進新生 獨立國家로서의 理念에는 異意가 없겠지만，共和體制로의 履行에 反對하는 왕정과 및 토후勢力과 共和派가 權力鬭 爭을 벌리고 있는 北예멘의 狀況을 考慮해보면 統合合意에 共和派와 南예멘의 정략이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도 있음.
- 政治體制는 形態上으로는 3權分立에 基礎한 自由民主體制 形態와 類似한 것으로 이는 비록 尙景국가이지만 英國의 支配下에서 教育과 法律制度를 익힌 南예멘의 法治主義 認識이 反映된 것으로 보임.
- 1年以內에 統合하기로 서두른 點도 北예멘의 共和派와 南예멘의 정략의 產物로 볼 수 있으며 FLOSY 勢力의 弱 化에 큰 寄與를 하였으리라고 보여짐.

(4) 統合原則 合意背景

(가) 緊張解消의 必要性

- 緊張의 直接的 原因이 사우디와 北예멘의 支援을 받는

殘存勢力이 南예멘의 國境地域에서 蠢動하고 있다는데 있었지만 兩國의 國力自體가 戰爭을 長期的으로 끌 수 없음을 뿐더러 南예멘의 國內 政정이 不安하고 아랍聯盟의 瓦解압력이 대단하였음.

(나) 統合合意의 動因

1) 北예멘 側에서의 動因

- 南예멘의 獨立以前까지 아덴과 그 保護傘에 對한 領有權 主張을 되풀이 하여온 國民의 統合熱意와 우경중립적이고 反外勢的(반서구적)인 外交政策 基조위에 모스크바 駐在 대사를 지낸 統合派인 “아이니” 首相이 政국을 주도하였다는 點과
- 蘇聯-이집트(나세르)-공화파勢力으로 連結되는 용공적 民族的 政신사조와 南예멘에서 浸透하여온 좌익 성향, 南部地域을 掌握하고 있는 “수니사파이” 部族의 勢力의 影響등에 基因한 것임. (수니사파이파 : 좌익 성향이며 統合에 熱誠的임)

2) 南예멘 側에서의 動因

- 除去된 FLOSY 勢力과 南아라비아 聯盟勢力들의 힘을 弱화시킬 뿐만 아니라 北예멘의 廣範圍하게 퍼져있는 좌익 성향, 공화파와 왕정파의 勢力다툼, “자이디” 파와 “수니사파이” 파간의 葛藤등을 深化시키므로써 北예멘으로부터의 威脅을 減少시킬 수 있는 戰術的 利得이 컸으며,

- 自生的 共產主義者들에 의한 鬭爭의 產物로서 獨立되었기 때문에 建國初인 當時에는 蘇聯, 中共 등 外部強大國의 影響이 國政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한편으로 統合에 對한 國民的 열망과 政治指導者들의 統合熱意가 北예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컸기 때문임.

(5) 統合合意의 結果

- 統一國家의 國家理念이 共和主義, 民主主義로 됨에 따라 왕정과 및 토후들의 반발이甚하게 나타나 北예멘에서는 共和派며 統合派인 “아이니”首相이 解任되고 왕정파로서 共和體制로의 履行과 統合에 消極的인 “하자리”首相이 執權케 됨. (72.12.30)
- 統合의 期待속에 새 政治組織인 “예멘 聯合”(Yemen Union)이 사나에서 結成되는 등(73.2) 北예멘의 統合熱氣가 높았으나 兩國間의 統合會議만 繼續되었을 뿐 그後 별다른 進展은 없었음.
- 兩國間에는 73.5月末 小規模 國境衝突 事件이 일어났고, 北예멘에서는 5.30 大統領評의회 會員이며 實力者인 “알 오트만” 토후가 南예멘의 자객에 의하여 被殺되는등 統合問題와 關聯된 騷擾가 빈발하였음.
- 이와같은 政治的 混亂때문에 兩國은 1973.9 사나에서 兩國 頂上間에 統合推進期間을 1年으로 延長하는데 合意하게 이르게 됨.
- 結果的으로 트리폴리 頂上會談의 結果는 北예멘의 政局만 混亂시키고 勢力間의 葛藤을 深化시키기만 하였음.

다. 쿠웨이트 頂上會談(1979.3.30)

(1) 會談開催 變更

- 78.6月 南예멘 大統領 특사에 依한 北예멘의 “가쉬미” 大統領의 暴死事件으로 北예멘에서는 親 사우디파인 살레 中領이, 南예멘에서는 親소파인 “이스라엘” 書記長이 執權 하게 되었음
- 南예멘은 北예멘의 反政府團體인 民族民主戰線 게릴라들을 사주하여 北예멘에서 테레活動을 強化시켜 오던中 79.2月 에는 南예멘政府군이 北예멘의 民族民主戰線 게릴라와 합세 하여 北예멘의 國경도시를 攻撃하였음.
- 동戰爭은 美國과 사우디아라비아를 緊張시켰고(사우디: 全軍非常) 아랍聯盟이 介入하여 79.3.30 쿠웨이트에서 兩國 정상간에 休戰 및 統合原則에 合意하게 되었음.

(2) 會談合意 內容(要旨)

(가) 合意要旨

- 統一國家 憲法起草를 爲한 委員會를 構成하여 이를 爲한 起草作業을 4個月 以內에 完了토록 한다.
- 上記 起草作業이 完了된 時點에서 兩國首腦가 會談을 갖고 동 草案을 承認한다.
- 동 首腦는 同憲法의 贊反을 듣는 國民投票 및 統一立法部 設置를 爲한 閣僚委員會를 設置한다.
- 兩 首腦는 雙方의 首都에서 每月會議를 召集하여 憲法

起草委員會의 作業狀況과 其他 委員會의 會議結果를 檢討한다.

(나) 特 徵

- 72.11 카이로 會談에서 合意한 統一憲法 草案作成을 爲한 兩國 特別委員會 開催合意가 發展되어 憲法作成 → 兩國首腦承認 → 國民投票實施 → 統合이라는 統一過程이 確定되었다는데 큰 意義가 있음.

(3) 統合合意 背景

(가) 當時의 兩國의 國內外 情勢

1) 北예멘 國內情勢

- 공화파 - 統合파로 이어지는 勢力에 對해 왕정파 - 사우디 - 토후勢力間에 갈등이 심화되어 잇달은 쿠데타, 暗殺事件이 發生하였고 南예멘의 支援을 받은 反政府團體인 民族民主戰線 게릴라의 破壞活動과 南예멘의 介入한 10月の 쿠데타 미수事件等으로 政局의 不安이 加重되고 있었음.

2) 南예멘 國內情勢

- 75年 아덴항과 페림섬등을 蘇聯의 海·空軍기지로 提共한 데 이어 79年 親소파 “이스마일” 書記長의 權力掌握과 蘇聯, 쿠바, 東獨, 北韓의 軍事고문관의 주둔으로 軍事力의 增大와 親蘇政策이 強化되고 있었음.
- 北예멘은 정국不安과 軍事力의 增強을 바탕으로 南

예멘은 兩國 統合運動의 主導權을 掌握, 北예멘에 對한 政治공세를 加重시키고 있었음.

3) 國際情勢

- 美國은 이란 王政體制이 崩壞에 따라 地域安保를 爲해 사우디, 수단, 北예멘, 이집트로 이어지는 아랍 온건體制 強化를 모색하고 있었고, 蘇聯은 南예멘을 기점으로 하여 “아라비아” 半島浸透戰略을 強化시키고 있었음.
- 79年2月の 戰爭의 性格自體가 美·蘇 強大國의 배후 支援下에 遂行되는 대리戰으로서 어느 한 國家도 一方的으로 攻擊할 수 없는 狀況이었음

(4) 統合合意의 動因

(가) 統合協商의 進展 (77.2 카타바 首腦會議)

- 72年 統合合意 後 兩國間에 統合協商과 分爭이 교차되어 進行되어 오던중 77年2月 카타바 首腦會議에서 外務·經濟·통산상으로 構成되는 特別委員會 開催에 合意한데 이어 兩國 經濟·통산 合同소위원회가 設置되는 등 兩國間의 統合協商이 進一步 하였음.

(나) 北예멘

- 政權의 基盤이 사우디에 기울면서 急激한 統合을 원하지 않는 사우디 立場이 統一政策에 影響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 南北地域의 “수니사파이” 과의 統合熱意가 아직도 대단하고 兩國 공히 統合協商을 中斷할 國內的 名분이 없다는

점과 政治指導者들의 統合熱意가 아직도 多小 남아있다는 점 등에 기인

- 반서구의인 아랍 특유의 저항의식外에도 양국공히 식민지 歷史를 거치는 가운데 形成되어온 反外勢的인 民族主義的 기질이 統合論議의 精神的 基盤으로 作用

(다) 南예멘

- “이스마일”大統領 自身이 北예멘 出身인데다 統合熱意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으며 北예멘의 南北地域에 있는 “수니사파이”파들의 統合熱意를 外面 할 必要가 없었고
- 統合의 主導權이 南예멘으로 넘어온 情勢下에서 北예멘을 교란시킬수 있고 뿐만 아니라 統合合意가 大統領의 치적 으로 될 수 있었음.

(5) 統合合意 結果

(가) 사우디의 軍事援助 中斷

- 統合原則에 合意한 쿠웨이트 頂上會談(1979.3.30)에 不滿을 느낀 사우디가 軍事援助를 中斷하자 北예멘은 南예멘이 蘇聯과 20年間 友好協力 條約을 締結(79.10)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다시 蘇聯에 接近하여 武器去來를 하였고(79.11) 80.4월에 다시 사우디가 軍事援助를 提供하여 蘇聯과의 武器去來가 中斷되었음.
- 이는 마치 北韓이 中·蘇 양다리 外交를 하듯 北예멘도 蘇聯, 사우디 양다리 外交를 할 수 있고 蘇聯이 南예멘

北예멘에 競爭적으로 接近하려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나) 南예멘의 大統領 辭任 (80.4.23)

- 北예멘 出身으로서 親소강경파인 “이스마일” 大統領도 蘇聯의 信任을 얻지 못해 辭任하고 조기 統合反對論者인 “무하마드” 大統領이 就任하였음.
- 이는 南예멘에서 北예멘出身의 숙청과 早期統合反對論者의 勝利이며 蘇聯의 입김이 南예멘의 權力鬭爭에 깊이 介入하고 있는 2 번째 事例가 됨 (첫 번째는 78.6 親中共化하려던 루바야 大統領의 처형과 이스마일서기장의 權力掌握)

(다) 統合運動의 소극성

- 兩國공히 統合原則에는 合意했으면서도 南예멘은 적화統合을 추구, 北예멘내 反政府 게릴라 勢力인 民族民主戰線 (5,000名)을 繼續 支援하고 있는데 대해, 北예멘은 “이슬람”教를 原則으로한 統合을 主張, 南예멘을 繼續 견제하면서 統合을 爲한 具體的 實踐措置를 取하지 않고 있었음.

라. 아덴頂上會談 (12.2)

(1) 會談開催 背景

- 80.4.23 조기 統合 反對論者인 “무하마드”가 南예멘의 大統領이 就任하면서 80.5, 81.8월에 民族民主戰線 게릴라와 北예멘軍과의 鬭爭이 激烈해진 가운데 81.8.19 南예멘은 리비아, 이디오피아와 3國軍事우호條約을 締結하여 統合

展望에 對기를 박는 한편

- 戰鬪 以後의 敵對關係 解消策으로 81.9.15 사나頂上會談이 開催된데 이어 11月 쿠웨이트 頂上會談에서 兩國의 關係改善과 統合推進을 再確認하고 다시 12.9 아덴에서 兩國頂上間에 “南·北예멘 協力 및 調整에 關한 協定”이 締結되었음.

(2) 會談合意 內容(協定要旨)

(가) 兩政府의 調整에 關한 問題

- 兩政府의 大統領으로 構成되는 評議會(예멘評議會)를 構成하고, 이 會議의 指示事項을 實踐할 兩國連席閣僚會議와 兩會議를 運營할 秘書局을 設置
- 예멘評議會는 6個月에 한번씩 定期的으로 開催하며 連席閣僚會議는 3個月에 한번씩 開催

(나) 經濟問題

- 兩國의 經濟, 社會開發計劃을 調整하고 兩國聯合公社에 依한 地質 및 水資源 分野의 共同調査와 開發
- 兩國의 農業指導 方法과 機構의 統合
- 兩國의 農產物 販賣를 爲한 共同機構의 設置
- 카타바 - 두라인 連結道路 建設推進
- 國境마을의 便宜를 爲한 共同會合 場所設置等

(다) 教育, 文化情報에 關한 問題

- 國境에 共同學校 設置
- 南北예멘 學生의 居住地에 가까운 學校 入學許可

- 兩國間에 文化, 教育情報 委員會를 設置하여 社會教育에 關한 校科內容 마련 및 教育科目 統一
- 라디오, 텔레비존의 共同프로 製作과 同時 상영등

(라) 相互往來에 關한 問題

兩國의 市民은 서로 兩地域을 往來할 權利를 지닌다.

(마) 外交政策에 關한 問題

- 팔레스타인 運動에 關하여 兩側의 立場과 行動을 統一 시킨다.
- 帝國主義와 시온主意에 對抗한다.
- 外國 軍事기지設置에 反對하고 外國軍 주둔을 排斥한다.
- 內部問題에 影響을 줄 모든 政治的, 軍事的 블럭 및 協定에 反對하며 非同盟運動을 支持한다.

(3) 統合合意 背景

(가) 兩國의 國內外 情勢

1) 北예멘情勢

- 東南部 國境地域에서 “民族民主戰線”의 反政府 武力 鬪爭激化(81.8) 및 군부쿠데타 미수사건(9.5) 등의 發生으로 政局不安이 高潮되자
- “살레”大統領이 蘇聯(10.26 - 28)을 비롯한 알제리아(10.28 - 29), 시리아(10.30 - 11.1)等 左傾 아랍諸國을 巡訪, 南예멘과의 和解 可能性을 摸索하고 있었음.

(나) 南예멘情勢

- 慢性的인 貿易赤字 (79年 3億 5,000萬弗)를 補填하고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79 - 83年 總投資 12億 4,400萬弗)을 持續적으로 推進하기 爲해서는 “사우디”等 페르샤만 온건 아랍諸國들의 經濟的 援助가 必要함에 따라 사우디가 支援하고 있는 北예멘과의 關係改善이 必要하여 “모하마드”南예멘 大統領이 80. 6月 사우디를 訪問한데 이어 同地域 보수王國인 쿠웨이트 (11.1-2), 바레인 (11.13-14), 카타르 (11.14-15), 아랍토후국 (11.15-16)等 페르샤만 4個國을 巡訪한 바 있음.
- 北예멘이 追求하고 있는 아랍만 國家會議 (GCC) 加入을 事전에 防止하여 自國의 安保的 危脅增大를 解消할 必要性에 當面하고 있었음.

(다) 쿠웨이트 會談 (11.23) 開催

- 쿠웨이트에서 兩國 頂上間에
 - 北예멘內 反政府 게릴라勢力인 “民族民主戰線”에 對한 南예멘 支援 中止問題
 - 그동안 據論되어 왔던 兩國간의 統合努力再開 問題
 - 現在 쿠웨이트 오만等 페르샤만 연안 6個 보수王政國들이 創設한 (5.26) 아랍만 國家協力會議 (GCC)가 追求하고 있는 美·蘇 強對國의 中東地域에 對한 軍事力 介入 배제 問題等を 協議

(라) 統合合意 內容의 進一步

1) 80.5 아덴首腦會談

- 80年5月 아덴首腦會談에서 經濟, 安保, 通信部門 合同委員會의 協力強化와 情報, 文化等에 關한 3協定 締結을 通해 兩國間의 統合論議가 具體的 協議段階로 發展

2) 81.12 아덴頂上會談

- 80.5月の 아덴首腦會談이 發展되어 81.11.2 아덴頂上會談을 開催하고
 - 統合까지의 兩政府 조정機構로서 大統領評議會(예멘評議會)를 設置하고 그 實踐機關인 兩國 연석閣僚會議의 組織과 機能을 設定하며 兩會議를 準備 運營할 秘書局을 設置
 - 經濟分野에 있어서는 聯合公社에 依한 地質, 水資源分野의 開發, 農產物 共同販賣 機構設置, 連結道路建設의 推進等に 合意
 - 教育, 文化情報 分野에서는 國境地域의 共同學校 設置, 라디오, 텔레비존의 共同프로 製作等に 合意 함으로써 形式的인 統合論議가 아니라 實質的으로 언젠지 實踐될 수 있는 制度를 裝置하였다고 볼 수 있음.

(마) 統合合議의 동인

- 急進的인 統合을 援하지 않는 사우디와 蘇聯의 影響에도 不拘하고 兩國은 오랜 期間 外勢와의 抵抗을 통해 形成된 民族主義的 基盤을 共通으로 하고 있고
- 北예멘은 蘇聯 및 左傾 아랍諸國과 關係改善을 하고 南예멘은 經濟的 援助, 아랍國家와 國境을 接하고 있다는 點等 때문에 보수 아랍國家와 關係改善을 함으로써 兩國 공히 統合을 둘러싼 國際的 摩擦을 中和시킬 必要가 있었으며
- 그동안 統合論議가 斷切되지 않고 繼續되어 오면서 조금씩 發展되어온 兩國의 統合 “무드”에 起因된 것이 었음.

마. 統合憲法草案合意 發表 (82. 1. 9)

(1) 合意背景

- 81.12. 2 아덴頂上會談에서 兩國協力 및 調整에 關한 協定이 締結된데 이어 82. 1. 9 南예멘 最高人民評議會 幹部會議 議長 “ 압둘라 가님 ” 은 “ 兩國은 統一예멘共和國으로 統合키 爲한 憲法草案에 合意했으며 同 憲法草案은 비준을 獲得하기 爲하여 兩國政府 및 議會에 提出되어 있다 ” 고 發表

(2) 統合憲法 草案要旨

- 國 號 : 統一예멘共和國
- 首 都 : 現 北예멘 首都 사나
- 國 教 : 이슬람교
- 立 法 府 : 兩國民들이 選出하는 議員들로 構成
- 行 法 府 : 統合 閣僚評議會 構成

(3) 特 徵

(가) 統合憲法合意 過程

- 72.11.28 트리폴리頂上會談에서 統合原則에 合意한 後 79. 3.30 쿠웨이트 頂上會談에서 統合憲法作成 節次의 合意로 發展하였다가 82.1.9 統合憲法草案 合意發表에 이르게 되었음.

(나) 最初의 統合原則과 統合憲法 草案合意內容上的 比較

트리폴리統合原則 (72.11)	統合憲法 草案要旨 (82.1.9)
○ 國號 : 예멘 共和國	○ 國號 : 統一예멘 共和國
○ 首都 : 사나	○ 首都 : 사나
○ 國家理念 : 共和主義, 民族主義, 民主主義	○ 國教 : 이슬람교
○ 政治體制 : 單一大統領制 統 합된 議會와 行政府 및 司法府	○ 立法府 : 兩國民들이 選出하 는 議員들로 構成 ○ 行政府 : 統合閣僚評議會 構成
○ 期間 : 1年以內 統合	

* 統合憲法 草案要旨만 入收

(다) 內容分析

1) 國 教

- 72.11 月에 合意한 統合原則 內容中 國家理念인 共和主義, 民族主義, 民主主義의 規定이 削除되고 國教를 回教로 規定
- 이는 그동안 南예멘의 赤化統合 主張을 國教인 回教로 繼續 견제하여온 北예멘의 主張이 反映된 것으로서 急激한 共和體制로의 履行이 不可能한 北예멘의 現實과 사우디 등 아랍보수국으로부터 經濟的 援助를 期待하지

않을 수 없는 남예멘의 현실이 타협되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2) 政治體制

- 大統領制에 對한 言及이 없고 立法府를 兩國民들이 選出도록 한 것이 特徵的임. 이로써 議會主義가 採擇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北예멘에 對해 政治의 民主化 促求 壓力要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72年의 統合原則合意內容 보다는 統合推進日程에 相當한 여유가 있게 되었음 (의회구성을 統合議會에서, 兩國民의 選出에 依한 構成으로 變更)

3) 期 間

- 期間의 명시가 없다는 點에서 統合日程은 留保되었다고 볼 수 있음.

(4) 統合展望

- 南예멘側의 一方的 發表만 있었을 뿐 同憲法內容이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 批准이 되지 않았음.
- 實質的 統合의 어려움
 - 兩國間에 根本적으로 對立되고 있는 政治理念의 調整이 難望시 되고 있고.
 - 同 憲法草案 合意도 北예멘側의 內政不安에 따른 對南예멘 화해 必要性和 南예멘側의 사우디등 대온건 아랍關係 改善 및 北예멘의 G.C.C. 加入 거지등의 必要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兩國 共히 美·蘇·사우디등에 對한 依存도가 높아 이들 배후 支援勢力의 影響力이 크게 作用할 것이 라는 點과
- 아랍圈에서 頻번히 推進되어 온 國家 統合運動이 이집트와 시리아間의 一時的 統合 (58.2 - 6.18) 以外에는 實質的 統合이 實現된 先례가 없다는 點등을 勘案하여 볼 때, 早速한 時日內에 實質的인 統合으로 發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展望됨.

* 아랍諸國의 統合推進事例

統合對象國	推 進 動 向
애급, 시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2 兩國合併 (U.A.R) ○ 61.9 시리아 이탈
리비아, 애급, 시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4 3個國 首腦, 政治的 統合을 推進시키기 위한 協定締結 ○ 71.10 아랍共和國 연방결성 發表 (U.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급, 이스라엘 平和協商推進關係로 유명 무실화
리비아, 애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8 統合推進計劃 合意 ○ 72.9 合併을 爲한 3個 基本文書 調印 ○ 73.8 兩國統合節次令 聲明

統合對象國	推 進 動 向
리비아, 튀니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 1 統合協定 聲明
리비아, 시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9 統合原則 合意 ○ 80.12 合併作業 監視 革命司令府와 統合國 政治構造研究 4人委員會 構成
리비아, 차 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6 相互防衛協定 締結 ○ 81. 1 兩國統合 共同聲明 發表
시리아, 이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 9 聯邦案 討議 ○ 79. 1 聯邦原則 合意 ○ 79. 6 統合國家 構成原則 合意

5. 우리의 統一政策과 比較

가. 政策變數

(1) 單一民族性과 民族主義 성향

- 예멘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單一民族性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歷史적으로 “힘야라트” 單一王國을 이루었으나 6세기 以後 오랫동안 外勢의 支配下에 있었음.
(北예멘 125-1918)
- 日帝治下 36年과 比較가 안되는 長期間의 外勢의 支配下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鬭爭하였고 이를 토대로 강한 民族主義 성향을 가지게 되었으며
- 外勢에 依한 不勞所得的인 獨立이 아니라 北예멘은 터키 支配에 對한 反亂을 通하여, 南예멘은 反英暴動 테레와 유엔의 壓力에 依하여 爭取되었던것임. 이와같은 爭取에 의한 獨立의 結果로 兩國은 外交의 幅을 多樣化시킬수 있었고 統合運動을 主體的으로 展開할수 있게되었음.
- 특히 南예멘의 獨立은 北韓과 같은 蘇聯의 “화차政權” (Baggage train goit) “점령공산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자생적 共產主義者들이 爭取하였다는 점에서 政治指導者의 成分, 共產政權의 性格 등이 北韓의 狀況과는 매우 다름.

(2) 지정학적 位置 (強大國과의 關係)

- 韓半島는 대륙勢力과 海洋勢力이 맞부딪히는 狀態에서 우리

나라는 蘇聯의 남진戰略을 봉쇄할 수 있는 극동최전선기지로서 戰略的 位置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 예멘은 홍해入口를 完全히 장악할 수 있는 戰略的 요충지 이기는 하나 대륙勢力과 海洋勢力이 맞부딪히는 지점이라기 보다는 南예멘의 과경화를 통한 蘇聯과 美勢力의 상륙에 對한 사우디등 아랍保守國家의 반발로 부딪히는 힘의 強度가 우리와는 다르다고 할수 있음.
- 예멘은 사우디, 오만등 親美 아랍保守國家들과 국경을 接하고 있고 蘇聯은 바다를 건너 影響力을 行事하여야 한다는 不利한 立場이라는 點에서 우리와는 정반대의 立場이고
- 北예멘에 對한 後見者가 美國이 아니라 사우디라는 點과, 南北예멘 公히 사우디의 經濟的 援助와 影響을 받아야 한다는 點에서 우리의 立場과는 相當히 다르다고 할수 있음
- 이와같은 外勢의 影響의 差異가 兩國間의 分爭과 統合協商이 교체되면서 적대關係가 漸次 해소되어가고 있는 重要한 差異點이라 보여짐.

(3) 國家體制와 體制의 安定性

- 北예멘은 議會主義的 正統回教國家, 南예멘은 맑스·레닌주의 體制라는 點에서 우리의 狀況과 비슷하나 兩國 公히 托후 勢力이 아직도 존재한 前근대國家적 體質을 가지고 있고 (특히 北예멘)
- 北예멘은 “자이디”파 勢力과 “수니사파이”파 勢力의 宗

教的 差異에 기인한 對立이 첨예화되어있고 후자는 좌경적 사조와 統合熱誠派로서 이를 基盤으로 南예멘의 支援을 받는 反政府 게릴라의 (5,000 名) 活動이 激烈하는 等 體制가 極히 不安全하고

- 兩國 공히 統合問題, 外交問題, 勢力間의 갈등등으로 權力鬭爭이 치열하여 어느 누구도 장기執權, 獨裁를 行事할수 없다는 點에서 金日成 唯一思想體制로 一貫되어있어 統一政策의 경직성을 면치못하는 北韓의 現實과는 對照的이라 볼수 있음.

(4) 同質性

- 아랍세계에서는 이슬람교라는 精神的, 文化的, 社會的 共通分母가 내재되어 있어 왕왕 統合運動이 일어나고 있으며 ('58 이집트, 시리아 합병外 6件) 兩國은 이러한 共通分母外에 강한 民族主義 성향, 單一民族性 때문에 統合熱意在 끊어질수 없음.
- 이슬람文化의 特殊性으로 128年동안 東西 아덴 保護令으로 支配한 英國도 法律과 教育制度를 除外하고는 統治의 遺産을 남기지 못하였으며
- 지금 南예멘에 이식되어있는 맑스·레닌주의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 政治, 法律등 上部外形構造를 除外한 社會, 文化的 뿌리는 兩國 공히 同質性을 간직하고 있다는 點에서 이질화 되어있는 南北韓의 現實과는 差異가 있음.
- 이와같은 강한 同質性外에 兩國 공히 産業化의 水準이 貧

弱한 點이 '81.12.2 아덴 頂上會談結果에서 볼수 있듯이
經濟 및 教育文化 情報分野에서 機能主義的 接近을 할 수
있게 하였음.

(5) 南北關係

- 兩國間에 國境선이 確定되어 있지않아 往來가 可能하고 兩國間의 國境 충돌도 우리의 6.25 와 같이 종국적 勝利와 영토점령을 目的으로 한 總力戰이 아니라는 點에서 戰爭의 휴유증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며 兩國民의 적대감정도 크지 않음
- 南예멘은 宗教勢力이 수니파인데 비해 北예멘은 시어파와 수니파가 對立하고 있으나 南예멘은 宗教的 동지인 北예멘의 수니파가 좌경적 統合熱誠派인데다 國境지방인 南部地域에 거주하고 있어 서로가 一體感을 느끼고 있음.
- 反政府團體인 民族民主戰線게릴라(5,000名)가 南예멘의 支援을 받아 각종테러와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등 南예멘의 政治모략戰이 北예멘의 내정 깊숙히 스며들어있는 狀況이라는 點에서 南北韓의 現實과는 判이함
- 南예멘인에 의한 北예멘 요인의 暗殺과 좌익쿠테타 음모, 南예멘의 積極的인 統合推進努力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짐

(6) 外交政策

- 建國後 親美, 親蘇(親中共) 政策으로 一貫하고 있는 南北韓

의 現實과는 달리 南北예멘 공히 反英(반미)感情을 가지고 있으며

- 北예멘은 共和政府樹立後 親蘇, 親中共政策에서 漸次 親사우디로 轉換하여('74 쿠테 타이 후) 우경中立政策을 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軍事武器의 相當部門이 蘇聯製이며 蘇聯 및 共產勢力과 外交關係를 維持하고 있고 美國의 影響이 直接으로 北예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點에서 親美 반소로 一貫하고 있는 우리의 現實과는 다르고
- 좌경국가로서의 南예멘은 좌경화의 原因이 反帝 反植民地의 感情에서 좌경화 되었기 때문에 主體性이 강하며 最近에는 아랍國家와의 關係改善을 모색하고 있다는 點에서('76 사우디와 外交關係 改善 재개 사우디援助동의 80.6 大統領 사우디訪問) 경색된 北韓의 外交政策과는 差異가 있음
- 결국 親蘇 對 親美의 대결構造인 南北韓과는 달리 우경中立(다소 親共產)대 親蘇 非同盟이라는 點에서 差異가 있음

나. 統一政策

(1) 統合目標

- 統一國家의 政治體制가 自由民主體制나 共產主義體制나 라는 共存不可能한 이데올로기의 對立이 아니라 赤化統合對傳統回教國 高수라는 共存possible한 目標가 對立되고 있었음. (아랍世界에서는 社會主義 回教國 可能)
- '72.11.28. 最初로 兩國間에 合意한 統合原則에도 國家理念을 共和主義, 民族主義, 民主主義로 하고 政治體制를 單一大統領制로서 統合된 議會와 行政府 및 司法府라는 點에서 政府形態는 오히려 3權分立에 基礎한 自由民主體制에 가까운 것이었음.
- '82.1.9 南예멘에서 發表된 統合憲法 草案要旨에서는 國教를 回教로 하고 立法府를 國民의 選出에 依하여, 行政府를 統合閣僚評議會로 構成하기로 合意하였는바 이는 北예멘의 傳統回教國 高수의 立場이 反映된 것으로서 兩國은 일방의 힘에 依한 統一을 目標한 것이 아니라 實質的 平和的인 統合을 追求하고 있었음.

(2) 統合推進方法

(가) 協商過程

- 兩國間에 統合問題 合意過程이 紛爭時마다 敵對關係 解消策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72年 트리폴리頂上會談에서 統合原則合意後 10餘年間 꾸준히 統合實務委員會

의 協議가 進行되어 왔음.

- 兩國 頂上間의 빈번한 接觸과 會談을 通하여 合意內容이 조금씩 發展하였으며 트리폴리 頂上會談, 쿠웨이트 頂上會談等 아랍 國家들의 仲介調整이 統合合意의 發展에 큰 寄與를 하였음.

(나) 統合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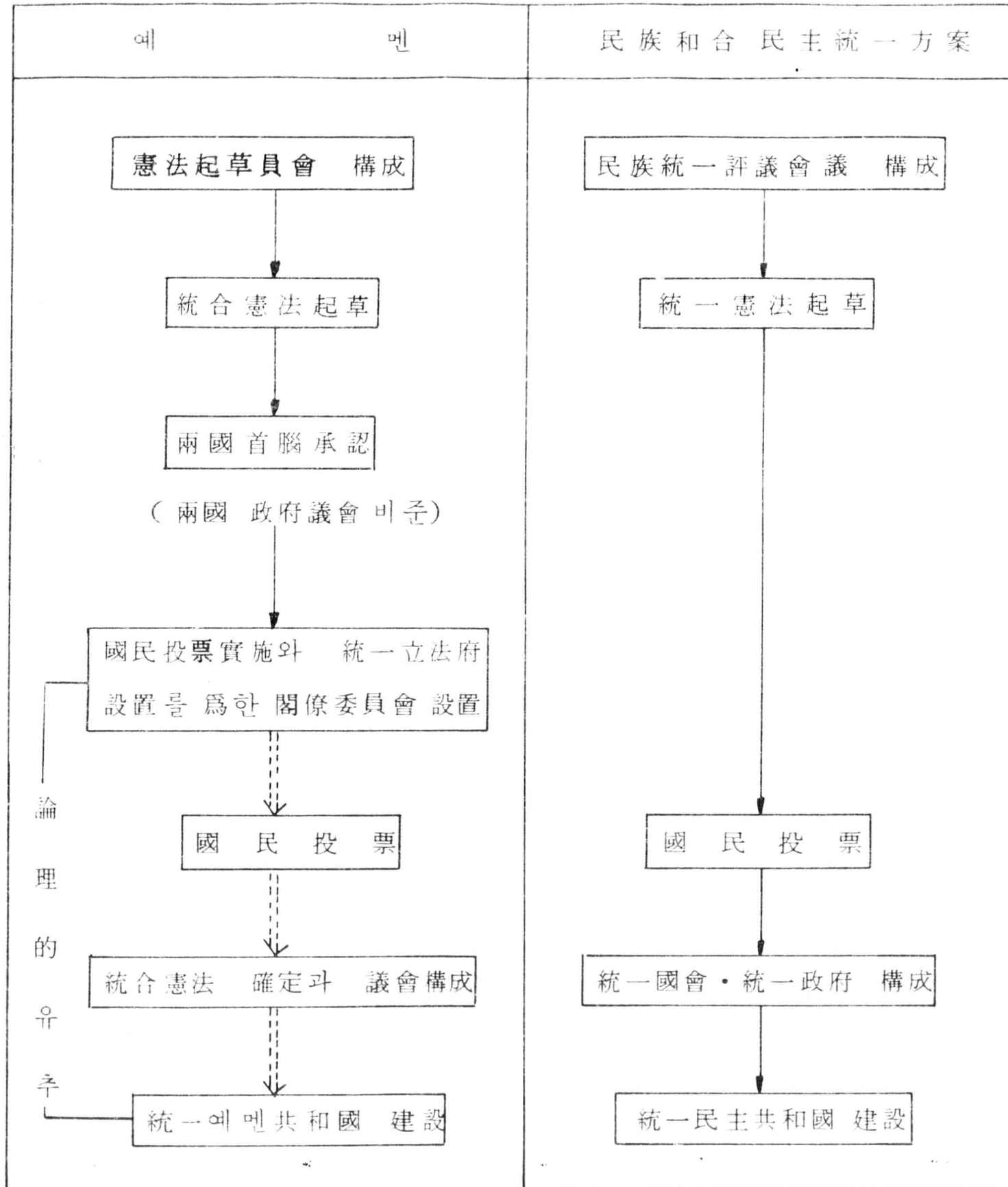
- 兩國은 '72年 트리폴리 頂上會談에서 統一憲法作成, 비준을 通한 平和的인 統合推進에 먼저 合意를 본後
- '79.6. 쿠웨이트 頂上會談에서 憲法起草委員會 構成 憲法草案 兩國首腦承認 → 國民投票 → 國家統合이라는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類似한 統合段階에 合意를 보았음.
- 이와같은 統合節次의 推進外에
 - '77.12. 外務, 經濟, 通產相으로 構成되는 統合特別委員會 設置 合意(카타바首腦會談)
 - '80.5. 經濟, 安保, 通信部門合同委員會 協力強化 및 情報, 文化 등의 3個協定締結(아덴首腦會談)
 - '81.12. 統合을 爲한 閣僚會議 構成과 經濟分野에서 連結道路 建設, 農產物 共同販賣機構 設置, 教育文化情報 分野에서 라디오, T.V 共同프로製作合意(아덴 頂上會談) 등에서 보는 바와 같아 機能主義的 統合方法을 竝行하여 推進하고 있음.
- 특히 아덴 頂上會談에서 合意한 “兩國協力 및 調整에 關

한 協定”은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後續措置에
示唆하는 바가 많음.

(3) 民族化合, 民族統一方案과 比較

(가) 統合憲法을 國民投票로 確定하고 그 憲法에 따라 統一共
和國을 完成한다는 統合過程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類似하나 推進機關과 暫定措置 內容에서는 差異가 있음.

(나) 兩國統一過程 比較



* 統合憲法案이 兩國政府와 議會의 비준을 받기 위해 現在 兩國政府 및 議會에 提出되어 있는 段階에 와있음.

(다) 統一推進機關比較

예 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機關:○ 憲法起草委員會 (活動끝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멘 평의회 ○ 兩國연석閣僚會議 ○ 비서국 ○ 예멘 평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構成 : 兩政府大統領으로 構成 - 機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統合協約의 履行推進과 統合委員會의 活動 監督 (2) 統合委員會의 活動結果를 確認 바준하고 政策方向指示 (3) 關係當事機關에 依해 合意된 共同事業 實踐方向指示 (4) 國內外問題를 包含한 兩政府의 관심事項 檢討, 對策合意 ○ 兩國연석閣僚會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構成 : 首相, 外務, 內務, 開發計劃, 文教, 國防長官 - 機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協定에 따라 共同事業實踐監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機關 : 民族統一協議會 ○ 構成 : 雙方住民의 代表로 構成 ○ 機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憲法基礎 - 統一祖國의 政治理念과 國號, 對內外政策의 基本方向, 政府形態 決定 - 國會構成을 爲한 總選舉의 方法時期 節次 協議

예 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2) 兩國經濟社會開發計劃 調整 (3) 예멘평의회에서 賦課된 業務 遂行 (4) 討議事項을 예멘평의회에 提出 ○ 비서국 - 機能 : 예멘평의회와 연석閣僚委 員會 會議準備 및 運營	

* 예멘은 兩國政府의 실체를 認定하고 徹底한 當局者會談을 推進하고 있음.

(라) 과도措置 - 南北韓 基本關係에 關한 暫定協定과 比較

예 멘	暫 定 協 定
○ 外務, 經濟, 通산상으로 構成되는 統合特別委員會 設置 合意 ('77.12. 카라바首腦會議) ○ 經濟, 安保, 通信部門 合同委員會 協力強化 合意 및 情報文化等に 關한 3協定締結 ('80.5. 아덴首腦會談)	○ 互惠平等의 原則에 立脚한 相互關係 維持 ○ 相互 對話와 協商을 通해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 ○ 軍備競爭止揚과 軍事的 對峙狀態 解消 ○ 相互交流와 協力を 通한 社會開放 推進等

* 南北韓 基本關係에 關한 暫定協定은 南北韓이 敵對關係를 解消 하고 相互信賴를 造成하려는데 焦點이 있으나 예멘은 實質的 統合을 爲한 方法을 摸索을 하였다고 比較할 수 있음. 특히 情報文化等에 關한 3協定('80.5)에서는 상당히 具體的 分野에 까지 合意한 것으로 推測됨. (資料를 入收하지 못했음)

(4) 20 個 示範事業과 比較

- '77.12. 카타바首腦會談, '80.5 아덴首腦會談의 結果도 機能主義的 統合研究에 參考가 될 것이나 資料가 없어 '81.12. 아덴頂上會談의 結果인 “兩國協力 및 조정에 關한 協定” 內容과 우리의 “20 個 示範事業” 만을 比較하기로 함.
- 協力 및 調整에 關한 協定과 20 個 示範事業의 比較

예멘協力 및 調整 協定	韓國 20 個 示範事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兩國 聯合公社에 依한 隣接地域에 있어서의 鑛物과 水資源의 共同調査와 開發 ○ 水資源研究와 農耕地 擴張을 爲한 共同研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由로운 共同漁撈 區域設定 ○ 南北韓 自然資源의 共同開發과 共同利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타바 - 두라인 連結道路 建設 ○ 其他地域의 道路連結에 關한 研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 平壤間 道路連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 T.V의 共同 프로製作과 兩國 同時 放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放送聽取 統制裝置 除去로 雙方 定規放送 自由聽取

協力 및 調整에 관한 協定	20 個 示 範 事 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兩國의 弘報機關은 예멘의 風俗과 民族藝術을 說明하고 市民들에게 그들의 祖國 예멘을 알게끔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文化의 繼承 發展을 爲한 民族史의 共同研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境에서 共同學校 設置 ○ 隣接한 마을의 便宜를 爲해서 共同會合場所 設置 ○ 南北學生으로 하여금 居住地에 가까운 學校 入學 許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武裝地帶內 共同競技場 施設과 親善競技 ○ 非武裝地帶內 自然生態界 共同學術 調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兩國의 農產物 販賣를 爲한 共同機構 設置에 관한 研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一製造業體間의 技術者交流 및 生産品 展示會 交換 開催 ○ 日用生産品の 交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地域 市民은 兩地域을 往來할 權利를 지닌다. 단, 1980.6. 12. 兩側 內務長官 사이에 締結된 協定에 包舍된 條件에 맞는 身分證을 지녀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의 相逢實現 ○ 海外僑胞 및 外國人 雙方地域 自由往來

* 自然資源의 共同開發과 連結道路 建設은 一致하고 있고 民族史의 保存, 共有는 우리와 같은 立場이라 할 수 있음.

6. 南北예멘의 統合展望과 그 敎訓

가. 南北예멘의 統合展望

(1) 統合沮害要素

- 兩國 공히 體制의 不安定 때문에 (특히 北예멘) 決定的 瞬間에서는 統合推進보다는 體制의 安定을 擇할 可能性이 많다.
- 兩國에 影響을 미치는 사우디의 立場에서는 좌경적 統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統合에 따른 공화체제 民主體制의 물결이 사우디로 擴散되어서는 안된다. (北예멘이 아랍만 國家會議 (GCC) 에 加入 되지않고 있는것도 統合을 추진하고있기 때문임)
- 北예멘內에 막강한 影響力을 行事하는 토후勢力이 統合國家의 政治體制인 共和民主體制를 反對하고 있다. ('77.10. 共和體制로의 履行과 統合을 推進하던 “하마디” 大統領이 南예멘 訪門 前夜에 暗殺당함)
- 전근대적 우익保守國家와 좌경國家와의 政治理念, 支配勢力의 理解關係等을 統合調整하는 데에는 限界가 있다.
- 兩國間의 緊張, 競爭을 利用하여 美國, 蘇聯, 사우디 등이 競爭적으로 接近하고 있고 強大國의 軍事經濟援助에 對한 依存도가 심하다.

(2) 統合促進要素

兩國은 反帝 反植民地 鬪爭歷史를 통해 民族主義 성향이 강

하여 政治 指導者가 統合熱意를 가지고 있다.

- 지정학적 位置上으로는 大陸勢力과 海洋勢力이 맞부딪히는 韓半島와는 달리 사우디의 단일影響圈下에 있다.
- 北예멘 내 大勢力인 “수니사파이”가 좌경적 統合派로서 中繼役割을 할 수 있다.
- 이슬람文化圈이라는 精神的, 文化的, 社會的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동질성이 강함)
- 北예멘의 우경中立政策과 南예멘의 친소 非同盟政策과는 國家政策調整이 可能하다. ('81.10. 살태北예멘大統領 蘇聯, 알제리, 시리아등 좌경아랍국 巡訪, '80.6. “모하메드” 南예멘大統領 사우디 訪問)

(3) 統合展望

- 兩國은 統一國家의 未來像, 平和的인 統一推進方法, 統一憲法草案에 合意하였다고 하지만 合意以上の 具體的 實踐措置는 進行되지 않고 있다.
- 兩國 공히 美·蘇·사우디등에 대한 依存도가 높으며 이들 배후支援勢力이 急激한 統合을 원하지 않는다는점, 兩國의 現實的인 當面課題가 國家財政의 保全과 經濟開發計劃 推進이라는 점, 體制內에 不安要素가 많다는 점에서 實質的인 統合으로 發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展望되나
- 兩國間에 우리의 20개 示範實踐事業과 유사한 連結道路의 建設등은 政治指導者의 結心如何에 따라 쉽게 推進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나. 教 訓

(1) 南北예멘의 統合合意 事例研究를 通하여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 統一方案이 合理的임을 알수있다.

根據：- 統一憲法의 國民投票를 通한 統合推進

- 兩國連結道路의 建設과 같은 機能主義的 統合方法 併行(20 개 示範實踐事業과 유사)

- 頂上會談 推進

(2) 統合推進의 동인은 民族主義며 政治指導者의 統合熱意가 重要하다.

(3) 外勢의 影響을 中立化시키면서 統合을 推進시킬수 있는 主體 役量이 必要하다.

(4) 統合目標은 어느 一方의 힘에 依한 “統一”이 아니라 協商을 通하여 共通分母로 接近하는 “統合”이어야 한다.

(5) 統合協商은 理由如何를 不問하고 中斷되어서는 안되며 頂上會談이 切實한다.

(6) 外交의 多變化가 시급하다.(北예멘 : 우경中立國, 南예멘 : 친소 非同盟강경국)

參 考 資 料

1. 兩國 國力 比較
2. 兩國 體制 比較
3. 北예멘 政治略史
4. 南예멘 政治略史
5. 兩國 關係史
6. 南北예멘 協力 및 調整에 關한 協定
('81. 12. 2)
7. 예멘아랍共和國憲法 (1971. 12)
8. 예멘人民民主共和國憲法 (1972. 5)

1. 兩國 國力比較

區 分	北 耶 門	南 耶 門
面 積	19.5 萬 km ²	34 萬 km ²
人 口	527 萬 ('80)	183 萬 ('80)
G N P	38.1 億 \$ ('77)	7.92 億 \$ ('78)
1 人 當 GNP	658 \$ ('79)	430 \$ ('79)
總 兵 力	32,000 名	23,800 名
外 國 軍 駐 屯	蘇 聯 : 130 名	蘇 聯 : 1,100 名 쿠 바 : 700 名 東 獨 : 300 名 北 韓 : 250 名 (81年)

2. 兩國體制比較

區 分	北 耶 門	南 耶 門
國 號	예 門 아 람 共 和 國	예 門 人 民 民 主 共 和 國
首 都	사 나	首 都 : 아 덴 行政首都 : 마티나 알 - 사 브
國 家 元 首	軍 事 評 議 會 議 長	國 家 元 首 兼 政 府 首 班 : 大 統 領 , 評 議 會 議 長
政 府 首 班	首 相	
政 治 體 制	軍 事 獨 裁 國 家	一 黨 獨 裁 國 家
宗 教	이 슬 람 (수 니 파 와 시 어 파)	이 슬 람 (수 니 파)
獨 立	1918 年 터 키 王 國 으 로 부 터 獨 立	1967 年 英 國 植 民 地 領 으 로 부 터 獨 立

3. 北예멘政治略史

가. 主要事件日誌

BC 950 - BC 115	사바王朝
BC 115 - 6世紀	힘야라이드 王朝
525	에디오피아가 征服
575	페르샤가 征服
(9世紀동안)	예멘 라시드王朝
	* 이 이맘의 傳統이 現在까지 存續
1517	오스만터키가 征服
1872	“ 발리 ” 터키族이 支配
1911	“ 야흐야 ” 이맘이 全面的 反亂
1918	○ 무드로스 休戰協定 (獨立認定) - 터키의 宗主權은 認定, 事實上 國土支配權은 高原地帶의 이맘과 티하마地域의 터키勢力으로 兩分
1914 - 18	1次大戰 이맘은 터키를 支持, 英國이 예멘北部 “ 아시르 ” 小國의 侵入者를 支援
1923	“ 야흐야 ” 이맘이 호데이다港口와 그 周邊 占領, “ 야시드 ” 에서 繼承紛爭
1926	○ 아시르部族 “ 이븐 사우드 ” 保護로 들어감.

- 이맘, 아덴保護領에 대한 侵入繼續
(伊太利의 支援)
- 伊太利와 友好協定 締結
- 1934 이븐 사우드軍隊 進擊, 호데이다港의 이맘軍
隊逐出
- 1945 아랍聯盟에 加入
- 1947 U N 加入
- 1948 야흐야 이맘 쿠데타로 被殺, 그의 아들
“아마드” 承繼
- 1951 門戶開放
英·美·佛蘭西의 技術援助로 國家發展計劃
施行
- 1953 아랍의 支援下에 아덴과 그 保護領에 대한
그들의 主張을 U N에 呼訴 壓力 加하기
始作
- 1955 ○ 쿠데타 鎮壓
○ 이맘 첫內閣 構成
○ 蘇聯과 協定締結
- 1956 ○ 蘇聯과 國交樹立
○ 中共承認 經濟技術援助 받음.
○ 이집트, 사우디, 시리아 軍事條約締結
- 1956 - 57 ○ 英國과 예멘사이 國境衝突(예멘 部族들
이 아덴保護領의 마을攻擊)

- 1958 - 59
 - 이집트, 시리아와 統一聯邦國 構成
(統一아랍국)
 - 英國과 國境紛爭會談 失敗
 - 美國大使館 開設
- 1961
 - 統一아랍국 解體
 - 이집트가 이맘 非難 캠페인展開
- 1962
 - “아마드” 이맘死亡, 그의 아들 “바드라”가 承繼
 - “사랄”大領 反亂
이맘高原地帶로 逃走, 內亂狀態
(1962 ~ 69)
 - 공화군 蘇聯, 美國으로부터 承認, UN 承認받음. (1963)
- 1963
 - 內亂 國際紛爭으로 擴大
 - 이집트軍隊 共和派 支援次 上陸
 - 사우디 王政派에 武器援助
 - UN 監視團 活動
- 1964
 - 共和軍 새 共和政府 樹立 宣布
 - 이집트·예멘 協力委員會와 聯合軍司令部 設置 合意
 - 4萬名 이집트軍 예멘駐屯
- 1967
 - 終戰合意 이집트와 사우디 軍隊撤收

- 사랄 顛覆, “이라니” 大統領(首相 “아이니”) 就任
- 美國과 斷交
- 1968 ○ 王政派 首都 包圍 攻擊失敗
- 1970 ○ 王政派 指導級들이 사나로 되돌아와 國政參與
- 사우디, 英國, 佛蘭西外交關係 開設
- 새 憲法 宣布
- 1971 ○ 最初 選舉實施
- “암리” 首相 追放당함
- 1972 ○ 美國과 外交關係 再開
- 南예멘 反政府團體 國境地域에 集結
- 南예멘과 國境衝突(9月)
 - 平和協定 및 兩國統合 協定締結 (카이로)
 - 트리폴리 頂上會談(11月)
- 1973 ○ 사나 頂上會談에서 統合期間 1年延長 (9月)
- 1974 ○ “마키” 首相의 新政府 發足
- “하마디” 親사우디派, 쿠데타 成功, 이라니 大統領 逐出
- 1975 ○ 사우디와 美國에 接近

- 사우디의 經濟, 軍事援助, 美國武器로 武裝, 蘇聯軍事援助 拒否
- 1977
- 하마디大統領 南예멘 訪問前夜에 暗殺당함. (10月)
 - “ 가쉬미 ” 大統領 就任
 - “ 가쉬미 ” 大統領 暗殺謀免
- 1978
- “ 알렘 ” 少領反亂, 南예멘으로 逃走
 - “ 가쉬미 ” 大統領 南예멘 大統領 特使와 面談중 爆死當함. 살레大統領 就任
 - 南예멘大統領 “ 루바야 ” 逐出 銃殺 당함.
 - “ 살레 ” 暗殺謀免
 - 쿠데타 未遂事件發生 (10月)
 - 南예멘이 介入하였다는 疑心이 가자 兩國 緊張 高潮
- 1979
- 南예멘, 北예멘 反政團體인 民族民主戰線 게릴라와 함께 攻擊 (2月)
 - 쿠웨이트 頂上會談 (4月)
 - 平和協定 및 統合原則 合意
 - 合同憲法 起草委員會 開催
 - 南예멘 大統領 北예멘訪問
 - 사우디, 쿠웨이트 會談結果에 不滿, 軍事 援助 中斷

- 모스크바와 武器去來(11月) 蘇聯으로 接近
- 살레 大統領 民主化 措處斷行
- 1980 ○ 사우디 援助 代價로 蘇聯으로부터 軍事援助 拒否(4月)
- 南예멘의 支援을 받은 反政 게릴라들과 戰鬥加熱(5月)
- 아덴 首腦會談(5月)
 - 經濟, 安保, 通信部門 合同委員會 協力 強化 및 統合繼續 推進 合意
- 1981 ○ 北예멘 反政府團體(民族民主戰線)와 鬭爭激化(8月)
- 軍部 쿠데타 未遂(9.5)
- “ 살레 ” 大統領, 蘇聯(10.26~28), 알제리아(10.28~29), 시리아(10.30 ~ 11.1) 訪問
- 사나 頂上會談(9月)
- 쿠웨이트 頂上會談(11月)
 - 兩國關係 改善 및 統合推進 再確認
- 아덴 頂上會談(12月)
 - 統合을 위한 閣僚理事會 構成 合意

나. 北예멘의 政治體制

(1) 立憲制度와 政府

- 예멘의 憲政制度의 發展은 1962年부터 始作되어 1971年 憲法下에 最初로 選舉를 實施하여 立法議會를 構成하고 그 議會는 Republica Council 을 選出하였음.
(議長 : 國家元首)
- 1974年 憲法이 停止되고 5人 軍事評議會와 任命된 首相과 內閣에 의해 統治되었음.
- 이후 軍事評議會의 權限이 強化되면서 1975年 “ 하마디 ” 는 명목상의 立法機構인 諮問機構 (Consultative body) 를 解散하였음.
- 現在 7人의 軍事評議會가 政府를 指導하고 있고 首相을 任命하고 있음.
- 現在까지 단 1번의 選舉를 하였을뿐 選舉機構가 없음.
- 現代 政治組織과는 달리 本質적으로 부족사회의 性格을 띠고 있으며 아직도 산악지대에는 대자치부족들이 남아있음.
- 政治安定은 언제 적대감이 暴發할지 모르는 競爭關係에 있는 부족들을 抑制하는 사나정부의 能力에 달려있음.
1975年 1976年 3번의 쿠데타는 모두 부족장들의 中央政府에 대한 저항에서 나온 것임.
- 1948년부터 1967년까지 9번의 쿠데타가 있었으며 中東에서 가장 不安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 1977年 軍事評議會 議長 “하마디”와 그의 동생이 남예멘으로出發하기 전날밤에 暗殺되었으며 그 後任者도 暗殺되었음.
- 1978年 “가쉬미”는 남예멘 특사에 의해 暴死되었으며 이는 남예멘의 “루바야” 大統領의 배후조정에 의한 것으로 그 자신도 수주일내에 免職 총살되었음.

(2) 人口構成

- 예멘은 거의 셈족이며 아랍인이다.

아랍지역 社會에 있어서 남아랍인 (Qahtani) 과 北아랍인 (Admani) , “자이디” 부족과 “사파이” 부족간에 對立이 오랜 기간 持續되고 있다. 後者의 差異는 人種的 要素보다 宗教的 差異에 基因한다. 이들 부족간의 分裂과 競爭은 社會 結合을 確固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시어”파인 “자이디” 부족들은 마호멧의 양자인 “알리”와 그 손자인 “자이드” (Zeid) 를 통하여 그들이 마호멧의 後繼 “이맘” (Imam : 회교국의 宗教的 指導者의 稱號) 이라고 主張한다.

“자이디” 부족은 예멘의 北部와 東部 및 중앙고원지대에 살고 있다. “사파이” 부족보다 호전적이며 시골을 支配하고 있다.

“수니”파인 “사파이” 부족은 “디하마” 海邊과 남쪽지역에 살고 있다.

“자이디”과와 달리 도회지에서 살고 있고 商業에 從事하는 者
가 많다.

(3) 植民地經驗

예멘은 한번도 西歐植民地 經驗을 받은적이 없다.

(4) 外交政策

- 내란이 끝나면서부터 예멘은 줄곧 外交政策에 있어 온건노
선을 걸어왔지만 서구진영 보다는 동쪽국가(아랍국가)들에
더 가까웠다. 특히 소련은 相當한 經濟軍事援助를 하였다.
中共援助團이 (mission) 1958年 “이맘”下에서 設立되어
共和派 治下에서도 擴大되었다.

劇적으로 外交政策이 바뀌어 사우디가 最近에는 主要經濟
支援國으로 登場하였다. 美國과의 關係는 다른 아랍국과 같
이 1967年에 단절되었다가 1972年에 再開되었다.

- 外交政策에서 南예멘과의 關係가 重要的 位置를 점하고 있
다. 兩國은 統合에 合議하였지만 1967年 以後 緊張되어 있
으며, 1972年에 設立된 統合委員會는 이데올로기의 差異때
문에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

(5) 國防政策

- 國防體系는 軍事評議會가 장악하고 있으며 그 議長은 國家
元首이자 軍總司令官이다.

부족간의 적대관계 때문에 制度的 裝置가 微弱하며 항상
전복될 危險에 놓여있다. “자이디”관료와 “수니사파이”

부족간의 갈등으로 軍事統治를 받고있다.

“사파이”派들이 政治적으로 좌익성향을 띠고있고 남예멘과 統合을 強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軍部の 混亂과 分裂이 加重되고 있다.

사파이파인 “알렘”소령이 이끄는 民族民主戰線은 자이디파의 독재에 重大한 위협이 되고있다.

現在의 統治는 主要 부족간의 協同에 의지하고 있고 그들의 軍事的 潛在力은 대단하다.

主要部族은 단번에 20 만병을 動員할 수 있다.

- 예멘은 이집트와 소련으로부터 相當한 軍事援助를 받아왔고, 장교의 大部分은 이집트에서 訓練을 받고 있으며, 그 장비는 거의 소련제이다.

다. 북예멘 近代史

(1) 터키로 부터 獨立

古代에는 예멘은 아라비아 Felix의 東南地域이었다. 그 地域에서 가장 強力한 王祖는 Shaba 王祖였으며 이 王祖는 BC 950에서 BC115까지 維持되었다. 그때부터 7世紀까지 아라비아는 힘야라트君主에 依하여 統治되었고 그로부터 나온 現代의 이맘(Imam: 回教國의 宗教的 指導者)의 勢力은 사양길에 있다. AD 525 에디오피아가 힘야라트王祖를 征服하였고 AD 575 페르샤가 다시 征服하였다.

7世紀 동안 이슬람教를 믿었으나 사파이 意識의 “수니”派가 “티하마”에서 勢力을 形成하고 穩健 “시어”派인 자이디派가 高原地帶에서 勢力을 잡고 있다.

9世紀 동안 자이디 이맘 “하그”가 예멘 Rassid 君主制를 實施하였고 이들은 現在에도 存續되고 있다.

1517年 오스만 터키에 依하여 征服당하였으나 그들의 統治 基盤은 強力하지 못하였으며 激烈한 部族的 宗教的 戰爭으로 터키는 “발리” 터키族下에 國土의 完全한 占領을 하게 하였다.(1872)

이 占領은 1918年 무드로스 休戰까지 存續되었지만 1911年 야흐야 “이맘”이 全面的인 反亂을 일으켰으나 그 結果 터키의 宗主權을 認定한 協定을 맺었다.

그러나 高原地帶의 “이맘”과 “티하마”地域의 터키人들로

支配力이 둘로 나누어졌다.

1次大戰 동안 “이맘”이 터키를 支持하였고 英國이 예멘北部 “아시르” 소국의 “이드리시” 侵入者를 支援하였다.

예멘의 “야흐야” 이맘이 호데이다 港口와 그 周邊을 占領하는 동안 “아시르” 繼承紛爭이 벌어졌다.(1923)

1926年 메카協定으로 “아시르” 部族은 “이븐 사우드” 保護로 들어갔고 이것은 “이맘”에게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는 아라비아 새王에 미끼를 달고 英國이 支配하고 있는 아덴保護令에 對한 侵入을 繼續하였다.

이러한 活動의 裏面에는 伊太利의 支援이 있었고 그는 1926年에 伊太利와 友好協定을 맺었다. 蘇聯 貿易代表團이 이 當時 간간이 訪問하였고, “아시르” 部族長에게 反亂을 일으키도록 使喚하였다.

“이븐 사우드”는 平和的으로 解決하려 하였고 協商을 1934年까지 끌었다. 그해 4月 “이븐 사우드”는 보다 過激한 措置를 取하여 예멘에 軍隊를 進擊시켜 호데이다港의 예멘 軍隊를 逐出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그들을 “사나”로 되돌아가게 만들었다. ..

“타이프”協定으로 “티하마”와 “와즈란”이 이븐 사우드에 게로 讓渡되고 이러한 穩健政策으로 그의 名聲이 빛났다.

同時에 英國은 예멘의 獨立을 認定하는 協定을 맺고 國境紛糾가 當分間 終熄되었다.

全體的 保守的인 “야흐야” 이맘은 1948年 2月까지 統治

하였으나 그 해 “알-와지르”에 의한 쿠데타로 被殺되고 그의 아들 “아마드”가 王位를 繼承하여 反亂을 鎮壓하였다. 그때 以後 예멘은 國際問題에 있어서 協同的인 態度를 取하여 1951年 1月 英國, 美國, 프랑스의 技術援助로 國家發展 計劃을 施行하고 同時에 英國, 美國, 이집트를 除外한 外國勢力과 처음으로 外交關係를 樹立하였다. 1953年 겨울 아랍支援으로 “아덴”과 그 保護令들에 對한 그들의 主張을 유엔에 壓力을 加하기 始作하였으며 1954年 여름과 1955년에 一連의 國境衝突騷擾가 있었다.

1955年 4월에 아마드 이맘에 反對한 쿠데타는 失敗로 끝나고 1956年 蘇聯과 關係가 맺어지고 이집트, 사우디, 시리아와 軍事條約을 맺었다.

1956年 57年 英國과 예멘사이 國境紛糾가 다시 일어났고 이때 예멘 部族들이 아덴 保護領의 마을을 攻擊하였다.

1957年 10月 皇太子가 會談次 런던을 訪問하였지만 1958年 敵對感情이 다시 爆發하고 아랍聯盟 政治委員會는 아덴 領土에서의 英國의 措置를 非難하였다.

1958年 5月 아덴에서의 2個의 爆發物事件으로 暫定的 國家 緊急 事態가 施行되었다.

1958年 7月과 1959年 5월에 開催된 紛糾解決會談은 失敗로 끝났다.

- 1958年 2月 皇太子를 首席으로 한 예멘代表團이 統一아랍共和國과 예멘을 統一聯邦을 만들기 위하여 카이로를 訪問하

였고 4月 8日 “다마스쿠스”에서 兩國 統合協定이 調印되었다.

國號는 統一아랍國으로 하고 統一된 外交, 國防政策을 實施하며 慣習과 貨幣를 統一시키기로 하였지만 以後 별다른 進展이 없었다.

1961年 11月 3年間 協定の 履行을 延期하기로 合意하였지만 1961年 12月 統一아랍共和國(이집트)에 依하여 同 聯邦은 解體되었다.

1959年 5月 아마드 이맘이 유럽으로 出發한 後 騷擾가 일어나 皇太子가 代表會議를 包畵한 여러 改革을 斷行하였지만 8月 이맘의 歸國으로 이 政策은 失敗로 끝났다.

(2) 內 亂

- 1961年 4月 “이맘”을 暗殺하려는 기도가 몇차례 있었으나, 失敗로 끝나고 1962年 9月 이맘은 死亡하였다. 그의 아들 “무하마드 바드라” 皇太子가 繼承하였으나 1週日後 “사랄” 大領이 이끄는 反亂이 일어났으며 이 背後에는 이집트軍의 支援이 있었다. 새 “이맘”은 高原地帶로 도망가서 首都를 再奪還하려는 試圖를 하였지만 共和軍은 國土의 大部分을 占領하였으며 蘇聯, 美國으로부터 곧 認定받았고 1963年初에는 유엔으로 부터 承認 받았다. 英國만은 王政體制만을 認定하면서 이집트軍이 撤收하여야 認定할 수 있다고 強調하였다. 戰鬪는 1969년까지 繼續되었

고 1963年, 64年 가을과 68年 戰鬪은 치열하였다.

유엔에서 派遣한 監視團은 이집트軍隊와 사우디의 軍需品 補給의 同時 撤去協定이 兩側에 依하여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同 監視團은 1963年 7月부터 1964年 9月까지 活動하였다.

- 1964年 2月の 이집트와 사우디의 和解는 解決의 날이 멀지 않았고 요르단 共和國에 依한 承認은 革命과 그 結果의 全般的인 承認의 重大措置였음을 暗示하였다.

그럼에도 英國은 王政派 支援姿勢를 固守하였다.

英國의 影響力을 南아라비아로 부터 逐出하려는 이집트의 意圖는 英國政府의 決定을 搖之不動으로 만들었다. (예멘은 이집트보다 英國의 逐出에 對해 消極的)

- 1964年 5月 4日에 發表된 新憲法에 따라 새共和政府 樹立이 宣布되고 首相 자이피 (Al-Jaifi)가 大統領의 身邊治療 出國이 잦음에 따라 國政을 指導하였다.

學校, 病院, 道路建設計劃이 發表되고 (6月) 이집트와 예멘의 協力委員會와 聯合軍司令部 設置에 關한 協定이 카이로에 締結되었다. (7月)

이 經費의 90%를 이집트가 負擔하고 이에 4萬名의 軍隊가 예멘에 派遣되었다.

- 9月 “사랄”이 알렉산드리아의 아랍頂上會談에 參席하는 동안 유엔軍事 監視團이 出國하였다.

이 會談에 뒤이어 “나세르”와 “파이잘”王 사이에 예멘問

題會議가 있었고 이 結果 다시 수단의 “에르킷”에서 會談이 다시 열렸으며 (11月) 이 會議에서 共和派 代表와 王政派 代表 사이에 休戰과 國民議會 (National Congress) 開催 合意가 이루어졌다.

進行節次問題에 對한 意見差異로 履行이 延期되고 12月 王政派가 다시 攻擊하였다.

1月 바드라 이맘이 立憲憲章을 發表하였다. 이 軍事的, 政治的 攻勢로 內閣內에 壓力이 생겨 1965年 1月 자이피首相이 辭任하고 戰爭遂行의 強化任務를 띤 아미리 (Al-Amri) 中將이 後任首相이 되었다.

4月 “아미리” 中將이 辭任하고 穩健派인 무하마드 아마드 노만 (Muhammed Ahmad Noman)이 後任者가 되었으며 그는 和解政策을 開始하였다. 王政派의 參與가 없었지만 오랫동안 延期된 國民會議가 다시 召集되었고 (5月), 5月 9日 法律을 制定하고 共和會議 (Republican Council)의 委員을 任命하고 大統領을 指名할 最高 諮問會議 (Consultative Assembly)을 構成한다는 暫定憲法을 發表하였다.

- 平和的 解決을 試圖한 “노만.”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Baat-hist 事件 (Cause)에 對한 그의 동정으로 예멘에 財政的 支配權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로부터 反對에 부딪혔다. 7月 “노만”은 辭任하고 大統領은 아미리 (Amri) 中將을 首班으로 하는 內閣 改編을 斷行하였다.

親 이집트 軍部の 顯著한 復歸는 王政派들의 進出과 一致하

는 것으로써 이집트와 사우디는 서로가 內亂을 助張하고 있다고 非難하면서 關係가 惡化되었다.

(3) 解決摸索

- 나세르大統領과 파이잘王의 제다會談을 契機로 解決의 실마리가 보이면서 8月24日 두 指導者는 戰爭을 終熄하고 外勢의 개입없는 예멘政府를 15個月內에 設立할것을 合意하였다. 그 合意書에는 即刻적인 休戰, 사우디의 王政派에 對한 武器供給 中斷, “바드라 이맘”과 “사랄”大統領을 除外한 穩健派 政治人으로 構成된 暫定政府를 15個月內에 樹立할 것.

5萬名の 이집트軍隊를 1966年9月23日까지 10個月內에 撤收할 것

예멘人이 그들이 願하는 政治體制를 選擇할 수 있도록 國民投票를 實施할것을 約定하였다.

- 共和國 大統領評議會 (Presidency Council)와 이집트, 사우디 平和委員會 設立을 規定한 “제다”協定이 即刻적으로 發表하였지만 參加國의 協定意圖는 곧 弱化되었다.

1965年11月 共和派와 王政派 代表의 會議는 擔保상태에 빠지고 1966年 동안은 이집트와 사우디의 關係 惡化에 比例하여 協定履行도 弱化되었다. 이집트軍隊는 減少되기는 커녕 增加하였고 解決의 실마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1966年9月에는 더욱 惡化되어 “아미리”中將과 “사랄”大統領사이의 暗鬭가 노골화되었다.

首相이 이끄는 大規模代表團이 카이로를 訪問하였다. 여기서 이집트로부터의 完全한 獨立과 大統領의 完全한 除去를 要求하였다.

이 提議에 對하여 이집트는 代表團을 逮捕하였으며 이로 因하여 “사랄”이 首相職을 맡았다.

共和國 軍부와 行政部內에 大規模 肅清과 暴動, 裁判, 國外追放의 물결이 뒤이어 일어났다. 反體制 共和主義者들이 사나 北쪽으로 逃走하였다.

- 1966年 後半 共和派와 王政派의 活動이 加熱해졌다.

이집트 空軍機가 活動하고 Jizan 과 Najran 의 사우디 마을이 空中 襲擊을 받았다. 1月 “毒가스”를 使用했다는 非難이 나왔고 이집트는 이것을 否認하였다.

- 1月 “사랄”은 “마키히”를 帶同한 모임에서 人民革命聯合 (Popular Revolutionary Union)을 結成하였고 예멘밖에서는 “알와지르” (Al-Wazir)가 人民聯合軍 (Union of popular Forces)을 結成하였다.

와지르는 예멘 이슬람國과 이집트軍隊의 撤收와 사우디의 軍事援助 中止를 要求하여 리야드와 노바를 訪問하였다.

1967年 2月 11日 튀니시아와 요르단의 사랄政權認定을 撤退하였으며 요르단은 1967年 6月 아랍 이스라엘 戰爭時에 이집트와 外交關係 和解를 따라 再承認하였다.

(4) 이집트軍 撤收

- 1967年 8月初 아랍頂上會議 議題를 準備하기 爲한 “카투움”(Khartoum) 外相會議에서 이집트代表는 이집트政府는 1965年 8月 제다協定을 履行할 準備가 되었으며 軍隊 撤收 監督은 아랍 3個國委員會에 맡길것을 發表하였다. “사나”放送은 이집트가 이러한 決定을 하게끔 한 主要 要因은 1968年 1월에 英國政府가 아덴으로부터 英國軍을 撤收하겠다고 決定했기 때문이라고 發表하였다. 英國軍이 南아라비아로부터 撤收하면 예멘에 이집트軍이 駐屯할 必要가 없었기 때문에 이라지만 이집트가 아랍保守國家 特히 사우디로부터 財政援助를 받고 있다는 것에 對해서는 言及이 없었다.
- 8月31日 “카투움” 아랍指導者會議에서 파이잘 王과 나세르大統領 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졌다. 이집트軍隊는 3個月內에 撤收하고, 6個月內에 政治體制를 決定할 國民投票를 實施하며 “사랄”大統領이 過度政治體制를 이끌고 이라크, 모로코, 수단代表들이 協定內容의 履行을 監視하게 되었다. “사랄”大統領은 이 平和案에 對하여 反對하였지만 效力이 없었다.
- 8萬名으로 增強된 이집트軍隊는 예멘의 共和國 支配部分을 效果的으로 植民地化하였고 이들은 一般的으로 大衆으로부터 歡迎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戰鬥力도 優秀하지 못하였다.

1968年 1月까지 完了된 이 撤收는 王政派勢力에 勇氣를

북돋아 주었지만 반드시 歡迎 받지 못할 바는 아니었다. 이로써 “살라” 大統領은 이라크 公式訪問中 解任되고 “알이라니” (Al-Irani)가 3人 大統領委員會를 이끌게 되었다. (11月)

1967年 12月 “알 암리” 將軍이 그 委員會에서 穩健派인 “노만” (Noman)의 職을 繼承하였고 그가 首相이 된지 얼마안되어 다시 穩健派가 交替되었다. 남예멘에서 權力을 掌握한 民族解放戰線 (NLF)이 當時 예멘에서 相當한 影響力을 미치고 있었다.

- 1968年初에는 王政派軍隊가 進擊하여 한때 首都를 包圍하였다. 守備側은 자기들은 이집트로부터 裝備補給을 받으면서 이맘이 사우디로부터 援助를 받고 있다고 非難하였다. 1月 이라크, 수단, 모로코外相이 베이루트平和會談을 周旋하였지만 兩國의 不參으로 流產되었다. 4月 사나에 對한 軍事壓力이 多少 緩和되었다.

“알 암리” 政府를 顛覆시키려는 左翼陰謀가 失敗로 돌아갔다.

6月 “알 바드라” (Al-Badra) 이맘이 그의 아들 追從勢力에 依하여 權力의 座에서 밀려났다.

7月 남예멘의 代表가 兩國의 오지에 있는 反亂勢力에 關한 會談次 共和國 政府 指導者를 만났다.

(5) 內亂終熄

- 1968 ~ 69年 期間 王政派의 軍事的 活動이 弱化되어 갔고 1969年 여름까지는 王政派 指導階級이 國外로 亡命하였으며 그들의 部下들은 사나政權을 認定하였다. 이 急激한 崩壞의 主要要因은 이맘의 追放에 따른 王政派 家門內의 反目 때문이었다.

사나 占領의 失敗로 사우디 政府의 王政派에 對한 信賴가 弱化되었다. 結局 사우디는 王政派에 對한 財政 軍事援助를 中止하였다.

共和派들이 다른 아랍國과 蘇聯으로부터 軍事武器를 援助받음에 따라 그들의 優勢는 確保되었다.

- 그럼에도 1969 ~ 70年 겨울동안 北東地域에서 軍事的 衝突이 자주 일어났다. 이맘보다 사나로부터 支配 받기를 反對하는 反亂部族들이 數週日동안 사나를 包圍하였다. 軍事, 經濟的 困境外에 이러한 事例의 發生으로 알 암리 首相과 交替된지 6個月밖에 안되는 “쿠소미”(Kurshoumi) 首相이 辭任되었다. (1970. 2月)

모스크바 駐在 大使였던 “알 아이니”(Al-Aini)가 新任 首相이 되었다.

- 1970. 4月 “제다” 이슬람外相會議에서 首相과 外相이 사우디 閣僚를 私적으로 만났다. 公式的인 結果 發表文은 없었지만 非公式으로 平和案에 合意를 보았다. 그 結果 1970年 5月 이맘과 그 家門은 除外하고 王政派 指導級들이 “사나”로 되돌아와서 國政에 參與하였다.

알 샤미 (Al-Shami) 前 王政派 外相이 大統領委員會에 加入하고 4 名의 王政派가 內閣에 들어갔으며 其他 多數人이 高位 外務職과 國民會議 (National Assembly) 會員이 되었다.

- 政府는 王政體制를 認定한 西方國家들과 關係를 開設하려고 하였다.

1967 年 6 月 다른 아랍國들이 東獨을 認定하려는데 反對한 西獨의 政策을 따랐을때, 西獨과 外交關係가 再開되었다.

그 結果 “본” 政府로부터 經濟財政援助를 받았다.

1970 年 7 月 사우디가 公式的으로 外交關係를 開設하고 이어서 英國, 佛蘭西가 뒤따라 外交關係를 樹立하였다.

- 1970 年 12 月 國民會議를 代身할 諮問會議 設立을 規정한 新憲法이 宣布되고 總選舉는 1971 年 2 月 4 月 사이에 實施되었다.

- 1971 年 7 月 軍高位層에 依한 政府 顛覆企圖가 있다는 소문이 있고 數名의 軍將校가 解任되었다. 9 月 “알 암리” 首相이 事務室에서 한사람을 殺害한 後 國外로 追放당하였다. 1972 年初에는 FLOSY와 南아라비아 聯盟의 支持者들이 (아덴 政府의 反對勢力)이 兩國 國境에 集結됨에 따라 사나와 아덴사이의 緊張이 高潮되었다.

- 9 월에 激烈한 國境衝突이 있었으며 아랍聯盟의 仲裁로 10 월에 休戰하였다. (10.28)

平和協定과 兩 예멘의 統合協定이 카이로에서 締結되었다.

보다 細部的인 事項들이 트리폴리 頂上會談에서 論議되었다.(11月)

單一 예멘共和國을 세우고 首都는 사나로 하며 國教는 이슬람教로 하고 共用語는 아랍語로 하기로 하였다. 統合問題를 協議할 委員會가 構成되었다.

1973年1月 統合을 阻害하는 事例가 發生하였지만 2月 새 政治組織인 “예멘聯合”(Yemeni Union)이 統合의 期待속에 사나에서 結成되었다. 5月末 國境衝突이 다시 있었고 5月30日 3人 大統領會議 會員인 “무하마드 알오트만” 部族長이 暗殺되었다.

이 事件으로 兩國 關係가 一時的으로 惡化되었지만 統合 論議는 繼續된다고 發表하였다.(5月)

- 1972年12月 “알 아이니” 首相이 辭任하고 “알 하자리” 새 政府가 들어섰다. 새 政府는 많은 暴力騷擾事態에 直面하였다.(特히 南部地域)

1973年9月 “이라니” 大統領과 南예멘의 “루바야” 大統領 間의 사나頂上會談에서 統合期間을 1年 延長하고 테러와 사보타지를 防止하는 問題에 全力을 기울일것에 合意하였다.

- 1974年4月 마키(Hassan Makki) 새 政府가 들어섰으며 새 政府는 南예멘과 統合問題를 包含한 前任者의 政策을 繼續할 것을 約束했다.

6月13日 무혈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親 사우디派인 “알

하마디 ” (Ibrahim Al-Hamad) 大領의 軍事革命委員會가 憲法과 諮問會議를 停止시키고 軍高位司令部 (High Command)와 예멘 國民聯合을 解體시켰다.

“하마디 ” 大領은 經濟的 行政的 無秩序를 없애기 爲하여 쿠데타가 必要하였다고 主張하였다. 前 大統領 “알 이라 니”가 다마스쿠스로 出國당하였다.

6月 19日 잠정憲法이 提案되고 6月 21日 알 아이니 (Moshin Al-Aini) 새 政府가 構成되었다. 새 政府는 모 든 아랍國과 關係를 맺고 非同盟 運動을 支持하며 아랍 聯盟憲章과 유엔憲章을 遵守할 것을 宣言하였다. 南예멘 과의 窮局的인 統合目標는 尊重되었다.

- 1975年 1月 아이니 首相이 물러나고 前 中央銀行 總裁 인 Abdel-Aziz Abdel-Ghani가 後任首相이 되었다. 1年의 軍事統治後 1975年 6月 憲政體制로 復歸될 것이 豫想되 었으나, “하마디” 大領은 1975年 5月 憲法을 改正할 人民 會議 (Popular Assembly)의 選舉를 監督할 委員會를 指名 하였다.

1975年 10月 “하마디” 大領은 憲法改正會議를 停止시키고 最高選舉委員會 監督下에 行할 새 選舉를 要求하는 措置 를 命令하였지만 選舉日은 提示되지 않았다.

- 1975年 동안은 北예멘이 사우디와 美國에 接近하고 있 었고 8月 “카레드” 사우디 國王은 財政 및 開發計劃 支援用으로 8億 1,000萬 리야드를 援助하였고, 1976年

4月 사우디國王이 北예멘을 美國武器로 再武裝하는데 所
要되는 費用을 사우디가 負擔할 것이라고 發表하였다.

한편 1975年8月 하마디 大統領은 蘇聯과의 關係는 凍
結시키고 蘇聯軍事援助를 拒否할 것이라고 發表하였다.

- 兩예멘의 統合問題는 “카타바” 頂上會談이 開催된 1977年
2월에 漸次 接近되어 外務, 經濟, 通産 閣僚로 構成되는
合同會議를 設置하였다. 그 會議는 每6個月마다 사나와
아멘을 번갈아가며 開催하였으며 經濟, 通産 合同小會議가
잇달아 設置되었다.

- 1977年4月, 72年12月과 74年2月 사이에 執權한 하
자리 首相이 런던에서 被殺되었다.

그는 “이맘” 下의 閣僚였으며 共和體制에로의 履行에 消
極的이었다. 首相으로서 그는 사우디와 外交關係를 密着
시키고 兩예멘의 統合推進에는 積極적인 姿勢를 보이지
않았다.

- 1977年7月 하마디 大統領은 前 이맘制度 追從者인 北
部 部族의 反亂에 부딪혔다. 10月 하마디가 사나에서
暗殺當하였으며 이 事件 犯人에 對한 억측이 구구하였다.
“가쉬미” (al-Ghashmi) 中領이 議長이 되었다. 그는 就
任 2周內에 暗殺을 當할뻔 하였으나 軍人給料의 倍引上
等の 措置로 反對派를 회유하였다. 同時에 그는 援助를
사우디에 漸漸 依存하면서 비록 定規會議는 繼續되었지만
南예멘과의 統合을 서두르지 않았다.

- 1978年 5月末 알렘 (Abdel Alem) 少領이 南部에서 反
“가쉬미” 反亂을 일으켰다.

그는 가쉬미 大統領會議의 會員이었으며 反亂後 南예멘으로
逃走하였다. 6月末 가쉬미 大統領이 南예멘 大統
領 特使에 依해 爆死當하였다. 北예멘 當局은 그것이
南예멘의 調整에 依한 것이며 알렘 少領이 利用當한 結
果라고 非難하였다.

事實이야 어떻든 그것은 南예멘內에서 反撥을 일으켜 루
바야 大統領이 逐出 銃殺되고 國境衝突이 再發되었다.

(1978年 7月)

- 政情의 不安과 暗殺事件에도 不拘하고 北예멘은 民主政府
樹立에 보다 發展하였으며 1978年 2月 軍事評議會는 2
~ 3年の 任期를 가진 99名의 憲法制定國民會議 (Consti-
tuent Peoples Assembly) 議員을 任命하였다. 그들의 任
務는 大統領制 形態를 提案하고 憲法을 檢討하며 總選舉
를 準備하는 것이었다. 4月 그 會議는 가쉬미 大領을
共和國 大統領으로 選出하였다. 軍事評議會는 解體되고 그
憲法制定 國民會議는 1978年 6月 “가쉬미”의 暗殺 以
後에도 閣僚會議와 더불어 存續되었다.

國民會議는 알 아쉬 (al - Arshi)를 議長으로 하는 4
人 大統領評議會를 設置하고 “살레” (Abdulla Saleh) 中領
을 大統領으로 選出하였다. (7月)

大統領評議會의 主要任務는 새 大統領의 選出時까지 權力

을 維持하는 것이었다.

- “ 살레 ” 大統領은 1978年 9月 暗殺當할뻔 하였고 10月에는 高位軍將校等に 依한 쿠데타 企圖事件이 있었다. 이 事件에 南예멘이 介入하였다는 疑心이 가자 兩國間에는 緊張이 高潮되었다. 1978年 10月과 1979年 1月 사이에 北예멘 當局은 南예멘의 領土侵入과 사보 타지行爲를 累次 糾彈하였으며, 數個月동안의 散發的인 國境衝突이 1979年 2月 4月 동안에는 大規模戰鬪로 擴大되었다.

北예멘 反政府團體인 民族民主戰線이 國境都市에서 破壞活動을 하고 있었으며 數個의 마을을 占領하였다.

시리아, 요르단, 이락의 仲裁團이 4月 20日 休戰을 提議하였고 이것이 失敗로 끝나고 아랍聯盟이 合意 履行과 占領地域의 撤收를 監視하기 爲하여 介入하였다.

4月 29日 아랍聯盟의 周旋에 依한 쿠웨이트 頂上會談이 開催되어 統一만이 兩國의 異質化를 克服하기 爲한 唯一의 길임을 確認하였으며 平和協定속에 이를 爲한 그들의 實踐을 誓約했다.

以後 合同憲法 起草委員會와 頂上會談이 開催되었다.

- 蘇聯과 南예멘 사이에 20年 友好協力協定이 1979年 10月에 締結되었으며 이것은 統一의 새로운 危脅要所가 되었다.

1980年 5月 統一以前の 措置로 合同經濟計劃을 樹立하고 開發計劃에 兩國이 相互協力키로 合意하였다.

- 北예멘이 事實上 蘇聯으로 接近되었었다.
1979年4月 1億6千萬달러의 美國 軍需武器를 購賣한 後
사나政府는 1979年11月 모스크바와 武器去來協約을 締結
하고 1980年初에는 蘇聯의 아프카니스탄 侵攻에 對한 유
엔總會의 非難에 加擔하지 않았다. 1980年4月 北예멘
은 사우디의 援助 댓가로 蘇聯으로부터 軍事武器 購買를
中斷하였다.
- 살레 大統領은 北예멘 政府를 보다 民主化시키기 爲한
措置를 取하였다. 1979年5月 15名의 諮問會議委員을
任命하고 制憲國民會議議員을 159名으로 擴大하였다.
1980年5月 一般國民會議 (General Peoples Congress)를 設
置하기 爲한 國家諮問委員會 (Committee for National Consu-
latation)를 構成하였다. 그 委員會의 議長은 “알 마
크다미” (al-Magadmi)이며 委員數는 52名이다.

4. 남예멘政治略史

가. 主要事件日誌

- 1513 포르투갈 아덴占領 기도 失敗로 끝남.
- 1538 오스만 터키 아덴占領(유럽勢力 浸透에 對抗하기위함)
- 1547-72 오스만體制에 抵抗, 暴動惹起
- 17世紀 實質權限을 地方 토후가 장악
- 1735 Lahe j 回教君主 勢力 擴大
- 1798 나폴레옹의 이집트 占領으로 아덴의 戰略的 重要性增大
- 1799 英國 페림섬 占領. 給水困難으로 撤收
Lahe j 回教君主와 友好條約 締結
- 1834 英國 “소코트라” 섬 購賣契約 成立
- 1839 英國艦隊 아덴占領
- 1853 수에즈 운하 開通. 아덴의 重要性 增加
- 1854 英國 “쿠리아 무리아” 섬 오만으로부터 獲得
- 1857 ○ 英國과 平和條約 締結
○ 페림섬 英國에 讓渡
- 1882-1914 아덴 및 20 個小國家, 英國과 保護協定을 맺고 保護
領이 됨.
- 1937 아덴, 印度 總督으로부터 分離, 獨立된 總督에게로 歸屬
- 1955 아덴 植民地令 發效. 立法 評議會 構成을 위한 選舉
實施

- 1956 예멘軍이 保護領 侵攻 (1956-1959)
- 1959 憲法改正, 憲法評議會 構成을 위한 選舉實施
- 1960 ○ 아덴總督 “ 閣僚制度의 導入과 西아덴保護領과 남아랍에
미레트 聯邦과의 聯合意思 ” 發表
- 1962 ○ 南아라비아 聯邦共和國으로 命名 (4 月)
- 立憲議會가 런던에서 開催 (7 - 9 月)
- 아덴 自治政府 樹立을 要求하는 스트라이크 격렬
- 1963 ○ 아덴, 南아라비아 聯邦에 編入協定締結 (1 月)
- 植民地 解放에 관한 유엔 特別委員會 英國 非難 報告書
採擇, 유엔 總會 議決 (12 月)
- 아덴의 反英運動 激烈 (1963-66)
- 1964 ○ 英國 및 聯邦軍과 예멘軍과 國境 衝突
- 아덴을 除外한 南아라비아 聯邦이 1968 年 以內에 獨立
된다는 合議書 締結
- 1965 漸增하는 테러로 아덴閣僚會議 解體
- 植民地 憲法停止 (10 月)
- 1966 유엔植民地 特別委員會, 유엔調查班을 南아라비아에 派遣
決議
- 1967 ○ NLF 勢力과 FLOSY 勢力과 武力衝突.
- NLF 勢力 勝利
- 英國에서 獨立, 南예멘人民共和國 誕生 (11 月 30 日)
- 大統領; 사바 (民族解放戰線 指導者)
- 1968 ○ ‘ 진지바 ’ 會議 以後 民族解放戰線內에 강온파 對立 격화

- 小規模 反亂騷擾 發生
- 1969 ○ “ 사바 ” 축출, “ 루바야 ” 權力掌握 (親蘇 강경파)
 - 36個 外國會社 國有化 措置
- 1970 새憲法 公布 (11 月)
 - 國號 : 예멘人民民主共和國
 - 예멘統一을 겨냥한 새憲法 宣布
- 1971 ○ “ 하이셈 ” 首相이 統治
 - “ 하사니 ” 로 交替
- 1972 ○ 北예멘과 國境衝突 (9 月)
 - 아랍聯盟의 介入으로 종전 및 兩國 統合 合意 (카이로 10.28)
 - 루바야大統領 蘇聯訪問 (11 月)
 - 트리폴리頂上會談 (11.28)
 - 統合原則 合意 (國家理念, 政治體制등)
- 1973 ○ 사나頂上會談 (9 月)
 - 統合期間 1年間 延長
- 1975 ○ 民族解放戰線, 大衆前衛黨, 民主人民聯合이 民主戰線 政治 組織으로 統合
 - 아덴港, 소코트라섬, 페림섬등을 蘇聯에 海空軍 基地로 提供
- 1976 사우디와 극적으로 外交關係 再開, 사우디 援助同意
- 1977 ○ 소말리아와 戰鬪하고 있는 이디오피아를 支持, 蘇聯武器 아덴經由하여 이디오피아로 공수

- “카타바”首腦會議
 - 國防, 外務, 經濟, 通信上으로 構成되는 統合 特別
委員會 設置合意
- 1978 ○ “루바야”大統領, 北예멘大統領 爆死事件에 關聯되어 起
訴 銃殺(쿠테타)
- 아랍聯盟이 南예멘에 對한 政治, 經濟的, 裁制措置 決議
(7.2)
- 1979 ○ 南예멘軍 北예멘 侵攻(2.24)
 - 아랍聯盟의 介入으로 休戰
 - 쿠웨이트頂上會談: 統合原則 合意(3.30)
 - “코시킨”蘇聯首相 訪問(9 月)
 - 蘇聯과 友好協力 締結(10 月)
- 1980 ○ 蘇聯과 經濟, 科學, 技術協力 協定締結(1 月)
 - “이스마일”大統領 실각, “무하마드”就任
 - 南예멘의 支援을 받는 제릴라들이 北예멘에서 戰鬪加熱
(5 月)
 - 무하마드大統領 蘇聯訪問(5 月)
 - 무하마드大統領 사우디訪問(6 月)
 - 아덴首腦會談(北예멘大統領의 最初訪問)
 - 經濟, 安保, 通信部門合同委員會 協力強化 및 統合
努力 繼續 合意
 - 무하마드大統領 쿠웨이트(11. 1 - 2), 바레인(11.13
- 14), 카타르(11.14 - 15), U·S·E (11.15-16) 訪問

1980 ○ 무하마드大統領 蘇聯訪問(2月)

1981 ○ 南예멘, 리비아, 이디오피아 3國 友好協力 條約締結
(8.19)

○ 사나頂上會談(9.15)

○ 쿠웨이트頂上會談(11.23)

- 兩國關係改善 및 統合推進 再確認

○ 아덴頂上會談(11.2)

- 統合을 위한 閣僚理事會 構成合意

1982 ○ 統合憲法草案 合意 發表(1.9)

○ “ 무하마드 ”大統領 蘇聯訪問(9月)

나. 南예멘의 政治體制

(1) 立憲制度와 政府

- 1970年 憲法에 따라 立法機構로 人民最高會議 執行機關으로 大統領評議會와 內閣이 있다. 大統領評議會는 大統領 民族戰線 政治組織의 總秘書와 首相으로 構成되어 있다.
- 한번도 選舉를 한적이 없으며 選舉機構가 없다.
- 新生國家로서 10年동안 部族들의 騷擾, 反體制파와 武裝衝突, 國境紛爭, 수차의 쿠데타陰謀, 財政破綻등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外國의 支援(특히 蘇聯과中共)에 의해서 國家가 維持되고 있다. 民族戰線 政治組織內에서도 이데올로기 또는 부족성에 따라 分裂되어 있어 政治力學 關係가 複雜하다.

이러한 國內矛盾은 오랫동안 敵對關係에 있던 保守國家인 사우디와 아랍 에미레트로부터 1976年 援助를 받은것에 잘 나타나 있다.

(2) 人口構成

- 1967年 獨立以前에는 南예멘에는 外國으로부터 相當數의 移民이 흘러 들어왔고 특히 예멘인이 많았다.

그外 印度人, 파키스탄人, 에디오피아人, 소말리아人등이 왔다. 수에즈운하의 閉鎖(1967-75)로 이들중 상당수가 出國하였다. 獨立以前에 인도네시아, 말레지아로 이민갔던 많은 Hadhram 이 本國으로 되돌아왔다.

- 비록 北部아랍人 (Adnam) 과 南部아랍人 (Qahtani) 의 差異가 있지만 土着人口는 거의 아랍인이다.

部族構成은 多樣하고 Zei 라고 불리는 大聯合內에서 1300-1400 의 부족이 組織되어 있다.

소코트라섬의 住民은 本土의 아랍人과는 달리 그리스, 포르투갈, 아프리카인이 混雜되어 있다.

東部地域의 Mahra 部族들은 “ 힘야라이트 ” 後孫들이다.

(3) 植民地經驗

- 아덴과 南예멘의 다른 領域들은 1967年까지 128年 동안 東西아덴保護領으로 英國의 支配下에 있었다. 英國의 政治的 浸透는 아덴에서만 有效하였고 나머지 領土에서는 盲目的이었을 뿐이었다.

社會 文化的 部門에서의 英國의 衝激은 더욱더 否定的이다. 1967年 反英 政府에로 權力이 移讓되었으며 法律과 教育制度를 除外하고는 英國統治의 遺産은 거의 없다.

(4) 外交政策

- 外交政策의 主要 決定要素는 좌익 이데올로기다. 이로 인하여 蘇聯 東유럽國家와의 사이가 가깝고 南예멘 經濟回生의 主要要素인 蘇聯의 軍事經濟援助로 더욱 가깝다.
- 最近까지 아랍만의 保守國家의 反對때문에 아랍世界로 부터 孤立되어 있었다. 사우디와 北예멘과 國境衝突이 있었다. 오만의 과격파(phofur)제릴라들에 대해 軍事援助를 하고

있다.

- 1975年 이러한 孤立을 脫避하고자 外交的인 公세를 取하여 成功을 거두었다. 아랍 에미리트와 外交關係가 開設되었다. 北예멘과의 關係는 兩國의 統一이 窮極的 目標라고 合議하는 水準까지 改善되었다.

1976年 사우디와 外交關係를 再開함으로써 外交政策의 重大한 發展을 이룩하였다. 1977-78年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戰鬪에서 이디오피아에 軍事援助를 하였다. 이 戰鬪에서 南예멘의 役割로 西유럽國家 特히 美國과의 關係를 深化시켰다.

- 美國과의 關係는 美國의 이스라엘 支援때문에 1969年 中斷되었다가 아직 再開되고 있지 않다.

南예멘은 1967年에 유엔에 加入하였다. 1799年 英國은 페림섬을 占領하였으나 給水事情의 困難으로 本土로 退却하여 Lehej 回教君主와 友護條約을 맺고 1902年에 다시 商業條約을 맺게 된다.

어쨌든, 蒸氣機船時代가 到來함에 따라 英國이 支配하고 있는 水域에서의 基地를 所有할 必要性이 배가되고 이에 의하여, 소코트라섬 購賣契約이 始作되었으며 1834年에는 暫定的으로 東印度會社에 歸屬하게 되었다.

만일 1837年 英國 國旗를 揭揚하고 있는 印度船舶의 難破와 이에 대한 아덴近處에서의 海敵行爲로 술탄(回教君主)와의 關係가 惡化되지 않았더라면 그 契約은 成立되었

을 것이다.

그 事件은 1839年 1月 16日 봄베이에 駐屯하고 있는 “헤인즈” 總督 管轄의 印度艦隊를 派兵하여 아덴을 占領케 하는 結果가 되고 平和條約에 의해 아덴은 大英帝國의 植民地가 되어 봄베이 政府의 統治를 받게 되었으며 回教君主는 每年 6,000 달러의 支給을 받게 되었다.

回教君主는 1857年 英國과의 永久平和條約이 締結되기까지는 아덴의 回復을 拋棄하지 않았다. 페림섬은 同年에 讓渡되었고 쿠리아무리아 (Kuria Muria) 섬은 1854年에 이미 오만回教君主로부터 獲得하였다.

수에즈운하의 開通과 1853年부터의 通行航路의 再開는 아덴 (1853年以後 自由港으로 됨) 의 重要性을 漸次 增加시켰다.

20世紀에 들어와서 漸次的으로 石油에 의한 石炭의 代替는 페르시아만과 繫係되어 있는 아덴을 單順한 歷史的인 位置에서 燃料供給基地로의 變化를 誘發하게 되고 또한 오트만 토후 (Sheik) 에 있는 분수 우물에서의 신선한 飲料水의 豊足한 供給 亦是 아덴의 戰略的 價値를 賦與하고 있었다.

1932年 아덴政府는 印度總督에게 移管되고 1937年에 執行委員會 援助를 받는 獨立的 總督에게로 歸屬되었으며 國王統治地域은 2年前인 1935年에 印度法 (India Act) 에 의해 認定되고 1944年에 承認된 아덴 立法評議會는 1947年에 設置되었다.

1955년에는 아덴植民地令이 發效되고 評議會 構成을 위한 選舉가 同年 12월 실시되었다. 1959년에는 憲法改正을 하였다.

1959年 4月 立法評議會 構成을 위한 選舉가 實施되고 12名의 議員(아랍인 9, 소말리아인 2, 印度人 1)이 選出되었으나 多數의 아랍인은 選舉에 대해 拒否反應을 보였다.

1961年 1月 16日 “찰스 존스톤” 경(아덴指導者)은 “매클로드植民地上의 아덴政府의 內閣과 行政府 業務를 위한 執行委員會가 곧 構成될 것이며 西아덴 保護領과 南아랍“에미레트”共和國과의 緊密한 關係를 維持할 것”이라고 밝혔다.

聯邦은 1962年 4月 南아라비아 共和國으로 命名되고,

1967年 3月 30日 南아라비아의 아덴과 保護領은 南예멘共和國이라는 이름으로 獨立을 達成하였다.

다. 南예멘 近代史

(1) 아덴의 植民地化 過程

포르투갈이 희망봉 (Cape of Good hope)을 동經由하여 印度로 가는 航路를 開拓했을 당시 (1497 - 1498)만해도 아덴 (Aden)은 홍해와 印度洋을 連結하고 페르시아만과 동아프리카해안의 地方貿易活動의 據點으로서 商業의 요충지였다.

1513年 포르투갈이 아덴을 占領하려 하였으나 失敗하고, 포르투갈의 홍해進出을 反對하는 오스만 터어키 勢力에 의해 1538年에 점령되었다. 그러나, 예멘에 대한 完全한 支配는 不安定하여 1547 - 51年 사이에 오스만體制에 대한 강한 저항을 유발하게 되고 1566 - 72年 사이에는 심각한 暴動이 惹起되었다.

17世紀에 들어와서 오스만터어키 勢力이 쇠퇴함에 따라, 원거리 地域에 대한 회교지도자의 권위는 평시보다 훨씬 더 미약하게 되었으며 實質權限은 지방 토후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1735年 이후 주목할만한 勢力人物이 Lahej의 회교 군주자였다.

印度航路 (희망봉 經由方法)의 開發은 상업요충기지로서의 아덴의 번영을 급격히 쇠락하게 했으나 1798年의 나폴레옹의 이집트 점령은 英國으로 하여금 봉쇄계획의 일환으로서의 아덴의 戰略的 重要性을 인정하게 되었다.

(2) 남아라비아 保護領

1882年부터 1914년까지 英國 政府와 保護協定을 맺고 아덴 총독으로 하여금 자국총독으로서의 權威를 認定한 國家가 아덴의 북쪽과 海岸(페르시아만)을 따라 600여마일에 걸쳐 20個 있었다.

그중 大部分의 國家가 英國과 우호조약을 맺고, 領土內에서의 內政問題에 있어서는 獨立의 權限을 가지고 있었지만 各統治者는 英國 官吏나 總督이 任命한 政治官僚들에 의한 諮問을 받고 있었으며, 反面에 英國은 各國家의 安全을 保障하고 그들은 外國에 領土를 讓渡하지 않도록 同意하였다.

(가) 동 아덴 保護領 國家

동 아덴 保護領 國家들의 領域은 “하드라마우트”(Shihr와 Hakalla의 Quaiti 國家, Saium의 Kathiri 國家로 構成)와 Balhalf와 Biralì의 Wahidi 술탄영지, “소코트라”, “퀴신”의 “마하라” 술탄영지, Irga와 Haura의 토후영지로 構成되어 있었다.

1966.7.1 전체인구는 約 326,000名이었다.

“콰이티” 술탄(sultan: 회교군주)은 1888年 英國과 最初로 保護協定을 締結하였고, 1918年 “콰이티” 술탄과 “카시리” 술탄사이에 協定이 뒤이어 締結되어 保護協定을 그 國家에로 擴大하는데 同意하였다.

양 술탄은 宗教와 이슬람관습을 除外하고는 모든 問題에서 英國官吏(에이전트)의 助言을 받아들일것을 內容으로한 協

定에 同意하였다. (1937. 1939)

英國官吏와 “ 카시리 ” 술탄은 憲法上의 統治者로서 의회로부터 保障받았다. 憲政과 經濟問題에 있어서 兩國사이에는 緊密한 協力關係가 維持되었다.

1949年 Balhaif 의 Wahidi 술탄과 顧問協定이 締結되었다. Qishn 과 Socotra 의 “ 마하라 ” 술탄과 兩國사이에 保護協定이 締結되어 이로써 Socotra 와 Abd Alkuvi 와 Brothers 섬들이 보호령속으로 編入되었다.

(나) 서아덴 보호령 국가

서아덴보호령은 원래 17個國家로 構成되었고 1966.11.1 人口는 570,000 名으로 推算되었다.

1944. 45 年에 5 個國이 統治問題에 있어서 아덴총독의 諮問을 받아들일 것을 內容으로 한 顧問協定을 英國과 締結하였다. (Fadhli Lower Aulaqj, Lower Yafai, Beihan, Aniv of Dhala) 1952年 Aulaqi 托후, Audhali 술탄이 英國과 類似한 協定을 締結하였고 Lahij 가 顧問 및 保護協定을 잇달아 맺었다.

英國 政治官僚와 아랍보조 관료가 연방수도, “ 알 이티하드 ” 에 本部를 둔 植民地 부고등판무관의 監督下에 있었다.

1954. 56 年 英國當局은 서아덴보호령내에 있는 地方統治者들간의 聯邦案을 檢討하였으며 1959. 2. 11 서아덴보호령의 17 個國家中 6 個國 指導者가 聯邦憲法과 대영상호 親善 및 防衛協定에 서명하였다.

英國政府는 聯邦이 獨立國家로 되도록 財政軍事援助를 約束하였다.

聯邦會員國들은 英國의 同意없이는 어떠한 外交關係도 맺을 수 없었다. Lahej 는 1959年 10月에, Lower Aulagi와 Aqrabi & Dathima 는 1960年 2月에 聯邦에 加入하였다.

동 아덴보호령에 있던 Balhaf 와 Bir Ali의 Wahidi 國家들도 1962年 1月에, 아덴 植民地는 1963年 6月에, Haushabi 와 Shaib 는 1963年 4月에 加入하였다. 1965年에는 Alawi 와 Mufiahi 토후, Upper Aulagi 술탄영지가 加入하였으며 새연방수도는 “발 아마드”군의 “알 이티하드”였다.

英國이 英國에 의하여 維持되는 保安軍外에서 아덴國家들內의 부족군위병과 Cuairi 국의 Mukalla 정규군에 대한 防衛費를 부담하였다.

1961年 11月末 남아랍 에미리트 聯邦에게 아덴보호령 소집병에 대한 指揮權을 넘겨주었다. 그 소집병은 아덴防衛와 페림·카마란에 주둔시키기 위하여 1928년에 形成되었으며 聯邦國防長官인 Lahej 회교지도자의 指揮下에 있었지만, 軍통수권은 英國軍이 行使하고 있었다.

(3) 아덴과 예멘

보호령과 隣接國인 예멘과의 關係는 複雜미묘하여 1914年 4月 오스만터키 政府와 締結된 協定에 따라 確定된 國境

線에서는 紛爭이 끊일날이 없었다.

第1次 世界大戰途中 예멘에 주둔하고 있는 터키軍隊가 보호령의 大部分을 점령하였으며 예멘에서의 宗教的 權威를 行使하며, 가장 強力한 추장인 사나의 이맘(회교지도자)는 전 영토에 대한 要求를 하게 되고 “아미르” 地域에 進出함으로써 전 영토에 대한 完全한 支配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英國軍에 의해 그의 進出은 봉쇄되어 1928년에는 “아미르” 地域에서 거의 퇴각하게 되고 1934年 2月 英國-예멘간의 平和友好條約이 40年을 有効期間으로 하여 締結되었다.

同時에 兩政府는 現狀維持를 위해 努力할 것임을 確認하고 국경의 分割에 대한 協議를 할것을 合意하였다.

英國은 예멘의 獨立을 認定하고 예멘은 아미르 地域에서의 殘餘兵力에 對한 撤收를 수락하였으며 1950년에는 外交關係를 樹立할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그러나 1953年 예멘은 유엔에서 아덴보호령에 對한 權利를 다시 주장하고 그후 몇년간은 國境에서의 충돌事件이 자주 發生하였다.

1956年 9月 예멘군이 保護領域內에 대한 급습을 단행하고서 아덴에 侵攻하였으며 1959년까지 이와 類似的한 事件이 자주 發生하였다.

이 期間에 무기가 소련과 그 同盟國들로부터 搬入되고 1958年 8月에는 예멘과 아랍共和國(U·A·R)과의 公式的인 同盟國關係가 締結되었다. 英國은 예멘군을 격퇴하기 위한 軍隊를

派遣하고 1958년에는 獨立된 軍司令部를 設置하였다.

예멘은 두차례에 걸쳐 유엔에서 英國이 自國의 領土를 侵入하고 있다는 主張을 하였다. 不明確한 國境分割로 因한 충돌사건은 1959年 이후 점차 減少하여, 同年 11月에 아덴 總督이 예멘을 訪問하여 2個의 非公式 協定(아덴과 예멘과의 民間協定問題와 國境紛爭의 解決을 위한 戰線司令部의 設置問題)을 맺었으나 1962年 8月 예멘政府는 런던회의에서 締結한 協定을 非難하면서 再次, 아덴領土의 영유권을 主張하게 된다.

1962年 9月 27日 예멘 革命이 勃發하여, 예멘 共和國이 創建되고 革命指導者 Sallal 大領은 아덴領土에 對한 權利를 要求하지 않을것과 英國과의 우호관계 維持를 希望하고 있음을 申明하였다.

소련과 아랍 에미리트는 共和體制를 즉각 承認하고, 美國도 같은 의사를 表明하였으나 英國은 이를 拒絕하였다.

新政府는 英國當局이 1962-63, 겨울동안 왕정파를 支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Jaiz에 있는 英國代表部가 폐쇄되고 國境에서의 紛爭이 벌어지면서 예멘의 항의가 유엔에 提出되었다. 英國과 聯邦軍은 1964年 65年에 걸쳐 반체제의 국경부족에 對한 軍事作戰을 開始하고 그 結果 예멘과의 즉각적인 충돌사태가 誘發되었다.

狀況은 이 地域에서의 왕정파의 繼續적인 준동으로 말미암아 複雜하게 되어갔다.

1964年 英國은 유엔 옵서버에 의한 國境地域의 監視를 提議하였으나 共和政府는 아덴과 그 聯邦이 예멘에 속한다는 점을 理由로 이 提議를 拒否하였으며 이와 같은 一連의 態度는 獨立協商途中이나 새 南예멘政府와의 關係를 好전시키지는 못하였다.

(4) 立憲制度 發展

- 1960年1月 總督은 아덴植民地議會에 대하여 아덴에 閣僚制度가 導入되어야 하며, 執行委員會 會員은 閣僚의 지위를 가지게 될것이라고 發表하였다. 총독은 아덴에 있어서 立憲制度를 發展시키고 서아덴보호령과 남아랍 에미리트聯邦과의 關係를 密着시키기 위한 努力이 進行되고 있다고 言及하였다.
- 아덴에서 5名, 聯邦에서 5名의 閣僚가 參席한 憲政會議가 1962.7-8월에 런던에서 開催되었으며, Aden Trade Union Congress와 人民社會黨은 (아덴거주 예멘인의 支持를 받고, 예멘의 궁극적 統一을 目標로 하는 團體)同會議를 비난하였다.
1962.7.23 現在의 아덴의회的 構成에 대한 항의와 아랍 에미리트 聯邦과의 聯合이 進行되기전에 總選舉와 아덴自治政府樹立을 要求하는 스트라이크를 벌렸다.
- 1962.8 討論結果 立憲國家로서 아덴과 聯邦을 結合할 것을 勸告하는 백서를 發表하였다. 英國은 아덴에 대한 統治權과 國家防衛와 國內安保責任을 保有하도록 明記되어 있다.

이 提案은 英國과 聯邦(남아라비아聯邦)과의 초안협정의 主要한 特徵이다. 페림, 쿠리아루리아섬은 除外되었다.

- 聯邦으로 結合하는데 대한 反對가 있었고 몇몇 政黨은 이 措置에 反對하여 1962年 스트라이크와 데모를 하였다. 아덴의회가 이 초안을 通過시킬때 격렬한 暴動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英國과 聯邦은 1963年 1月 協定에 署名함으로써 아덴은 聯邦의 一員이 되었다.

(5) 聯邦에서의 아덴의 結合

아덴 新政府는 9名의 閣僚로 構成되었고 法務長官(英國人)을 除外한 全員이 아덴인이었다.

主要經濟支援金이 英國軍隊經費로 남아있자 이것이 과격 아랍 民族主義者들의 疑心을 받았다.

1963年 5月 植民地 解放에 關한 유엔 特別委員會 代表들이 예멘을 訪問하려 했지만 入國이 許諾되지 않았다. 7月 그들은 住民의 大部分이 政府의 抑壓法令과 警察措置를 싫어하고 있고 英國이 남아라비아인의 大部分이 예멘과 統合하기를 願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植民地統治를 延長하려하고 있다는 報告書를 提出하여 委員會 全員會議과 總會에서 同報告書가 採擇되었다.

英國은 이 報告書를 拒否하였다. 이 사이 2個의 國家 Hausshabi 술탄영지와 Shaibi 토후영지가 聯邦에 加入하였으며 4月 1日 聯邦內에서 모든관습의 장벽이 撤廢되었으며 아덴은

自由港으로 남아있다.

1963年 12月 아덴植民地 고등판무관을 暗殺하려는 기도
로 2名이 死亡하고 50名이 負傷하였다. 緊急事態가 宣布
되고 많은 政治犯이 억류되었다.

이 措置는 明白히 苛酷한 것이었으며 이들은 수주일後에
釋放되었다.

(6) 獨立運動

1964年 6月 立憲會議가 런던에서 開催되고 아덴을 除外
한 남아라비아 聯邦이 1968年 以內에 獨立된다는 合意書
가 締結되었다.

1965年 8月 再次 會議가 런던에서 있었으나 會議가 결렬
되고 아덴에서 暴動이 增加되었다. 1963.12 - 1966 年까지
60名이 死亡되고 350名이 負傷當하였으며 이 테러결과 被
害者는 英國人이 1/3이나 되었다.

1965年 4月 “마카위”가 首相이었으나 漸增하는 테러와
테러리스트에 대한 刑法 부과와 제제 조치에 對한 失敗로
1965年 10月 아덴 閣僚會議가 해체되고 植民地 憲法이 停
止되었다.

(7) 政治的 再協力 *

民族主義 側面에서 보면, 남아라비아에서의 政治狀態는 混亂
의 增加現象을 나타내었다. 人民社會黨은 1965年 5月 피점
령 解放組織 (Organization for the Liberation of the

occupied South)을 形成하기 위하여 남예멘 解放委員會와 남 아라비아 聯盟과 結合하였다.

이어서 1966年 1月 피점령解放組織은 피점령민족 解放戰線 (FLOSY : 이집트의 支援下에 아덴에서 테러 活動을 하고 있는 과격파 組織)과 統合하였다.

이 解放戰線은 (FLOSY)는 利害關係의 새로운 結合으로 부터 나왔고, 그 組織에서 Makkawi 와 al - Asnag 같은 政治指導者가 重要な 職責을 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아라비아 聯盟은 統合民族主義 運動에의 完全한 吸收에 反對하였으며 이전의 獨立性을 되찾았다. 組織으로서는 온건한 民族主義 色採를 띄었으며 예멘의 領土要求를 拒否하고 테러와 이집트의 影響을 否認하며 아덴 聯邦國家 및 동아덴 보호령을 包含하는 統一남아라비아 國家建設을 目標로 하고 있었다.

남아라비아 聯邦의 토후제도와 회교군주제도를 支持하는 傳統主義者들은 이러한 여러 民族主義의 勢力에 反對하고 있었다.

남아라비아 問題에 影響을 미치는 要素로서 예멘의 位置는 매우 重要하다. 그 自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支援을 받고 있는 옛날 “이맘”계 충성하는 종족과 이집트에 의하여 調整維持되고 있는 共和派들로 갈라져 있었다. 요컨대 이러한 狀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대치 그 自體에 나타나고 있었다.

(8) 아덴에 대한 새로운 提案 (1966)

1968年 獨立當時 憲法의 基礎로된 1966年 2月의 提案속 에 남아라비아 聯邦이 알려졌다. 1965年 9月 聯邦政府의 要請으로 2名의 英國專門家가 새로운 안의 骨格을 짚고 그들의 勸告로 남아라비아 統一共和國이 탄생하게 되었다.

(9) 防衛問題

1966年 2月 英國政府는 1968年 아덴이 獨立할 때에는 모든 英國軍隊는 페르샤만에서 철수하여 “바레인”에 集結한 다는 國防白書を 發表하였다.

聯邦當局은 英國政府가 最少限度 聯邦軍의 急速한 強化와 裝備普及을 하여 주도록 說得하기 위해서 런던에 代表를 보 냈다.

6月 英國政府는 聯邦軍이 裝備普及과 增強에 5百5拾萬£ 相當을 提供할 것을 提議하였고 그것을 매년 聯邦豫算에 그 정도 提供하고 約 2百5拾萬£程度 增額할 의향이 있음을 宣言하였다.

獨立 남아라비아의 政治情勢의 急激한 變化가 없었다면 이 러한 援助는 獨立後 3年間 繼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英國政府는 獨立後의 남아라비아 國防을 맡을것을 拒絕하였다. 過激한 民族主義 組織들은 오랫동안 1963年 12月에 通過된 유엔 決議案의 全面的인 수락을 主張하였다.

(10) 유엔活動

1966年 5月 유엔 植民地 特別委員會는 1963年과 65年의 유엔 決議案(남아라비아의 獨立을 許容, 英國軍隊의 철수, 망명중이거나 억류중인 政治指導者의 復歸, 國際的 監視 下의 選舉보류)이 効力を 發揮하는데 必要한 手段을 講究하기 위하여 유엔 調査班을 남아라비아에 派遣토록 促求하였다.

1966年 8月 英國政府는 그러한 活動을 환영하지만 남아라비아에서의 秩序維持 責任을 拋棄할 수 없고 現存 地域政府와 締結한 協定을 遵守하지 않을수 없다고 宣言했다.

(11) 獨立準備

1967年 4月 植民地 高等판무관이 남아라비아의 모든 利解關係를 代表하는 과도체제의 設立可能性을 調査하는 것을 돕기위하여 無任所長官이 남아라비아로 派遣되었다. 民族主義 勢力들은 英國과 聯邦當局의 協力호소를 繼續 拒否하여왔다. 1967年 6月 20日 英國政府는 效果있는 措置를 發表하였다. 獨立日是 1968年 1月 9日이고 남아라비아에서 漸增하는 暴力을 防止하기 위하여 테러 活動을 勘案하여 배심원의 審理를 연기할 것을 提議하였다.

反面에 NLF에 대한 禁止措置를 解除하고 억류자들에 대한 釋放問題를 檢討하였다.

英國政府는 聯邦當局이 會員國家에게 지금 회람시키고 있는 憲法草案을 수락할 의향임을 宣言하였다. 이 憲法은 普通選舉에 基礎한 總選舉와 모든 政治勢力을 代表하는 行政府 設立의 根據를 마련하려 하였다.

동 아덴 보호령의 包呑되지 않는 國家들 問題를 考憲하여 英國政府는 그들과 南아라비아聯邦과의 統合을 支持하였다. 1967年 7月 동안 英國은 아덴과 聯關領土에서 獨立時까지의 廣範한 暫定政府를 樹立하기 위한 努力을 繼續하였다.

이러한 目的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聯邦政府는 FLOSY와 NLF의 도움으로 暫定政府를 樹立할 Bayumi를 招待할 것에 同意하였다. 이 民族主義 勢力들은 地域回教군주들의 利解關係를 반영한 聯邦體制를 한결같이 否認하였다.

民族主義 勢力들과 聯合하려는 Bayumi의 努力도 失敗로 끝나고 7月 27日 聯邦當局은 차기수상으로서의 그의 地位를 取消하였다.

남아라비아에서는 1967年 8月에서 10月까지 회교군주(Sultan)의 權威도 民族主義의 勢力의 擴大에 따라 그 影響力이 急速히 와해되고 NLF는 Maflahi와 다른 부족국가들의 大部分에 그 影響力을 미쳤다.

8月 28日 al-Babakri 南아라비아聯邦 最高會議 議長은 聯邦政府와 회교군주는 事態解決能力이 없음을 認定하고 南아라비아군에 事態를 鎮壓하여 줄것을 要請하였지만 成功을 거두지 못하였다. NLF의 急速한 進出은 傳統的인 支配者들에 대해 反對하는 地方部族들 勢力과 계후에 基因하는 것이 아니라 聯邦軍의 中立的인 態度에 基因한 것이었다.

9月 10月 사이 NLF는 동아덴보호령의 領域으로 進出하였고, Qaiti, Kathiri, Mahra 회교군주영지도 그들의 影響圈안으로 들어갔다. 9月 5日 植民地 高等관무관은 英國은 新民族主義 勢力을 地域住民의 代表者로 認定할 準備가 되어있고 그들과 協商을 開始할 용의가 있음을 表明하였다.

(12) 民族主義 勢力間の 衝突

聯邦體制 崩壞後 民族主義 勢力들은 서로 맞부딪치게 되었고 이집트의 支援下에 카이로와 예멘에서 그들간에 論쟁이 있었으나 아무런 合意點도 찾지 못하였다.

NLF의 成功은 南예멘 民族解放戰線(FLOSY)의 展望을 減少시키는데 充分하였다. 이 後者の 組織은 南아라비아 自體內에서 보다는 예멘으로부터 이집트의 指導下에 運營되었다는 點이 不利하였다.

아덴에서의 主要支援은 以前에 거기에서 活動한 相當數의 예멘인 構成分子로부터 나왔다.

그 指導者인 al-Asnag 과 Makkawi 가 過去 2年동안 예멘으로부터 亡命하여 活動하여 왔다는 事實이 反對의 效果를 나타내었다.

예멘으로부터 이집트 軍隊가 撤收함에 따라 그들의 影響力은 減少되기 시작하였다.

聯邦組織이 瓦解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問題는 두 主要 民族 勢力이 相互 協力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 9월에 그들간의 激裂한 戰鬪가 아덴의 北部郊外에서 벌어졌고 南아라비아軍이 休戰을 하게끔 만들었다. 그 勢力은 10月 카이로에서 만났으나 아무런 合意點도 찾지 못한채 다시 戰鬪가 벌어졌다. 南아라비아軍이 NLF와 提携함에 따라 FLOSY는 結局 敗北하였다.

NLF 는 그들을 南아라비아 人民의 唯一한 代表로 認定하여 줄

것을 要求하였다.

1967年 11月 11日 al-Shaabi NLF 指導者가 英國代表와 協商하기 위하여 제네바로 派遣된다고 發表하였다.

英國軍의 撤收는 1967年 8月 25日부터 始作되었고 아덴事態의 發展에 따라 英國政府는 撤收作業을 短縮하여 1968年 1月 9日 可能하면 1967年 11月 下半期에 獨立시킬것을 決定하였다.

11月 27日 英國軍은 南아라비아軍에 아덴地域의 相當部分을 讓渡하였으며 NLF는 南예멘 人民共和國의 誕生을 宣布하였다.

11月 28日 al-Shaabi는 제네바에서 아덴과 그 附屬領土의 讓渡에 對하여 英國과 協定이 締結되었다고 發表하였다.

al-Shaabi가 11月 30日 初代大統領으로 任命되었고 다른 英國 獨立國家와는 달리 南예멘은 英聯邦에 加入하지 않았다.

(13) 獨立

새 共和國의 發展은 매우 不確實하였고 經濟的 側面에서는 克服하여야 할 難關이 많았다. 英國軍의 撤收는 稅收의 缺陷을 가져왔고 軍隊維持에는 많은 經費가 必要하였다. 더욱이 수에즈運河의 廢鎖는 아덴의 中繼貿易과 燃料供給基地로서 役割을 大幅 減少시켰다.

英國政府로부터의 財政援助의 계속이 새政府의 重要事項으로서 1967年 11月 英國은 南아라비아에 6個月동안(1967年 11月 ~ 68年 4月까지) 매달 2百萬 £을 援助할 것에 同

意하였다.

1968年4月 會議時에 새 財政援助를 기절하였다.

쿠리아 무리아섬들에 대해서는 英國과 南예멘 사이에 異見이 있었고, 1967年11月30日 英國은 同 섬을 “무수켓”에 새 되돌려줄 意向을 유엔에 通報하였으며 그 決定은 아덴 새 政府의 심한 反발을 惹起시켰으며 이 섬과 페림, 카마란섬을 계속 要求하게 만들었다.

(14) 國內分裂

“사바” 大統領 政府는 여러 困境에 處하였으며 1968年 첫 달에는 軍과 警察에 肅清措置를 斷行하였다.

1968年4月 진지바르에서 開催된 NLF 定例會議 以後 軍部 內에 不滿이 增加되었다.

NLF 의 極烈分子들은 左傾政府를 만들기 爲한 決定案을 提出하였다. 그 決定案에서 모든 軍單位에 政治委員을 任命하고 義勇軍의 強化와 人民警備隊의 創設과 6個州에 人民會議의 設立을 要求하였다. 이 地方會議는 새 共和國을 指導할 最高會議를 選出할 權利를 가지고 있다. 1968年 4月에 온건파와 과격파 사이에 戰鬥가 벌어질뻔 하였으며 4月 20日 과격분자인 6名의 閣僚를 解任하기 위하여 軍隊가 介入하였다. 과격분자들이 共和國의 동쪽地域을 掌握하기 始作하였다. (특히 Qaiti, kathiri와 Mahra 전, 술탄영지를 包含하는 다섯번째와 여섯번째의 주에서) 여기에서 그들 自身の 人民會議를 設立하고 中央政府에서 任命된 州지사를 無視하였

으며 군과 警察의 官僚를 逐出하고 石油施設을 占領하였다. 1965年5月15日 Saar, Abyan 와 Shugra 地域에서 反亂이 일어났다. 1968年7月 소요가 더욱 激烈해졌고 이 소요시에는 2개의 무장반도 그룹이 아덴 北部와 東부에 있는 Radfan 과 Aulaqi 地域의 道路를 遮斷하였으며 이 반도의 指導者는 前 NLF 保安軍 司令官 al-Aulaqi 대령과 獨立時까지 南아라비아軍 司令官이었던 Buraik al-Aulaqi 였다.

이러한 소요는 NLF 軍에 依해 鎮壓되었으며 FLOSY와 亡命政治組織인 南아라비아 聯盟은 al-shaabi 大統領의 政府에 대하여 이러한 事態에 대한 新임을 要求하였다.

이 캠페인 동안 FLOSY의 高位層들이 逮捕되고 國家經濟의 어려움은 새 體制의 安定을 危脅하는 요소로서 1968年 여름에는 政府歲出을 大幅 減縮하게 만들었다.

(15) 이웃과의 敵對關係

- 이웃國家와의 關係는 좋지 않았고 政府는 國家不安의 原因이 이웃國家들로부터 調整되는 자들 때문이라고 非難하였다.

지금은 이집트 軍隊의 支援이 없지만 北예멘에 依해 調整되는 FLOSY 와 追放된 토후와 술탄(大部分 사우디居住)과 英國 고문관에 싸고 있는 muscat 와 Oman 의 술탄들이 이들의 代表的인 人物이라고 主張했다.

多量の 蘇聯 軍事裝備가 아덴에 到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들 가운데 相當數가 軍事 퍼레이드에서 나타났다. 蘇聯艦隊가 점점 자주 아덴을 訪問하였고 反面 英國이나 다른 西方 海軍船舶의 訪問은 멀어져갔다.

- 1969年6月 “al-Shaabi” 大統領이 權力 鬭爭에서 敗北하여 해임되고 “루바야” 전 民兵대 指導者(權力鬭爭에서 敗北 地方에서 亡命生活中이었음)가 大統領評議會 議長으로 權力에 復歸하였으며, 새 內閣은 다른 亡命者들을 包含시켜 構成되었다. 새 體制는 보다 左翼化되었고 親蘇傾向을 띠었다.

1969年11月 政府는 36個 外國人會社의 國有化를 發表하였다.(英國의 精油工場 除外)

1970年1月 國土를 “예멘 人民民主共和國”으로 하고 예멘 統一을 겨냥한 새 憲法이 宣布되었다.

그러나 다른 예멘과 이웃國家와의 關係는 여전히 改善되지 않았으며 到處로부터 危脅을 받았다.

오만軍隊가 “도파” 地域 半島를 追擊하기 위하여 아덴政府의 前方초소를 攻擊하였다. 이들은 오만解放戰線(PFLO)로서 아덴政府로부터 支援을 받는 團體였다.

FLOSY 軍隊와 南아라비아聯盟이 예멘 國境地帶에 集結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北예멘은 아덴政府의 이데올로기에 反對하여 反體制分子들에게 避難處를 提供하였다.

1974年4月 튀니스에서 開催된 아랍聯盟外相會議는 오만의

PFLO 叛徒들에 대한 아덴 새政府의 支持를 둘러싸고 오만과 아덴 새政府와 사이에 생긴 오랜 葛藤을 해소하기 爲하여 調停會議를 開催하였다.

(16) 예멘 統一의 可能性

1972 年 9 月 北예멘과 國境衝突이 있었지만 아랍聯盟이 중재하여 10 월에 休戰하였다. 그 예멘의 統一에 關한 平和協定이 10 月 28 日 카이로에서 締結되고 11 월에 트리폴리에서 兩國 頂上會談을 通하여 具體적인 合意가 있었다.

예멘 人民은 單一國家를 세우고 國號를 예멘共和國으로 하며 首都를 “사나”로 하고 이슬람을 國교로 하며 아랍어를 國語로 하기로 合意를 보았다. 細部問題를 討議하기 爲하여 特別委員會가 設置되었다.

1973 年 1 月 統속에 對한 방해 事態가 發生하였지만 1973 年 6 月 南예멘 外相이 아시아, 아프리카 社會主義者 代表團을 迎接하고 카이로와 트리폴리에서 締結된 統一問題 協定은 遵守할 것을 거듭 主張했다.

1973 年 9 月 統一展望은 점점 멀어져갔고 1 年の 統合期間을 1 年 더 延長하였다.

1974 年 6 月 親사우디군부파들이 權力을 掌握한 쿠데타에 依하여 統合問題는 더욱 어려워졌으며 相互 經濟財政協力委員會가 계속 開催되었지만 잇달은 일련의 事態는 이러한 見解가 옳음을 證明하고 있었다.

1975年 봄 北예멘政府는 南예멘이 戰線에 사보타지 行動을 하고 있다고 非難하였다.

南예멘과 사우디가 外交關係를 開設한 1976年 4월에 가사약 새로운 外交方向의 可能性이 보여졌다. 사우디는 1967年 獨立 이래로 南예멘을 認定하지 않았다. 兩國은 그들이 아랍半島의 安全을 保障하고 外勢의 介入없이 아랍國家들의 理解關係를 圖謀하고자 兩國關係를 正常化 한다고 發表하였다.

다음날 休戰이 되었으나 不安한 平和가 持續되었다.

(17) 國內分裂

루바야大統領은 1970年 中國을 訪問한 以來 親中共政策을 追求하면서 사우디와 西方陣營으로부터 援助를 받고자 하였다.(1976. 4 사우디와 外交關係 樹立 以後)

反面 1971年 NLF 總秘書였던 Ismail 은 親蘇派였고 兩者 사이에는 不和가 씩트다.

전위당 (The Vanguard) 과 人民民主聯合黨이 統合政治組織인 民族戰線 (UPONF) 을 形成하기 爲하여 NLF 에 依하여 吸收되고 이스메일이 總秘書가 되었다. 1978年 前半期에 이스메일이 民族戰線을 훨씬 過激한 전위당으로 만들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對하여 루바야大統領은 消極적인 態度를 보였다.

1978年 6月 北예멘大統領 “ 알 가쉬미 ” 大統領 暗殺로 루바야大統領이 실각당했다. 가쉬미大統領은 南예멘 特사의 書類 가방에 裝置된 爆彈에 依하여 殺害되었다. 그 事件이

루바야大統領에 依하여 사주된 것인지 아닌지는 루바야大統領을 不信하는 勢力들에 依하여 각색되었고, 結果的으로는 루바야大統領만 실격 處刑된 結果만 남았다.

兩派間의 激烈한 戰鬥가 後任大統領이 權力을 掌握한 後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다.

首相 무하마드(Muhammad)가 暫定國家 주석이 되었지만 이스메일의 權力은 確固해졌으며 外交政策은 보다 親蘇쪽으로 기울었다.

아랍聯盟의 緊急會議가 1978年 7月 2日에 開催되고, 아랍 16個國이 南예멘에 對한 經濟的, 政治的 “ 보이콧 ” (boycott) 措置를 할 것을 滿場一致로 가결하였다. 이스라엘을 訪問한 “ 사다트 ” 大統領의 平和協商案에 反對하는 아랍강경국들은 不參하였다.

南예멘의 “ 가쉬미 ” 大統領 暗殺의 責任與否와는 別途로 보수 아랍國들은 南예멘의 蘇聯과의 密着과 南예멘이 “ 에리트리아 ” 半島와 소말리아에 反對하는 에디오피아를 支援하고 있는 “ 아프리카의 뿔 ” (Horn)에서 벌어지고 있는 危脅에 對해 우려를 느끼고 있었다.

1978年 7月 南예멘이 北部地域을 侵犯하고 있다는 非難속에 北예멘과의 關係가 다시 惡化되었다. 軍事力 增強을 꾀하고 있다고 서로 非難하였지만 전쟁 촉발의 기운이 가라앉았다.

“ 이스메일 ” 은 10月 解放戰線內에 3개의 政黨이 예멘社會黨으로 改編될때 그의 權力基盤을 強化하려 했다.

그는 12月 最高人民會議 3期 會議에서 大統領 評議會를 대신할 幹部會議 議長으로 選出되어 國家元首가 되었다.

1979年 8月에는 大幅的인 內閣改編이 있었다.

1979年初에 政府軍은 反對派軍隊(南예멘 統一戰線)와 전투를 벌였고 “무하마드”首相 追從勢力들과 軍事衝突이 있었으며 연달아 國防相의 支持勢力, 內相勢力과도 衝突하였다. 4月初에는 統一戰線 軍隊와 손을 잡은 反抗勢力들이 바이한(Beihan) 空港을 占領하였다.

2月과 4月에는 北예멘과의 繼續된 國境紛爭이 大規模 戰鬪로 擴大되었다. 아랍聯盟에 依하여 주선된 休戰會談이 놀랍게도 統合協定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統合協定の 現實性은 1980年 4月 南예멘 指導者의 交替로 統合熱意가 식었지만 1980年 6月까지 조금씩 接近되어 가는것 같았다.

“무하마드”首相이 “이스메일”을 代身하여 國家元首兼 總秘書로 權力の 座에 앉았다.

1979年 11月 蘇聯과 20年 友好協定이 締結되고 이로써 이스메일의 位置가 強化된것 같지만 실은 이스메일이 蘇聯의 信任을 얻지 못하여 失閣된 것이다.

“무하마드” 執權下에서는 비록 6月末 사우디를 訪問하였지만 여전히 親蘇 國家이다. 이 訪問은 蘇聯에게만 依存하는 것을 中止하고 아랍世界로 부터의 孤立을 脫避하고자 한 무하마드의 志願과 一致하는 것이다.

무하마드의 부상은 南예멘 出生派들의 權力 強化를 意味한다. 이스메일은 지금은 北예멘에 屬하는 地域에서 出生하였다.

5 . 兩國關係史

가. 兩國 關係 日誌

北 예 멘	南 예 멘
	1839 ○ 英國艦隊 아덴占領
1911 ○ “아흐야” 이맘이 터키 支配에서 전면적 反 亂 統治基盤 確保	1882-○ 英國, 아덴 및 20 個 小國과 保護協定을 맺 고 植民域化
1914 ○ 1次大戰 - “이맘”은 터키를 支 持 - 英國은 예멘北部 “아 시르” 小國의 浸入 者 支援	
1926 ○ “이맘”, 아덴保護領에 대한 浸入 繼續	1934 ○ 英國 예멘獨立認定, 國 境 衝突 종식
1945 ○ 아랍聯盟에 加入	
1947 ○ 유엔 加入	
1953 ○ “이맘”, 아덴과 그 保 護領에 대한 領有權主 長을 유엔에 호소	

北 예 멘	南 예 멘
1956 ○ 이집트, 사우디, 시리아 軍事條約締結	1956- ○ 예멘軍이 保護領 侵攻 -59
1956- ○ 예멘部族, 아덴保護領攻 -57 擊 國境衝突發生	
1958- ○ 이집트, 시리아와 統一 59 聯邦國 構成 ○ 英國과 國境紛爭 會談 失敗	
1961 ○ 統一아랍國 解體	
1962 ○ 親이집트, 親蘇軍事쿠데 타, 內亂突入(62-69) ○ 사우디王政派支援 外交 斷切	
1963 ○ 이집트 軍隊 共和派 支 援次 上陸	1963 ○ 植民地解放에 관한 유 엔 特別委員會 英國非 難 報告書採擇 유엔 總 會議決(12월) ○ 아덴의 反英運動激烈 (1963-66)
1964 ○ 共和派 새共和政府 樹 立宣布	○ 英國, 職邦軍과 함께 國 境地方部族들 소탕전 전 개

北 예 멘	南 예 멘
<p>1967 ○ 중전합의, 이집트와 사우디 軍隊 撤收</p>	<p>1967 ○ NLF 勢力이 FLOSY 勢力과 武力衝突. NLF 勝利 爭取 (7 月)</p> <p>○ 英國에서 獨立, 南예멘 人民共和國 誕生 (11. 30)</p>
<p>1970 ○ 모스크바 駐在大使인 “알 아이니” 新任首相이 됨 (2 月)</p>	<p>1969 ○ 투바야 大統領 權力掌握 (親蘇 強硬派)</p>
<p>1972 ○ 南예멘의 反政府團體, 國境地域에 集結</p> <p>○ 南北예멘 國境衝突 9.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協定 및 兩國統合協定締結 (카이로, 10.28) - 트리폴리 頂上會談 (11 月) (國家理念, 政治體制등 統合原則 合意) 	<p>1970 ○ 새憲法公布, 國號를 예멘 人民民主共和國으로 變更</p> <p>1972 ○ 南北예멘 國境衝突 (9. 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協定 및 兩國統合協定締結 - 트리폴리 頂上會談 (國家理念, 政治體制등 統合原則 合意) - 兩國統合特別委員會 開催

北 예 멘	南 예 멘
<p>- 兩國統合特別委員會 開催</p> <p>1972 ○ “알 아이니” 首相辭任 (南예멘과의 統合協定締結과 關聯 (12. 30))</p> <p>○ 共產體制로의 履行과 統合에 小極的인 “하 자리” 首相 就任</p> <p>1973 ○ 2月 예멘 聯合結成 (統合運動과 關聯)</p> <p>○ 5月 南예멘人에 의 한 實力者 “오스만” 被殺</p> <p>1974 ○ 親 사우디派인 “하 마 디” 大統領 무혈 쿠 데타로 執權</p> <p>1975 ○ 사우디와 外交關係 再 開 (5月)</p>	<p>1975 ○ “아덴” 항과 “소코트 라” 섬 “페림” 섬 등을 蘇聯에 海空軍基地로 提供</p>

北 예 멘	南 예 멘
<p>1977 ○ “하마디” 大統領 南예 멘 訪問前後에 暗殺 당 함 (10 月)</p> <p>○ 親 사우디 派 며 統合에 消 極的인 “가마쉬” 中領 이 權力 掌握</p> <p>○ 카타바 首腦會議 (2 月) - 外務, 經濟, 通產 相 으 로 構成되는 特別委 員會 開催</p> <p>○ “하자리” 前 首相 런 던서 被殺 (4 月)</p>	<p>1976 ○ 사우디와 外交關係 再 開</p> <p>○ 사우디 援助 同意</p> <p>1977 ○ 카타바 首腦會議</p>
<p>1978 ○ “알렘” 少領 反亂 南예 멘으로 徒走 (5 月)</p> <p>○ “가쉬미” 大統領, 南예 멘 大統領 特使와 會談 中 暴死 당 함 (6 月)</p> <p>“살레” 中領 大統領으 로 就任</p>	<p>1978 ○ “루바야” 大統領 北예 멘 大統領 暴死 事件에 關聯되어 基소 총살 당 함</p> <p>○ 親蘇派 “이스메일” 權 力 掌握 (루바야 : 親中共 派, 美國, 사우디와 關</p>

北 예 멘	南 예 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테타 未遂事件 發生 (10 月) ○ 南예멘이 개입하였다는 疑心이 가자 兩國 緊張 高潮 	<p style="text-align: center;">係改善 希望,</p>
<p>19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예멘, 北예멘의 反政 團體인 民族民主戰線 게릴라와 함께 北예멘 攻擊 (12 月) ○ 쿠웨이트 頂上會談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協定 및 統合 原則 合意 - 合同憲法 起草委員會 開催 合意 	<p>19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예멘軍 北예멘 浸攻 ○ 쿠웨이트 頂上會談 (6. 9) ○ 蘇聯과 友好協力條約締 結 (10 月) ○ 南예멘 大統領 北예 멘 訪問
<p>198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예멘의 支援을 받는 反政게릴라들과 北예멘 軍과 戰鬪 苛烈 (5 月 初) ○ 아덴 首腦會談 (5 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 安保, 通信部門 合同委員會 協力強化 	<p>198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이 스 마 일 ” 大統領失閣 “ 무 하 마 드 ” 大統領으로 就任 (무 하 마 드 首相은 早 期 統合에 反對 4.23) ○ 아덴 首腦會談 ○ “ 무 하 마 드 ” 사우디 訪 問 (6 月)

北 예 멘	南 예 멘
<p>및 統合 繼續 推進</p> <p>- 情報, 文化 등에 관한 3 協定 締結</p> <p>1981 ○ 反政府團體인 民族民主 戰線과 鬪爭激烈 (8月)</p> <p>○ 사나頂上會談 (9.15)</p> <p>○ 쿠웨이트頂上會談 (11.23)</p> <p>- 兩國關係改善 및 統 合推進 再確認</p> <p>○ 아덴頂上會談 (12.2)</p> <p>- 統合을 위한 閣僚理 事會 構成 合意</p>	<p>1981 ○ 南예멘, 리비아, 이더오 피아 3國友好協力條約締 結 (8.19)</p> <p>○ 사나頂上會談 (9.15) (11月)</p> <p>○ 아덴頂上會談 (12月)</p> <p>1982 ○ 統合憲法草案 合意發表 (1.9)</p>

나. 南예멘 獨立以前の 兩國關係 (1967.11.30 以前)

(1) 事件概要

- 第 1 次 世界大戰中 (1914 ~ 1918) 에는 터어키軍이 保護領 (南예멘) 의 大部分을 占領하였고, 1911 年 全面的인 反亂으로 強力한 基盤을 構築한 北예멘의 “야흐야” 이맘 (回教國에서의 宗教的 指導者 名稱) 이 全領土에 對해 領有權을 主張하면서 1926 年 이태리의 支援下에 아덴 保護領에 對한 侵入을 繼續하였지만 英國軍에 依하여 退却당하였다. (1928)
- 1953 年에 北예멘의 “이맘” 은 아랍의 支援下에 아덴과 그 保護領에 對한 領有權을 유엔에 呼訴하여 國際的壓力을 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後 몇년간 國境에서 衝突事件이 자주 發生하였다.
- 1956 年 9 月 예멘軍이 保護領에 對해 攻撃을 開始, 西 아덴에 侵攻하였으며 1959 年까지 이와 類似한 事件이 자주 發生하였다.
英國은 예멘軍을 擊退하기 爲해 軍隊를 派遣하고 1958 年에는 獨立된 司令部를 設置하였다.
- 나세르의 아랍民族主義가 北예멘의 사나에 上陸하여 內亂을 일으키고 (1962 年) 이어서 사나에 上陸된 이집트軍이 다시 南예멘의 反英 獨立運動에 影響을 미쳤다. (1963 ~ 69 年)
이 結果 英國은 北예멘의 內亂時에는 王政派를 支援하였고

1964年~65년에는 남예멘의 政治不安을 造成시키고 있는 國境地方의 部族들에 對하여 掃蕩作戰을 展開하였다.

(아라비아 半島에서 英國을 逐出하려는 이집트 및 保守王政體制를 維持하려는 사우디와 아덴 항을 勢力圈에 넣으려는 英國과의 對立이었다)

- 남예멘이 獨立하기 以前에 만해도 相當數의 예멘인이 保護領에 移住하여 살았고 남예멘의 獨立運動의 양대 山脈이던 被占領民族解放戰線(FLOSY)은 예멘으로부터 亡命된 者가 主류를 이루었으며 사나에 있는 이집트軍의 支援下에 아덴에서 過激한 테러活動을 하고 있었다. (1965年代)
- 이 FLOSY 勢力은 1967年 NLF 勢力과의 武力衝突에서 敗北한 後 南北 兩國의 國境地帶에서 反政活動을 하였고 1972年 南北예멘의 國境衝突의 主要原因이 되었다.
- 한편 남예멘에서는 北예멘의 左翼 運動에 影響을 미치고 있었고(NLF) 特히 1967年 以後에는 相當한 影響力을 미쳤다. 1968년에는 北예멘에서 “알 압리” 政府를 顛覆시키려는 左翼 陰謀가 일어났으나 失敗로 돌아갔다.
- 1968年 7月 남예멘의 代表가 兩國의 奧地에 있는 反亂勢力에 關한 會談차 “사나” 政府指導者를 만났다.

(2) 綜合 및 評價

(가) 分斷의 原因

- 예멘의 分斷은 “아덴” 항의 商業的, 戰略的 位置를 놓고

밀려오는 西洋勢力(특히 英國)을 막지 못했다는데 起因한다.

(1882 ~ 1914 年 英國이 아덴 및 20 個 周邊國家를 保護領으로 하여 1967 年 南예멘의 獨立時까지 統治한 데 起因)

(나) 北예멘의 統合主導權

- 北예멘은 한번도 西洋의 植民地 經驗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傳統的 價値觀과 秩序가 保存되어 있어 오스만 터키 勢力의 退潮에 便乘한 “사나”의 “야흐야 이맘”의 反亂이 쉽게 統治基盤을 確保하고 統一의 主導權을 掌握했다. (1926 年 아덴 保護領에 對한 領有權 主張, 侵入, 1956 ~ 57 年 아덴 保護領 攻擊)
- 西洋 勢力의 浸透에 對한 아랍 특유의 抵抗意識을 利用하여 北예멘의 아덴 領有權 主張은 國際적으로 支持를 받고 이 抵抗意識에서 北예멘은 蘇聯, 中共 등 共產 勢力과 일찍 손을 잡았다. (1953 年 아랍 支援下에 유엔에 호소, 1956 年 蘇聯 中共과 國交樹立)
- 이와 같은 北예멘의 統一의 主導權이 弱화된 것은 北예멘의 內亂 때문이다.
이 內亂은 아랍세계에 革命의 물결을 일으킨 “나세르”의 이집트 勢力의 北예멘 浸透에서 發生되어, 保守王政 體制 擁護派인 사우디와 共和派인 이집트의 對決로 內亂이 長期化되면서 保護領(南예멘)에 對한 政治, 軍事的

攻勢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1962 ~ 69)

이는 現在の 南北 分斷의 第2의 原因이라고 할 수 있다.

(다) 兩國關係

- 南예멘의 獨立運動의 양대 山脈이던 FLOSY가 사나의 이집트軍의 支援을 받고 있었고, 南예멘에서 權力을 掌握한 NLF의 影響이 北예멘에 浸透되어 北예멘의 混亂을 加重시키면서 左翼쿠데타 陰謀가 있었다. (1967年 北예멘에서 이집트軍 撤收로 NLF勢力이 南예멘에서 勝利) 이는 이데올로기가가 外勢를 업고 國內混亂에 便乘하여 浸透하는 歴史的 典型을 나타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北예멘 內亂時 共和派도 同一)

다. 南예멘 獨立以後의 兩國關係 (1967.11.30 以後)

(1) 事件概要

- 1967年 南예멘의 NLF勢力은 FLOSY勢力과의 武力衝突에서 勝利하여 權力을 掌握 獨立하였지만 (1967.11.30) 1968年 “진지바”會議 以後 NLF內에 강온과 對立 激化, 武裝爆動으로 政情이 不安하였을 뿐만 아니라 國境地方에서는 除去된 FLOSY勢力과 南아라비아 聯盟의 殘存勢力들이 國境地方에서 끊임없이 準동하고 있었다. 左翼 이데올로기의 上陸을 두려워 한 사우디와 北예멘은 이들 亡命者에게 避難處를 提供하고 支援하였으며 이 結

果 1972年9月26日 南北예멘은 國境衝突을 하게 되었다.

- 1972年9月26일의 戰爭은 아랍聯盟의 積極的인 중재로 10.28 카이로에서 停戰과 兩國統合에 관한 合意를 하게 되고 11.28 트리폴리에서 兩國 大統領이 만나 兩國 統合原則에 關係 合意를 보았다. (第1次 統合合意)
- 1972年12月30日 南예멘과의 統合 協定締結과 關聯하여 北예멘에서는 “아이니” 首相이 辭任하고 “하자라” 새 政府가 들어섰으며 1973年2月 兩國의 統合이 다가온다는 기대속에 새 政治組織인 “예멘聯合”이 사나에서 結成되었다.

5月末 國境衝突이 다시 있었고 5月30日 3人 大統領평의회 會員인 “알 오트만” 토후가 南예멘人에 의해 被殺되어 兩國關係가 재차 惡化되었지만 統合論議는 繼續된다고 發表되었다. (5月)

- 1973年9月 사나에서 兩國의 大統領이 만나 統合準備期間을 1年延長하고 테러와 사보타지를 防止하는데 協力하기로 合意하였다.
- 1977年 2月 카타바頂上會談에서 兩國의 意見이 接近되어 外務, 經濟, 通產相으로 구성되는 合同會議를 設置하였고, 그會議는 6個月마다 사나와 아덴을 번갈아가며 하였으며 經濟, 通產 소회의가 잇달아 開催되었으며 4月에는 共和體制의 履行과 統合에 消極的인 “하자라” 前 首相이 런던에서 被殺당하였다.

- 1977.10.10 “하마다” 北예멘 大統領이 南예멘 訪問 3년 만에 暗殺 당하였으며 아덴 放送은 이를 “兩國의 統合을 妨害하는 者들의 所行”이라고 비난하였다. “가쉬미” 中領이 大統領이 되고 그는 사우디에 보다 더 接近하면서 비록 兩國統合을 爲한 定期會議은 繼續되었지만 統合을 서두르지 않았다.
- 1978. 5月末 實力家 “알렘” 少領이 南部에서 반 “가쉬미” 反亂을 일으켰으나 失敗하여 南예멘으로 도주하였다. 이후 그는 反政府團體인 民族民主戰線(NDF)을 組織하여 北예멘의 사나政權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된다.(게릴라등)
- 78. 6.24 “가쉬미” 大統領이 南예멘 大統領 特사와 會談中 폭사당하였으며 北예멘 當局은 이것이 南예멘의 조정과 “알렘” 少領이 利用 當한 結果”라고 비난하였다. 이 結果 南예멘의 “루바야” 大統領도 기소 銃殺되고 친 소 강경파인 “이스메일”이 執權하게 되었으며 “루바야” 大統領은 美國, 사우디와 關係改善을 希冀한 것으로 알려졌다.
- 78.10 月에는 北예멘에서 軍高位將校에 의한 쿠데타 기도 事件이 있었고 여기에 南예멘이 介入하였다는 疑心이 짙어 兩國의 緊張이 高潮되고 있다.
- 이와같은 情勢가 加速化되어 1979.2 南예멘軍이 北예멘의 反政府團體인 民族民主戰線 게릴라와 함께 北예멘을 攻撃하였다. 이 戰鬪時에는 사우디가 前線에 非常을 내릴

程度의 深刻한 事態였다.

- 79. 4 쿠웨이트 頂上會談을 通하여 兩國은 統合原則과 合同憲法起草委員會를 開催할 것에 合意하였다.
- 1980. 4.23 “이스마일” 南예멘 大統領이 辭任하고 早期 統合反對者인 “모하메드 알·하사니” 首相이 權力을 掌握하였다.
5月初 그의 就任과 더불어 南예멘의 支援을 받는 反政府 게릴라들이 재공세를 하여 北예멘 正規軍과 熾烈한 戰鬪가 있었다.
- 80. 5 北예멘 大統領이 南예멘을 最初로 訪問하여 아덴 頂上會談을 開催하여 經濟, 安保, 通信部門合同委員會 協力強化와 統合 繼續推進에 合意를 보면서 情報, 文化등에 關한 3 協定을 締結하였다.
- 81. 8 北예멘에서 “民族民主戰線”의 反政府 鬪爭이 다시 격렬해졌고 9.15 “사나”에서 兩國의 頂上會談과 11月 “쿠웨이트”에서 頂上會談이 開催되었었다. 이 會談에서 兩國關係 改善 및 統合推進이 再確認되고 12月 아덴 頂上會談에서 統合을 爲한 閣僚理事會를 構成하기로 合意하였다.
- 1982. 1. 9 南예멘 最高人民會議 幹部會議 議長 “압둘라 가님”은 兩國이 “統一예멘共和國”으로 統合키 爲한 憲法 草案에 合意하였다고 發表하였다.

(2) 綜合 및 評價

(가) 兩國의 國內情勢

1) 綜合

兩國 共히 이데올로기의 對立, 外勢의 介入, 統合推進에 따른 見解差 등으로 政權이 매우 不安하였다.

北예멘은 친 사우디派로, 南예멘은 親蘇聯派로 漸次 權力이 履行되고 統合의 열의도 점차 식어가게 되었지만 統合의 主導權은 國內安定을 달리 찾는 南예멘에게로 넘어갔다.

2) 北예멘

- 共和體制의 出汎時期에는 親 이집트派인 共和派가 親 사우디派인 왕정파를 吸收한 形態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애당초 共和體制로의 履行 速度問題에 있어서 政治勢力間에 갈등이 있었다.

- 또한 宗教的 差異에 起因한 “자이디” 부족과 “사파이” 部族間의 갈등은 北예멘의 宿命的 정국불안 要素이다. 前者는 地域的으로 예멘의 北部 東部 및 中央高原地帶에 살고 있으며 사파이 部族보다 好戰的이며 시골을 支配하고 있고 現在의 執權勢力이라 할 수 있다.

反面 後者は “티하마” 海邊과 남쪽地域에 살고 있고 南예멘의 影響을 받고 있으며 左翼性向을 띠고 있고 南예멘과 統合을 強烈히 바라고 있다.

“수니 사파이”파인 “알람”少領이 反亂 失敗後 南예멘으로 도주하여 (1978. 5月) 反政府 團體인 民族民主戰線을 結成하였다.

이들이 南예멘의 支援을 받아 北예멘內에서 끊임없이 게릴라 活動을 하고 있어 現在의 北예멘의 가장 큰 頭痛거리이며 이를 主臺로 南예멘이 對北政治 謀略戰과 테러戰을 兼行하여 北예멘의 政治不安을 加重시키고 있다.

- 막강한 土兵을 가진 제토후들의 勢力을 어떻게 牽制 調整하느냐가 사나政權의 安定性 確保의 열쇠이며 政治 近代化的 決定的 要素이다.

3) 南예멘

- 1967年 獨立以後 NLF內에서 親蘇左翼 強硬派들이 權力을 掌握하게 되어 루바야 大統領이 就任하였다. (1969) 그는 蘇聯에 지나친 경사에 反對하여 친중 공화하였으며 아덴港등을 蘇聯의 海軍, 空軍基地로 提供하는데 反對하였지만 75年 基地로 提供하고 1976年 사우디와 外交關係를 再開하고 사우디 援助에 同意하는 등 外交政策을 調整하려 하였다.

이와같은 內部 葛藤이 1978年 “가쉬미”北예멘 大統領이 南예멘 大統領 특사에 의해 爆破된 事件을 계기로 爆發하여 親蘇派들이 그를 기소 銃殺시킨 以後 부터는 친소화가 노골화되어 79.10月 蘇聯과 友好協

力 條約을 締結하였다.

- 親蘇派인 “이스마일” 大統領도 80. 4.23. 蘇聯의 不信任으로 失각되고 南北예멘 早期統合 反對論者인 “무하마드”가 權力을 掌握하였다.

이는 南예멘 內에서 北예멘 出身의 肅清과 早期統合 反對論者의 勝利이기도 하다. 이를 土臺로 81. 8. 19. 南예멘, 리비아, 이디오피아 3國 友好協力 條約이 締結되어 完全한 蘇聯의 中東戰略의 고리가 되었다.

(나) 統合問題와 兩國의 衝突

1) 1972年 9月 26日 兩國戰鬪

가) 戰爭背景

- 南예멘의 建國初期에 除去된 FLOSY 勢力과 南아라비아 聯盟의 殘存勢力이 北예멘과 사우디의 支援을 받아 國境地域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으며 70年 中共訪問後 親中共 政策으로 調整하려는 “루바야” 大統領 勢力과 친소파인 “이스마일” 派 사이의 權力鬪爭이 熾烈하였다.
- 72年度에 이들 反政府 勢力이 國境地域에 集結하자 72.4.11. 南예멘軍이 선제 攻擊하였다. 9月の 大規模 戰鬪도 이러한 情勢와 脈絡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들 戰鬪는 領土의 占領과 종국적 勝利를 目標로 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전략적인 戰鬪였다고 보아진다.

나) 戰爭經過와 統合協定 締結

- 9.26 大規模 戰鬥가 發生된 後 9.30. 兩側이 아랍 聯盟에 休戰要請을 하였고 10.1. 다시 南예멘이 休戰提議를 하였으나 北예멘이 拒否하였다.
- 10.28. 아랍聯盟의 中裁로 카이로에서 休戰과 兩國 統合에 合意하고 11.28 트리폴리에서 兩國大統領이 만나 統一國家의 理念, 政治體制 등 統合原則에 署名하였다.

다) 統合協定の 휴유중

- 12.30. 急激한 統合運動에 반발인듯 同 協定締結과 關聯하여 “아이니” 首相이 辭任하고 共和體制로의 履行과 統合에 小極的인 “하자리” 首相이 執權하였으나 同 政府는 1973. 2. 統合에 대한 期待와 그 準備를 爲하여 새 政治組織인 “예멘聯合” (Yemeni Union)을 사나에서 결성하였다.
- “예멘聯合”의 結成原因에 對해서는 明確한 根據가 없지만 國民的인 期待 때문에 “하자리” 政權이 組織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이어서 5月末 다시 小規模 國境衝突 事件이 發生하였고 5月30日 3人 大統領 評의회 會員이며 實力者인 “알 오트만” 토후가 南예멘人에 의해 被殺되어 兩國關係가 惡化되었지만 統合問題를 協議할 委員會의 活動은 繼續되었다.

이 當時 이터 南예멘의 政治的 陰謀가 北예멘의 政治混亂을 加重시킨 南部地域에서 많은 暴力騷擾事態를 불러 일으켰고, 테러와 사보타지를 조장하였다.
(南部地域: 수니파 掌握, 統合熱意가 強함)

이와 같은 政治的 混亂속에 1973. 9. 사나에서 兩國頂上會談이 進行되어 統合期間을 1年 延長하는내 合意를 보았다.

2) 北예멘의 쿠데타(1974. 6.13)

가) 背 景

- 1974. 2.11. 알-이라니 北예멘 大統領은 “하자리” 首相을 解任하고 “마키” 首相에 內閣을 맡겼으며, 그는 前任者의 統合努力을 繼續할 것을 천명하였지만 이미 內部에는 統合에 關한 葛藤이 深化되고 있었다.
- 쿠데타 2주전에 諮問委員會와 共和委員會間의 意見 對立으로 兩派間에 戰鬥가 發生하는 등 內部 葛藤이 爆發하고 있었다.

나) 新政權의 性格

- 親사우디派인 “하마디” 大統領은 南예멘과의 窮極的인 統合目標은 尊重한다고 闡明하면서 蘇聯의 軍事 援助를 拒否하고 사우디와 美國에 接近함으로써 (1975. 8) 南예멘은 親蘇國家 北예멘은 親 사우디 親美 國家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로써 兩國의 統合運動은 強大國의 影響을 받게 되었다.

다) 兩國 統合問題

- 兩國의 統合問題는 77年이 되어서야 漸次 接近되면서 77年 2月 카타바 頂上會談에서 外務, 經濟, 通產 閣僚로 構成되는 合同會議을 設置하기로 合意하여 그 해에는 6個月마다 사나와 아덴을 번갈아 가며 開催되고 經濟, 通產 合同小委員會가 잇달아 設置되었다. 이로써 72年の 兩國 統合合意는 5年만에 진일보 하였다.

라) 大統領 暗殺 (1977.10.10)

- 1977.10.10. “하마디” 大統領이 南예멘 訪問전날 밤에 暗殺當하였으며 그는 北예멘의 強力한 托후들에게 政治에 參加하는 대신에 각托후의 武裝力을 解除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의 暗殺은 “兩國의 統合을 妨害하는 者들의 所行”이라는 아덴放送의 비난은 根據가 있는 듯하며, 친 사우디派며 統合에 小極的인 “가쉬미” 中領이 大統領이 되었다. 그는 보다 더 사우디에 接近하면서 統合을 爲한 定期會議는 繼續하였으나 實質的으로 統合을 서두르지 않았다. 統合을 願하지 않는 사우디가 影響力을 行事하고 있다고 判斷된다.

3) “알렘” 少領의 反亂 (1978. 5)

가) 反亂의 背景

- 3人 大統領 評의회 會員으로서 實力者인 “알렘” 少領의 反亂原因이 明確하지 않았지만 그는 “수니사파이” 派로써 政治적으로 南部地域의 左翼性向과 統合支持勢力을 基盤으로 하고 있었다. 執權勢力이라 할 수 있는 “자이디” 派와의 葛藤과 共和體制로의 移行과 統合에 熱意를 보인 “하마디” 大統領을 被殺 (1977. 10) 시킨 “가쉬미” 中령 파들에 對한 반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측된다.

나) 民族民主戰線 結成

- “알렘” 少領은 反亂 失敗後 南예멘으로 도주하여 反政府 團體인 民族民主戰線을 結成하여 南예멘의 支援 하에 南部地域에서 테러 사보타지를 하고 있다.
- 이들은 78. 6月後 “가쉬미” 大統領의 爆死事件과 79. 2月の 南北예멘의 大規模 戰鬪에 介入되었을 뿐만아니라 80年 5月 81年 8월에 北예멘 正規軍과 戰鬪를 벌리는 등 北예멘의 政局不安의 主要 原因이자 南예멘의 政治모략전의 하수인 役割을 하고 있다.

4) 79年 2月の 大規模 國境衝突

가) 戰爭背景

- 南예멘의 政治謀略戰과 反政府 團體의 테러行爲로 北

예멘의政局이不安하였을 뿐만 아니라 78.6의 南예멘의 大統領 특사에 의한 “가취미” 大統領의 爆死事件, 79.10의 軍高位 將校의 쿠데타 기도사건(南예멘 介入) 등으로 兩國의 緊張이 高潮되어 있었다.

나) 戰爭經過

- 南예멘軍이 反政府軍과 合勢하여 數個의 마을을 占領하였으나 아랍聯盟의 介入으로 4.29日 쿠웨이트에서 兩國 정상간에 休戰 및 兩國統合原則이 合意되고 以後 兩國 合同憲法 起草委員會가 開催되었다.

다) 強大國과의 關係

- 76年 아덴항 등을 蘇聯의 海空軍 基地로 提供한 以來 美國 - 사우디 - 北예멘, 蘇聯 - 共產圈 - 南예멘이라는 國際 力學關係가 成立되어 개전초에는 사우디軍에 非常 힘이 내렸다.
- 統合原則에 合意한 쿠웨이트 頂上會談에 不滿을 느낀 사우디가 軍事援助를 中斷하자 北예멘은 다시 蘇聯에 接近하여 武器去來를 하였고(11月), 80年4月 다시 사우디가 軍事援助를 提供하여 蘇聯과의 武器去來가 中斷하였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우디의 立場이 엿보인다.

라) 兩國의 國內情勢

- 이와같은 統合論議속에 南예멘은 蘇聯과 20年間 友好 協力條約을 締結함으로써(79.10) 統合에 왜기를 박

고 이어서 80. 4. 23. “이스마일” 大統領이 蘇聯의 支持를 받지 못해 早期 統合反對論者인 “무하마드” 가 大統領으로 就任하였다.

- “무하마드” 大統領의 사주를 받은 民族民主戰線 세력자들이 北예멘에서 大規模 攻勢를 가하고 (80. 5) 이어 北예멘의 “살레” 大統領이 最初로 아덴을 訪問하여 (80. 5) 經濟, 安保, 通信部門 合同委員會 協力 強化에 合意하는 등 理想과 現實, 길과 속이 다른 統合論議가 繼續되었지만 統合의 명분과 合意點은 조금씩 發展되어 갔다.

6. 南·北 예멘協力 및 調整에 關한 協定 (81.12.2)

兩國 政府指導者의 同胞愛 및 共同精神에 立脚하여 兩國間에 締結된 統合協定을 補充하여, 예멘 國土 및 民族再統合을 通한 예멘國民의 最大利益 實現을 爲한 努力에 있어서 兩國間의 모든 分野에 結實 努力 및 調整領域을 擴大할 目的으로, 南北 예멘 大統領은 1981 年 11 月 30 日 - 12 月 2 日 Aden에서 열린 會談에서 다음 事項에 合意하였음.

(1) 兩政府의 調整에 關한 問題

1) 兩政府의 大統領으로 構成되는 評의회를 構成하고 이를 “ 예멘 評의회 ” 라 稱한다.

2) “ 예멘評의회 ” 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管掌한다.

가. 兩政府 사이에 締結된 統合協約의 履行을 推進하고 統合 委員會의 活動을 監督한다.

나. 統合委員會의 決定事項 및 活動結果를 確認하고 批准하여 그 事項들의 實現을 爲한 政策方向을 指示한다.

다. 各係 當事機關에 對해 合意된 共同事業 實施方向을 指示한다.

라. 統合委員會를 爲한 活動과 關聯한 總務局의 報告, 當面한 처리 申請, 調整申請 및 共同事業等을 確認하고, 어려운 해소方편을 指示하며, 모든分野의 合意된 事項을 履行하는데 關聯한 모든 資料를 提供한다.

마. 國內外問題等을 包含한 兩政府의 關心事들을 檢討하고 各 政府가 취할 對策을 合意한다.

바. 에멘 평의회 秘書局을 둔다. 단, “사나”와 “아덴”에 出張 事務所 設置를 條件으로 한다.

3) 에멘 평의회 規定

가. 동평의회는 6個月에 한번씩 定期的으로 開催하며, 必要한 境遇 언제든지 開催할 수 있다.

나. 會議은 南北에멘의 首都에서 交代로 열리며, 合意된 에멘내의 다른 場所에서도 可能하다.

4) 南北에멘 연석 閣僚會議의 設置와 構成

가. 首相(首席代表)

나. 外務部長官

다. 內務部長官

라. 開發企劃長官

마. 文教部長官

바. 國防參謀長官

5) 연석 各료委員會의 業務

가. 兩國間에 締結된 協定에 包含된 共同事業 實踐을 監督

나. 兩國의 經濟社會 開發計劃에 關한 円滑한 調整

다. 兩國사이의 統合促進과 經濟開發 推進을 爲한 研究, 報告 및 提議事項들을 에멘 평의회에 提出

라. 예멘 평의회에 의해 賦課된 일체의 業務推進

마. 1980.6.13. 兩國政府에 의해 締結合意 事項 推進 監督

6) 연석 각료會議의 規定

가. 同委員會는 3個月에 한번씩 열리며 必要한 경우 隨時로 열릴수 있다.

나. 同 代表는 交代로 한다.

다. 同 兩國政府 首都에서 交代로 열린다.

라. 예멘 평의회 秘書局은 연석각료 委員會 秘書局的 業務를 兼한다.

7) 秘書局은 兩國에서 任命된 6人으로 構成하고 다음과 같은 事項을 관장한다.

가. 예멘 평의회와 연석각료委員會의 會議準備

나. 예멘 평의회와 연석각료 會議의 會議內容 記錄과 保存 및 決定事項을 關聯機關에 報告

다. 예멘 평의회, 統合委員會 및 兩國 關聯機關간의 모든 調整業務

라. 예멘 평의회가 賦課하는 其他의 業務

(2) 經濟問題

1) 兩國의 經濟社會 開發計劃 調整

2) 地質 및 水資源分野의 共同事業計劃마련, 兩國 隣接地域에 있어서의 礦物과 水資源의 調査와 開發(兩國 聯合公社에 의한 開發)

- 3) 兩國사이의 農業, 工業 共同事業에 關한 經濟的 妥當性을 研究하기 爲한 共同機構 設置
- 4) 水資源研究와 共同으로 농경지 擴張을 爲한 經濟研究 實施
- 5) 兩國의 特定 農業地域에 있어서의 研究와 實驗計劃의 統合
- 6) 兩國의 農業指導 方法과 機構의 統合
- 7) 兩國의 農産物 販賣를 爲한 共同機構의 設置에 關한 研究
- 8) Eb.Qaatubah Dulain 連結道路 建設 推進
- 9) 兩國의 其他地域의 道路 連結推進에 關한 研究
- 10) 인접한 마을의 便宜를 爲해서 國경에 共同 會合場所를 設置하고 그 位置는 兩國에서 派遣된 特別委員會에서 決定한다.
- 11) 疾病 및 傳染병 퇴치와 基礎 健康管理에 關한 相互努力과 專門家 交換을 爲한 共同計劃 樹立

(3) 教育·文化·情報

- 1) 國경에서의 共同學校 設置
- 2) 南北學生으로 하여금 居住地에 가까운 學校에 入學 許可
- 3) 兩國의 文敎部の 調整下에 文化·教育情報 委員會를 設置하고

이들로 하여금 社會教育에 關한 教科內容 마련 및 教育科目 統一業務를 擔當케 한다.

4) 高度의 技術教育을 發展시켜가는 過程에서 생기게 될 專門化와 調整을 爲하여 特別協定 및 實質的인 措置를 취하고 이 分野에서의 交流를 強化하고 專門技術을 서로 交換한다.

5) 兩側의 弘報機關은 라디오 및 텔레비존 공동프로를 製作하여 Sana 와 Aden에서 동시에 放送하고 예멘統合의 歷史的 基盤이나 共同協定 및 事業을 다루며 또한(회교 사원의) 도사와 殖民主義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英雄的, 歷史的, 鬪爭的 性格을 알린다. 또한 예멘의 風俗과 民族藝術을 說明하고, 市民들에게 그들의 조국예멘을 알게끔 한다.

(4) 두 地域사이의 往來問題에 關하여

1) 두地域 市民은 兩地域을 往來할 權理를 지닌다. 단 1980.6.12 兩側의 內務部長官 사이에 締結된 協定에 包畧된 條件과 規則에 맞는 身分證을 지녀야 한다.

(5) 外交政策에 關하여

Arab 問題

1) Arab의 主要運動인 Palestine 運動에 關하여, 兩側의 立場과 態度와 行動을 統一한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人民들이 자기의 運命을 決定하고, 그들의 唯一合法的인 代表機構인 PLO의 指導

下에 그들의 땅에 獨立國家를 세우고,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鬭爭을 物質的, 倫理的으로 支持하고 支援함을 말한다.

2) 믿을수 없는 Camp David 協定과 Palestine 問題를 청산하거나 용해시켜 버리려는 모든 計略을 무너뜨리기 爲해서 繼續 努力하고, 一部 集團에게 Palestine 人民을 대신하여 協商할 權利를 주려는 모든 計劃에 反對한다.

3) 레바논 統一과 그의 아랍主義를 支持함에 있어서 統一된 立場을 취하고 시온이즘과 連結된 중과地區를 레바논 地域에 만들려는 計略을 무너뜨린다.

4) 시리아의 적 시온주의에 대결하는 나라들을 支持하고 帝國主義와 시온主義에 대항하는 아랍同盟을 創設하기 위한 아랍의 雲 圍氣 造成에 兩測이 協力하고, 아랍의 權利를 回復하고 帝國主義와 시온主義 計略에 대결하고 人間의 自由, 主權과 獨立 및 經濟的, 社會的 發展을 위한 權利의 적인 霸權主義의 影響力에 대항할 수 있는 公告한 戰線을 構築한다.

5) 이 地域에 우리人民을 위협하는 外國軍事기지를 設置하려는 政策을 反對하고, 어떤 形態의 外國軍 주둔도 배척하고, 이 地域을 平和, 安全 및 安定의 땅으로 바꾸려는 努力과, 낫세르의 주창 (initiative)를 支持한다. 낫세르는 아라비아반도, 페르샤만국, 아프리카상단의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및 기타 당사국들간에 開 催된 이슬람 頂上會議에서 이 地域 外國 기지의 철거와 페르샤만 및 인도양에 관한 蘇聯의 主導權 根絶을 主唱하였다.

- 6) 시온주의와帝國主義에 해당하는 아랍同盟을實現하기 위해 모든誠實한 努力을 기울인다.
- 7) 直接, 間接으로 시온주의자를 物質的 精神적으로 支持하고 아랍國과 그 主權 및 獨立에 적대적인 立場을 取하는 美國 및 모든 나라에 對하여 政治的, 外交的, 經濟的 措置를 取한다.
- 8) 國家의 主權과 目標을 위태롭게 하고 內部問題에 外國의 影響力과 干涉을 招來케 할 모든 形態의 구.신 植民主義와 連結된 政治的, 安保的, 軍事的 불력 및 協定에 反對하는 立場을 取한다.
- 9) 예멘의 外國人 投資法에 따라 經濟開發計劃에 必要한 財源獲得을 위해 아랍의 正當한 원조나 政府 및 個人을 包含한 아랍 資本에 關해서는 共同補助를 取한다.
- 10) 主權尊重과 內政不干涉 및 相互信賴에 基礎하여 아랍國들과 正常關係를 樹立한다.
- 11) 아랍 및 國際會議에서 政治自 立場을 統一하기 위해 共同補助를 取한다.

체源問題에 關하여

- 1) 經濟的 對決과 平和共存 政策을 支持하고, 軍備競争을 消滅化시키고, 經濟的 對決을 戒止하고, 세계 各地 地域間 緊張을 고조시키고, 平和共存을 무수한 帝國主義 政權에 反對한다.

2) 獨自的인 社會發展, 自身의 부를 開拓할 權利와 自由主義를 쟁하는 人民들을 支持하고, 시오니즘, 인종주의, 과시즘을 反對한다.

3) 적과 친구를 區別하는 基準은 우리 예멘, 아랍, 그리고 國際的인 問題에 關하여 어떤 立場을 취하느냐 하는 것으로 하고, 前進을 爲한 鬪爭에 있어서 우리 예멘 편에서는 모든 나라와 양쪽 다 關係를 公公히 하며, 팔레스타인 問題로 부상된 아랍問題, 自由와 發展을 實現하기 위한 우리 人民의 鬪爭에 關해서도 마찬가지다.

4) 非同盟運動은 國際關係에서 肯定的인 요소가 많으며, 世界의 安全과 均衡을 實現함에 기여하고, 또한 帝國主義, 시오니즘, 인종주의에 對항하는 鬪爭을 支持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運動을 지지한다.

Ali Nasser Mohammand	Cl. Ali Abdulah Saleh
예멘 사회당 총비서 最高人民會議幹部議議長 남예멘 수상	共和國 大統領 北예멘軍總司令官(C-in-C)

1982.12.2 아덴에서

7. 예멘아랍共和國 憲法 (1971. 12)

코 란

“ 너희는 너희가 행해야 할 儀式을 지키고 無識한 者들의 뜻을 따르지 말라 ” - AL JATHIA 18

“ 코란은 忠誠스런 믿음을 가진 者의 스승이시며, 引導者인 同時에 자비가 됨이라 ” - AL JAPHIA 20

“ 問題들을 그들과 相議하라 ” - AL UMRAN 15

“ 그들의 問題들을 다같이 討論하라 ” - AL SHUURA 78

“ 보라, 내가 너희들과 相議하지 않고 決定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 - AL NAML 32

前 文

우리 예멘國民은 아랍마호멧民族이다. 우리 國家와 民族의 生存은 眞情한 아랍國籍의 守護에 달려있고, 아랍血統을 主張하는 어떠한 國家도 그 血統에 있어서 우리 예멘國民에 대한 優先權을 主張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說教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14世 동안 우리의 國交가 되어온 眞情한 이슬람敎를 通해서, 그리고 이슬람敎의 敎理를 따르고, 가르침과 律法을 지키며 이슬람의 戒律內에서 生活함으로써만 生存이 可能하고 矜持와 人格을 主張할 수 있다.

훌륭한 가르침과 寬대함을 지닌 이슬람敎는 發展과 進歩를 意味하

며, 進歩過程의 障礙物은 결코 아니다. 코란은 모든 人類에게 寬容, 友愛, 平和를 強力히 呼訴한다.

“너희가 말할진대, 우리는 神을 믿으며, 우리들과, Ibrahim 과 Ismail 과 Ishaq 과 Yakob 과 Asbat 와 Musa 와 'Isa 와 先知者들에게 주신 啓示를 믿으며, 神을 意志하노라”

오늘날 우리들은 國家發展의 時代에 살고 있으며,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으로 서로 連結된 科學과 知識의 發達을 이룩하고 있다. 各國은 外國의 經驗으로부터 배워서, 利益을 얻고 外國의 文化, 經驗 및 制度를 利用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科學先進國家들로부터 배워서 利益을 얻는 것이 緊要하다. 그러나 同時에 우리 固有의 特性和 慣習 및 遺産을 保存함으로써 進歩를 向한 前進에 拍車를 加해야 한다.

우리는 科學, 藝術, 文化分野에서 모든 經驗있는 나라에 대해 門戶를 開放하여, 研究하고, 예리한 知慧를 배워야 한다. 또한 우리는 兄弟인 아랍人들과의 關係 및 東西의 友邦들과의 關係를 強化해야 한다.

우리는 統合을 妨害하거나 霧散시키려는 모든 外勢를 물리치고, 可能的한 모든 方法을 通해서 예멘統合을 이룩해야 한다.

이러한 確固한 原則을 土臺로, 議會가 마련한 國民의 念願과 所望과 希冀을 反映한 憲法草案을 예멘國民에게 提出하여 各界各層의 國民들이 研究해서 論評하도록 한다.

國民은 憲法草案의 內容, 規定, 基準에 對해 討論, 研究하고, 意見을 發表할 自由가 있다.

1970年 9月 26日 저녁에 憲法草案을 公布한지 3個月이 지났다. 首都, 都市 및 시골에서 各界各層의 國民들이 會議을 열어 憲法草案에 對해 公開討論을 하고 意見을 交換했다.

共和國評議會는 憲法草案에 對한 便紙와 電報를 接受했으며, Shariah 學者, ' Ulama, Shaikhs, 知識人들과 會議을 열어 그들의 意見을 들었다. 따라서 市民들은 지난 3個月동안 憲法草案에 對해 討論하고, 그들의 見解를 共和國評議會에 提出할 機會를 가졌던 바, 이것은 모든 問題를 民主的 節次를 通過 解決하려는 國家의 決議를 分明히 立證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憲法에서, 우리들은 人權과 自由를 받고, 平等·正義·平和를 追求하는 모든 國家와의 結束을 主張한다. 이 憲法을 通過 우리는 우리 國家에 民主的 生活과 個人과 集團의 自由의 增大的 土臺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言及한 모든 動機에서, 市民들의 權利와 義務의 平等을 土臺로한 亞美民主國 創造의 基本原則을 保障하기 위하여, 獨裁主義에로의 復歸를 막는 固執한 防壁인 權力分立을 實現하기 爲하여, 未來世代를 爲해서 獨裁統治下의 強制와 彈壓의 可能性을 막기 爲하여, 亞美亞拉伯共和國 憲法을 發表한다.

1970年 12月 28日

Abd al Rahman bin Yahya al Iryani

共和國評議會 議長

第1章：國 家

第1條

- 예멘은 아랍이슬람國이며 完全한 主權獨立國家이다.
- 예멘은 議會, 立憲共和國이고, 예멘國民은 아랍民族에 屬한다.

第2條

- 이슬람이 國敎이고, 아랍語를 國語로 한다.

第3條

- 이슬람 Shariáh 는 모든 法律의 根源이다.

第4條

- 國家가 모든 權力의 根源이다.

第5條

- 예멘은 個人으로 結合된 전체이며 예멘統合의 實現이 모든 市民의 神聖한 義務이다.

第2章：社會體制

第6條

- 正義와 自由에 立脚한 互惠의 原則이 社會의 基礎가 된다.

第7條

- 家庭이 社會의 基礎이며 家庭의 基本은 宗教와 慣習과 愛國心이다.

第8條

- 國家는 Shariáh 과 法律을 통해 公的·私的 自由를 保障한다.

- 또한 國家는 모든 市民의 安全과 機會均等을 保障해야 한다.

第 9 條

- 教育·保健, 社會奉仕는 社會構造와 發展의 礎石이다.

第 10 條

- 예멘經濟는 이슬람의 社會正義 原則을 考慮하여, 生産性 提高와 生活水準 向上을 目標로 하는 예멘政府의 計劃에 依據하여 組織化되며, 經濟計劃은 國家의 獨立과 主權에 違背되지 않아야 한다.

第 11 條

- 私的 經濟活動은 그것이 社會利益에 反하지 않은한 自由이다.

第 12 條

- 私有財産은 保護되며 公共의 利益을 위한 경우 以外에는 沒收당하지 않는다. 補償額數와 方法은 法律로 定한다.

第 13 條

- 地上, 地下, 바다의 모든 資源은 國家의 財産이며 國家는 國家의 利益을 위해 最善의 資源利用方法을 摸索한다.

第 14 條

- 公共財産을 소중히 해야 하며, 公共財産의 保護는 모든 市民의 義務이다.

第 15 條

- 課稅와 公共支出은 社會正義와 大衆의 利益에 基礎를 두어야 한다.

第 16 條

- 國家는 協同과 貯蓄을 獎勵하고 各種의 協同組合을 後援한다.

第 17 條

- 國家는 社會와 協力하여 自然災害 및 災難으로부터 惹起되는 모든 責任을 진다.

第 18 條

- 公的 業務遂行에 있어서 모든 國家公務員은 大衆의 利益과 國家에 대한 奉仕精神으로 臨해야 한다.

第 3 章 :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 19 條

- 모든 예멘國民은 平等한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第 20 條

- 예멘人의 國籍에 대해서는 法律로 定한다. 法律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國籍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第 21 條

- 法律에 根據없는 刑罰을 加할 수 없다. 이미 犯해진 行爲에 대해서만 刑罰을 加할 수 있다.

第 22 條

- 刑罰은 個人的이며, 아무에게도 他人의 罪에 責任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

第 23 條

- 刑罰과 感化를 위해 監獄을 둔다. 國家는 이 目的을 實現

해야 한다.

第 24 條

- 被告는 有罪로 判明되기까지는 無罪이다. 合法的裁判을 거치지 않고 刑罰을 加할 수 없으며, 裁判의 節次는 法律로 定한다. 抗辯權은 法律에 의해 保障된다.

第 25 條

- 모든 市民은 法律의 範圍內에서의 말, 書信, 그림등에 의한 意思表現의 權利를 갖는다.

第 26 條

- 郵便, 電信, 電話에 의한 意思傳達의 自由가 保護되며, 秘密이 保障된다.
- 法律에 規定된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러한 傳達을 檢閱 또는 遲延시키거나 秘密을 漏泄해서는 안된다.

第 27 條

- 어느 國民도 예멘領土로부터 追放되지 아니하며, 歸國을 禁止 당하지 아니한다. 法律에 依據하지 않고서는 市民을 拘禁· 逮捕, 搜索할 수 없다.

第 28 條

- 예배와 教育場所는 法律에 規定된 安保上の 要求로 必要한 경우가 아닌 한 결코 侵害할 수 없다.

第 29 條

- 住宅을 保護되며, 法律에 依據하지 않고서는 主人의 許諾없이 搜索 또는 侵入할 수 없다.

第 30 條

- 法律에 依據하지 않고서는 財產沒收을 할 수 없다.

第 31 條

- 政治的 逃亡者의 引渡는 禁止한다.

第 32 條

- 모든 國民은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教育을 받을 權利는 學校, 文化 및 教育院의 設立과 이들 施設의 擴張등을 通해 國家에 의해 保障된다. 特히 國家는 青年들의 身體的·精神的·道德的 發達에 注力해야 한다.

第 33 條

- 모든 國民은 醫療惠澤을 받을 權利가 있다.
國家는 國家資源이 許容하는 限 各種의 病院과 保健所를 設置해야 한다.

第 34 條

- 女性은 男性의 姉妹이며, Shariáh 와 法律에서 定한 그들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第 35 條

- 國家는 法律에 依據하여 家庭을 保護하고 母權을 保障하며 어린이, 障碍者 및 老人들의 福祉를 增大시켜야 한다.

第 36 條

- 모든 市民은 그가 選擇한 일을 擔當할 權利가 있다.
法律에 規定된 公共의 利益을 위한 경우나 適切한 賃金이 給與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勞動을 強制할

수 없다.

第 37 條

- 黨派는 절대로 禁止한다.

第 38 條

- 健全한 組合 및 勞動組合設立의 自由는 法律에 規定된 條件을 遵守하는 한 國家에 의해 保障된다.

第 39 條

- 國民들은 事前 許諾이나 通報없이도 集會를 가질 수 있다. 公共集會, 行進 및 會議는 法律에 規定된 條件에 依據하여 許用된다.

第 40 條

- 稅金과 公課金の 納付는 國民의 義務이다.

第 41 條

- 宗教와 國家의 守護는 國民의 神聖한 義務이다. 兵役義務는 榮光스런 義務이며, 徵集에 관해서는 法律로 定한다.

第 42 條

- 國家는 政策에 있어서 國內外的 모든 人間의 人權을 尊重해야 한다.
 - a. 血肉, 財產 및 名譽는 存貴하다. 그들의 保護方法은 Shariáh 와 法律에 의해 保障된다.
 - b. 女性, 어린이, 老人, 患者, 負傷者 및 人質을 尊重해야 하며 擴大해서는 안된다. Shariáh 와 法律은 이들의 保護手段을

保障한다.

- c. 罪囚에 대한肉體的, 精神的拷問은 許容되지 않는다.
- d. 饑饉과 病으로 苦生하는 者, 벌거벗은 者와 負傷者들은 保護받을 權利가 있다.

國家는 그들의 人權을 保障해야 한다.

또한 亡命者와 人質法의 경우도 國際協定과 이슬람 Shariáh 에 依據하여 그들의 人權을 國家가 保護해야 한다.

第 43 條

- 國家는 宗教, 皮膚 색깔, 性, 言語, 血統 또는 職業上의 理由로 人權에 대한 差別을 두어서는 안된다.

第 4 章：權力機關

第 1 節：立法議會 (MAJLIS AL SHUURA)

第 44 條

- 立法議會는 國家最高의 立法機關이다.

第 45 條

- 立法議會는 行政執行機關의 職務를 監督한다.

第 46 條

- 立法議會는 159 名의 委員으로 構成되며, 이들은 民主的 自由 選舉를 통해 選出된다. 議員資格은 法律로 定한다.

共和國評議會議長은 議員의 20%에 대한 任命權을 갖는다.

第 47 條

- 立法議會議員은 全國民을 代表하고 大衆의 利益을 保護한다.
그는 立法議會와 그 委員會에서의 그의 職務에 關係되는 어떤 權力機構에도 屬하지 않는다.

第 48 條

- 選舉委員會는 共和國評議會가 任命하며, 委員數, 任期 및 具體的 選舉節次는 法律로 定한다.

第 49 條

- 立法議會議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 a. 國籍은 예멘
 - b. 年齡이 25 歲 以上
 - c. 文盲이 아닌者
 - d. 品行이 方正하고, 宗教意識을 지키며, 不道德한 行爲로 拘束된 적이 없는者
 - e. 公職者가 아닌者

第 50 條

- 立法議會的 任期는 第 1 次 會議日로부터 4 年으로 한다.
- 立法議會總選舉는 議會的 任期滿了 60 日 以前에 實施하여야 하며, 任期滿了時까지 選舉가 完了되지 못하거나 或은 어떤 理由로 選舉가 延期되는 경우, 立法議會는 新議會가 選出될 때까지 職務를 繼續 遂行한다. 단, 이 期間은 3 個月을 超過할 수 없다.

總選舉實施가 不可能한 경우 以外에는 立法議會任期를 延長할 수 없다. 任期延期는 法律로 定한다.

第 51 條

- 共和國評議會 議長은 立法議會 選舉結果發表後 2 週日 以內에 總選舉에 의한 新立法議會의 第 1 回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만약 同期間以內에 立法議會가 召集되지 않을 경우, 2 週日 經過, 그 다음날 아침에 立法議會가 召集되는 것으로 看做된다.

第 52 條

- 立法議會는 無限定의 會議를 가질 수 있으며, 會議와 會議節次는 立法議會 訓令으로 한다.

第 53 條

- 어떤 理由로 立法議會議員에 缺員이 생기는 경우 立法議會가 空席임을 宣布한 후 2 個月以內에 憲法에 定한 方法에 依據하여 代理議員을 選定한다.

代理議員의 任期는 先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하며, 立法議會 任期滿了前 6 個月以內에 空席이 생기는 경우에는 代理議員選舉를 實施하지 아니한다.

第 54 條

- 立法議會 本部는 首都 사나에 둔다. 立法議會가 第 3 의 다른 場所에서 會議를 召集하여야 하는 例外的인 狀況以外에는 指定된 場所以外의 場所에서 열린 會議는 非合法的인 것으로 看做하며, 이 會議에서 通過된 決議案은 無效로 한다.

第 55 條

- 立法議會議員은 立法議會 또는 委員會에서 그의 職務를 始作 하기에 앞서, 立法議會 第 1 次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宣誓해야 한다.

“ 나는 神의 經典과 先知者의 律法을 따르며, 나의 宗教, 祖國, 國民들에게 忠誠을 다하며, 共和國體制와 革命의 目標을 保護하며, 國家의 憲法과 法律을 尊重하며, 國民의 自由, 利益, 財產 및 尊嚴性を 重要視하며, 國家의 主權과 獨立守護에 最善을 다하며, 國家의 安全을 保衛하며, 나의 任務를 榮光스럽고, 誠實하게 遂行할 것을 全知全能하신 神의 이름으로 宣誓합니다.

神께서 나의 맹세의 證人이 되시리라 ”

第 56 條

- 立法議會는 第 1 次 會議에서 議員중에서 議長, 副議長(2 名), 事務總長을 選出한다.

第 57 條

- 立法議會議員은 立法議會에 辭表를 提出한다.

第 58 條

- 立法議會議員은 어떤 경우에서도 會議錄에 記錄된 그의 意見에 대해서, 또는 立法議會 및 委員會에서의 職務遂行 또는 立法議會 公開 및 秘密會議에서의 投票에 대해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다른 議員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그를 誹謗한 경우는 例外로 한다.

第 59 條

- 立法議會議員은 免責特權을 가진다. 議員은 立法議會가 즉시 通報를 받은 犯罪行爲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立法議會의 許可 없이 審問·搜索·逮捕·拘禁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第 60 條

- (a) 立法議會는 訓令을 마련하여 立法議會 및 그 委員會의 運營 節次를 明示한다. 憲法에 明示된 規定에 依據하지 않고서는 이 訓令을 修正할 수 없다.
- (b) 立法議會 議員以外的 行政職員들은 國家公務員法의 適用을 받는다.

第 61 條

- (a) 首相과 閣僚는 立法議會와 그 委員會에 出席해서, 要請이 있을 경우 議員들의 質疑에 應答할 權利가 있다. 그들은 高位公職者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b) 各 部處 및 政府機關의 業務에 관한 立法議會의 質疑는 首相에게 通報되어야 하고, 首相은 이 質問에 應答하기 위하여 適當 長官 또는 代表團을 同行하거나 이들로 하여금 代理答覆케 할 選擇權을 갖는다.
- (c) 立法議會 및 그 委員會의 議題는 政府에 通報되어야 한다.

第 62 條

- 立法議會는 公共業務에 대해서 政府에 建議할 수 있다. 政府가 이러한 建議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政府는 그 理由를 立法議會에 說明해야 한다.

第 63 條

- 內閣은 構成된 후 25 日以內에 그 業務計劃을 立法議會에 提出해야 한다. 立法議會在 定期會議를 갖지 않을 경우는 臨時會議를 召集해야 한다.

立法議會는 政府의 業務計劃에 관해서 論評하고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第 64 條

- 30 名의 委員이 署名한 要請이 立法議會에 接受될 경우, 一般的인 性格의 問題는 立法議會에서 討論한 후 그 問題에 관한 政府政策에 대해 政府의 解明을 받고 意見을 交換할 수 있다.

第 65 條

- 立法議會는 政府에 대한 解任決議權을 갖는다.
- 政府에게 彈劾을 提起하기 전에는 解任을 要求할 수 없다. 解任要求는 議員의 3 分の 1 以上の 贊成으로 發議된다. 立法議會는 解任要求를 提示한 후 1 週日 동안에는 解任決議를 할 수 없다. 解任決議는 立法議會 在籍議員의 3 分の 2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 66 條

- 새 政策을 採擇하거나 그것을 擁護하는 경우, 首相은 政府解任要請을 立法議會에 提出할 수 있다.

第 67 條

- 立法議會가 內閣解任을 決議한 경우, 首相은 政府의 辭表를 共和國評議會 議長에게 提出해야 한다.

第 68 條

- 立法議會議員과 長官은 새로운 法律案 및 法律改正을 提案할 수 있다. 立法議會가 否決한 法律案은 同一回期에 두번 提 起될 수 없다.

第 69 條

- 共和國評議會 議長은 立法議會가 承認한 모든 法律案을 그가 通 報받은 후 30日以內에 公布해야 한다. 이 期間중에 共和國 評議會 議長으로부터 法律案에 대한 再考의 要請이 없을 경 우, 이 法律案은 法律로 看做되며 共和國評議會 議長은 이를 즉시 公布하여야 한다.

第 70 條

- 共和國評議會 議長은 法律案 全體 또는 一部の 修正이 必要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公布期間(30日) 以內에 異議書를 붙 여 法律案을 立法議會에 還付한다. 立法議會는 評議會 議長의 說明書에 관해 討論을 갖는다. 立法議會 在籍委員 3分之2 以上이 法律案에 다시 贊成하는 경우, 同 法律案은 法律로 看做되며 評議會議長은 이를 즉시 公布해야 한다.

第 71 條

- 共和國評議會 議長은 解散理由를 說明하는 決議案을 通過시킴

으로써 立法議會를 解散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理由로 두번씩 立法議會를 解散할 수는 없다. 立法議會解散決議案은 解散日로부터 20日에서 90日사이에 實施하는 選舉權者에 대한 招請도 包含하며, 選舉結果 發表後 15日以內에 新立法議會를 召集할 날자를 明示해야 한다.

定해진 期間內에 選舉를 實施할 수 없는 경우, 共和國評議會 議長은 解散된 立法議會를 召集, 完全한 憲法上의 權限을 行使하게 하고, 즉시 會議를 열게 하여, 解散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正常業務를 遂行케 한다.

選舉 그 이듬해 또는 共和國評議會 任期滿了前 6個月 동안에는 立法議會를 解散할 수 없다.

第 72 條

- 立法會議議員은 任期期間중 政府가 參與하는 會社의 理事로 任命되거나, 政府 또는 國營企業體가 締結한 契約에 關係할 수 없다. 또한 그는 政府의 財産을 買入, 賃借 또는 交換할 수 없고, 그의 財産을 政府에 賣却 또는 賃貸할 수 없으며 公開入札에 의한 경우나 法律에 依據한 公共利益을 위한 沒收의 경우가 아닌한 그의 財産을 政府財産과 交換할 수 없다. 立法會議議長, 副議長, 事務總長의 경우 憲法 第80條가 適用된다.

第 2 節：共和國評議會

第 73 條

- 共和國評議會는 國家의 大統領職位를 擔當한다. 評議會는 全體的인 國家政策을 樹立하고 그 政策의 執行을 監督하는 機構이다.

第 74 條

- 共和國評議會議長은 國家의 大統領인 同時에 國軍總司令官이다.

第 75 條

- 共和國評議會議長 및 委員의 選出資格은 다음과 같다.
 - (a) 父母가 예멘國民일것
 - (b) 10 歲以上으로 Shari'ah 에 正通한 品行이 方正한 者
 - (c) 이슬람敎儀式을 遵守하는 者
 - (d) 이미 外國人과 結婚하였거나 任期中 外國人과 結婚한 者는 除外된다.

第 76 條

- 共和國評議會는 立法會議가 指名, 選出하는 3 ~ 5 人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評議會委員 候補者는 立法議會 出席委員의 過半數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立法會議議長이 選舉結果를 發表한다.

第 77 條

- 評議會의 任期는 選舉結果 發表日로 부터 5 年으로 한다.

第 78 條

- 評議會委員은 委員들 中에서 共和國評議會議長을 選出한다.
議長職은 輪番制도 하며, 前任者 任期滿了 6日前에 後任議長을 選出한다. 內閣이 辭退한 경우 新任議長選舉를 實施하지 아니한다.

第 79 條

- 共和國評議會議長과 委員은 職務遂行에 앞서 立法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宣誓해야 한다.
“ 나는 神의 經典과 先知者들의 律法을 遵守하고, 나의 宗教, 祖國, 國民들에게 忠誠을 다하며, 共和國體制와 革命目標를 保護하며, 國家의 憲法과 法律을 尊重하며, 國民의 自由, 利益, 財産 및 尊嚴性을 重要視하며, 國家의 主權과 獨立保存을 爲해 最善을 다하여 努力하고 國家의 安全을 保衛할 것을 神의 이름으로 宣誓합니다. 神께서 나의 盟誓의 證人이 되시리라 ”

第 80 條

- 共和國評議會議長 또는 委員은 任期期間中 直接・間接的인 自由業이나 商業, 財務, 産業活動에 從事할 수 없으며, 政府財産을 買入 또는 賃貸할 수 없으며 自身の 財産을 政府에 賣却 또는 賃貸하거나 政府의 財産과 交換할 수 없다.

第 81 條

- 評議會 任期滿了 90 日前부터 新評議會 選出作業에 들어간다.
적어도 任期滿了 1 週前에는 選舉가 完了되어야 한다.

任期滿了時까지 新評議會를 選出하지 못한 경우, 理由如何를 莫論하고, 立法會議는 舊評議會로 하여금 職務를 繼續하게 한다. 이 경우 60日을 超過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國家가 選舉가 不可能한 戰爭狀態에 있지 않는 限 立法會議는 이 期間(60日)을 延長할 수 없다.

第 82 條

- 共和國評議會 委員이 辭表를 提出하거나, 永遠한 不具者가 되거나, 死亡한 경우, 立法會議는 그의 자리가 空席인 것으로 決議하고 空席이 된 後 60日以內에 憲法이 定한 方法에 依據하여, 代理委員을 選出해야 한다. 代理委員의 任期는 選任委員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 83 條

- 評議會議長 및 委員의 辭表는 立法會議에 提出된다.

第 84 條

- 立法會議 在籍委員의 3分之2 以上の 決議에 依한 경우 以外에는 評議會議長과 委員에 대해서 憲法違反 및 大逆罪에 대한 告訴를 할 수 없다. 最高憲法裁判所 以外에서의 裁判은 無效로 看做한다.

第 85 條

- 共和國評議會議長은 共和國評議會의 同意를 얻어 內閣首班(即, 首相)을 任命한다. 首相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 (a) 父母의 國籍이 예멘일 것
 - (b) 未婚者이거나 任期中 外國人과 結婚한 者가 아닐 것

第 86 條

- 評議會議長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評議會와 內閣의 連席會議을 召集할 權利가 있고 그 會議을 主宰한다.

第 87 條

- 評議會의 確認을 받지 않고서는 死刑을 執行할 수 없다.
評議會는 Shari'ah의 刑罰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刑期를 短縮시킬 權利가 있다.

第 88 條

- 立法議會 開會中 또는 그것이 解散된 期間 中에 即刻的인 措處를 필요로 하는 事態가 發生할 경우, 共和國評議會는 憲法과 豫算法에 規定된 歲出豫算案에 矛盾되지 않는 限 法律效力을 지닌 決定을 通過시킬 權利가 있다.

이러한 決定은 立法議회가 開會中인 경우는 決定이 發表된 날로부터 15日以內에, 解散된 경우 第1次會議에서, 혹은 任期滿了時에 立法議會에 通報해야 한다. 同決定이 通報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그런 趣旨의 決議를 할 필요도 없이 發表된 날로부터 法的인 效力을 喪失한다. 만약 決定이 通報되었으나 立法議會에서 承認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否決된 날로부터 法的效力을 喪失하며 다른 側面에서의 그 決定의 趣旨를 修正하기 爲한 措處를 取한다.

第 89 條

- 共和國評議會議長은 各種의 條約을 締結한다. 이 條約은 評議會와 內閣의 承認과 立法議會의 批准을 받은後 定해진 節

次에 따라 發表된後 法的效力을 지닌다.

第 90 條

- 評議會議長은 評議會外 內閣 및 立法議會의 同意를 얻어 國家非常事態, 또는 戰爭을 宣布하고 休戰 또는 平和를 받아들인다.

第 91 條

- 評議會議長은 評議會가 承認하고 立法議會가 批准한 法律을 公布한다.

第 92 條

- 共和國評議會가 公布한 執行을 爲한 모든 決議案은 首相과 關係長官이 共同으로 署名을 해야 한다. 단, 首相의 任命과 辭表受理에 關한 決議는 例外로 한다.

第 93 條

- 評議會議長은 國家外交官을 法律에 依據하여 派遣하고 外國 및 國際機關의 代表에게 新任狀을 授與한다.

第 94 條

- 評議會議長은 法律과 該當部隊의 指名에 依據하여 高位公務員 및 軍官을 任命한다.

第 3 節 : 政 府

第 95 條

- 政府는 國家의 最高行政執行機關이다.

第 96 條

- 政府는 首相과 國民의 利益增大에 필요한 數의 長官으로 構成된다.

第 97 條

- 首相은 共和國評議會의 同意를 얻어 閣僚를 任命하고, 政府의 政策方針을 提出한 後에 立法議會에 그 信任與否를 묻는다.

第 98 條

- 長官으로 任命될 者의 要件은 다음과 같다.
 - (a) 예멘國民일것
 - (b) 30 歲以上の 品行이 方正한 者일것
 - (c) 이슬람原則을 固守하는 者일것

第 99 條

- 首相과 長官들은 內閣의 職務와 政府의 政策에 對해서 共和國評議會와 立法議會와 共同으로 責任을 진다.

第 100 條

- 各 長官은 그의 部處의 職務를 監督하고 政府의 政策을 執行한다.

第 101 條

- 首相은 長官으로 하여금 任務를 代行케 하거나 國內・外에서 特別한 業務를 擔當케 할 수 있다.

第 102 條

- 長官은 任期期間中, 다른 公職을 가질 수 없으며 다른 職業 또는 商業, 財務, 產業活動에 直接・間接적으로 關與할 수 없다. 또한 그는 政府가 締結한 契約이나 公共企業體에 加擔할 수

없으며, 企業體理事를 兼職할 수 없다. 任期期間中, 長官은 政府財産을 買入 또는 賃貸하거나 그것을 公開入札을 通해 交換할 수 없으며 自己自信의 財産을 政府에 入借 또는 賣却하거나 政府財産과 交換할 수 없다.

第 103 條

- 內閣이 辭退하거나 解任이 決議된 경우에, 內閣은 新內閣이 構成될 때까지 任免을 除外한 모든 公的職務를 遂行한다.

第 104 條

- 首相과 長官은 就任에 앞서 共和國評議會議長 앞에서 다음과 같이 宣誓한다.

“ 나는 神의 經典과 先知者들의 律法을 遵守하며, 나의 宗教, 祖國, 國民들을 爲해 忠誠을 다하며, 共和國體制와 革命目標를 保護하며, 國家의 憲法과 法律을 尊重하며, 國民의 自由, 利益 및 尊嚴性을 重要視하며, 國家의 主權과 獨立保存을 爲해 最善을 다해 努力하며, 國家의 安全을 保衛할 것을 全知全能하시 神의 이름으로 宣誓합니다. 神께서 나의 盟誓의 證人이 되시리라 ”

第 105 條

- 首相과 長官의 報酬는 法律로 定한다.

第 106 條

- 政府는 다음의 職務를 遂行한다.
 - a. 內閣, 國營企業體 및 公共機關의 業務에 對한 指揮·調整·監督

- b. 法律에 依據한 行政執行決議案의 公布, 部署 및 公共機關의 設置 및 이에 關한 行政的 統制
- c. 政府體制組織에 關한 法律草案 및 決議案 作成, 部署業務의 執行 및 經濟開發, 이슬람社會正義의 實現, 傳統保存 및 民族文化開發, 科學研究 獎勵
- d. 公職者의 任免
- e. 立法議會에 提出할 國家豫算案의 作成
- f. 法律의 施行, 國內·外의 公共財源 및 利益保護, 市民의 權利保護
- g. 國家의 貨幣, 信用, 保險制度和 關聯된 機關 및 行政部處에 對한 監督
- h. 國家政策에 依據한 借款 및 援助協定締結

第 107 條

- 立法議會는 長官을 大逆罪嫌疑로 告訴할 수 있다. 長官告訴에 對한 立法議會의 決議는 在籍議員 3 分の 1 以上の 發議로, 立法議會가 任命한 最高憲法法院 判事를 委員長으로 하는 委員會의 搜查가 끝난 後, 立法議會 在籍議員 3 分の 2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法院이 事件을 搜查中인 동안, 비록 事件이 立證되지 않은 경우라도, 長官은 繼續 職務를 遂行한다. 民法, 軍法, 刑法裁判所와 最高法院에서의 裁判節次는 法律로 定한다.

第 108 條

- 長官은 立法議會 議員을 兼任할 수 없다. 立法議會 議員이

長官에 任命되는 경우 立法議會의 議席은 空席으로 留保해 둘 수 있다.

第 4 節：地方行政

第 109 條

- 共和國 領土는 行政單位로 區分하며, 行政單位의 數, 分割 및 境界는 法律로 定한다. 行政單位의 機能 및 責任도 法律로 定한다.

第 110 條

- 行政單位는 地方議會를 두고, 여기에서 地域問題를 民主적으로 解決할 수 있다.

第 5 節：財 政

第 111 條

- 公共課稅의 設定, 修正, 廢止問題는 法令으로 定한다. 法律에 規定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아무도 稅金의 全體 또는 一部로부터 免除되지 아니한다.

法律에 規定되지 않은 稅金, 料金 및 賦課稅를 徵收해서는 안된다.

第 112 條

- 國家財源의 徵收 및 辨濟의 基本原則은 法律로 定한다.

第 113 條

政府는 當該 또는 次期會計年度の 國家公共豫算에 規定되지

않은 支出을 要하는 借款供與 및 保證金協定締結 또는 事業 契約을 할 수 없으나 但 立法議會의 同意가 있는 경우는 例外로 한다.

第 114 條

- 賃金, 年金, 補償金, 特別慰勞金, 給與金의 基準은 法律로 定하고 例外事項 및 法律의 施行部處도 法律로 定한다.

第 115 條

- 法律에 依據하거나 制限된 期間 以外에는 國家의 天然資源 및 公共資源開發에 對한 獨占 또는 特權을 許容할 수 있다.

第 116 條

- 個人 및 集團의 生活에 害가 되는 獨占은 禁止된다.

第 117 條

- 政府財産의 保存 및 管理, 處分條件, 讓渡의 範圍는 法律로 定한다.

第 118 條

- 政府는 總豫算을 마련하고 立法議會가 그 豫算承認權을 갖는다.

第 119 條

- 會計年度의 始作과 終了는 法律로 定한다.

第 120 條

- 政府는 國家의 歲入·歲出에 關한 年間豫算案을 作成하여 會計年度가 終了되기 2個月 前까지 立法議會에 提出하여 審議·承認케 한다.

第 121 條

- (a) 豫算에 關한 討議 및 表決은 立法議會에서 한다.
- (b) 法令에 依據하지 않고서는 歲入額을 特定支出項目으로 轉用할 수 없다.

第 122 條

- 性格上 支出이 필요할 경우 特定金額을 1年以上 割當할 수 있다. 但 이 경우, 支出金額이 그 다음해 豫算推計에도 繼續 割當되거나, 分割推計上 同金額을 1會計年度 以上 計上할 것을 條件으로 한다.

第 123 條

- 歲出豫算案은 既存稅金의 廢止, 새로운 課稅의 導入, 稅金의 增減等의 內容을 包含할 수 없다.

第 124 條

- 豫算案審議中, 立法議會는 豫算案에서 提案된 總 歲入·歲出額을 增額할 수 없다.

第 125 條

- 豫算案 承認後에 立法議會는 追加支出 및 歲入法案을 承認할 수 있다.

第 126 條

- 豫算案은 歲出豫算案에 依해 效力을 發生한다.

第 127 條

- 總歲出豫算案이 會計年度 開始前까지 發表되지 않을 경우, 歲出豫算案이 通過될 때까지 前年度豫算을 適用하며 이 경우

100日以上을 遲滯하여서는 안된다. 歲入의 徵收 및 支出은 前年度末에 採擇된 豫算案에 依據한다.

第 128 條

- 豫算上의 用途變更, 豫算에 策定되지 않은 支出 또는 豫算額 數를 超過하는 支出은 立法議會의 承認을 필요로 한다.

第 129 條

- 歲出豫算案이나 關係法令에 規定된 最高支出限度額을 超過해서 는 안된다. 또한 歲出豫算案은 政府가 最高上限線을 超過하 도록 許容하는 規定을 둘 수 없다.

第 130 條

- 國家豫算決算은 每 會計年度 終了後 2個月 以內에 立法議會 에 提出해야 하며, 立法議會는 法律에 依據하여 審査·承認 한다.

第 131 條

- 追加更正豫算과 그 決算은 國家豫算의 경우와 같은 法律의 適用을 받는다.

第 132 條

- 其他 地方機構 및 機關의 豫算 및 決算은 法律로 定한다.

第 133 條

- 政府는 立法議會 定期會議때마다 1回以上 國家의 財政狀態를 報告해야 한다.

第 134 條

- 貨幣와 金融은 法律로 定한다.

第 135 條

- 慈善金은 이슬람의 基本核心이다. 政府는 慈善金の 徵收 및 올바른 使用에 最善을 다해야 한다.

第 136 條

- Waqf 는 神聖한 制度이며 國家는 이슬람 Shar i'ah 에 依據하여 그 資源과 支給을 增大시켜야 한다.

第 6 節：國 防

第 137 條

- 共和國評議會의 決議에 依해, 評議會議長을 委員長으로 하는 最高 國防委員會를 構成한다. 最高國防委員會는 國防 및 內·外安保에 關한 政策을 擔當한다.

第 138 條

- 國家는 法律에 依據하여 國軍, 保安部隊 및 民兵隊를 組織한다. 어떤 組織이나 集團이든 軍隊 또는 이와 類似한 것을 組織할 수 없다.

第 139 條

- 總 動員 및 個別動員은 法律로 定한다.

第 140 條

- 國軍 將校의 服務期間 및 進級에 對해서는 法律로 定한다.

第 141 條

- 軍人은 어떠한 政治的, 黨派的, 人種的 運動에도 加擔할 수 없다.

第 142 條

- 國軍 總司令官은 共和國評議會의 決議로 任命된다. 그는 共和國評議會로 부터 命令을 受領한다.

第 143 條

- 總司令官은 共和國評議會가 通過시킨 決議案에 依據, 1人以上의 副總司令官을 任命할 수 있다.

第 7 節 : 司 法 府

第 144 條

- 司法權의 獨立이 保障된다.

第 145 條

- 法官의 獨立이 保障되며, 法律을 除外한 어떠한 權力으로도 그의 判決을 統制할 수 없으며, 法官의 判決이나 裁判에 干涉할 수 없다.

第 146 條

- 健全한 人格과 品行을 갖춘 Shari'ah 法律學者 以外에는 아무도 法官이 될 수 없다.

第 147 條

- 司法權의 範圍, 地位 및 責任은 法律로 定한다.

第 148 條

- 모든 國民은 訴訟權을 保障받는다. 訴訟에 필요한 節次와 要件은 法律로 定한다.

第 149 條

- 法官은 就任에 앞서 公正하게 判定할 것을 全知全能한 神의 이름으로 宣誓한다.

第 150 條

- 法律에 定한 境遇 以外에는 法官은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 151 條

- 法官의 任命, 移動, 昇進 및 이에 關한 保障등은 法律로 定한다.

第 152 條

- 이슬람 Shari'ah 의 規定은 ijma' 와 一致하여야 하며, 이 問題를 擔當하는 Shari'ah 機構의 設置는 法律로 定한다.

第 153 條

- 法院은 訴訟事件에 憲法과 國家法律規定을 適用하여 訴訟事件을 判決한다. 判例가 없을 경우, 法院은 이슬람 Shari'ah 原則에 依據하여 事件을 處理하여 判決을 내린다.

第 154 條

- 어떤 機構나 特別法院을 통한 部署間의 紛爭解決은 法律로 定한다. 이 경우 法律에 違反되는 決議案에 關한 이들 機關의 義務行使 및 法令은 法律로 定한다.

第 5 章：最高憲法法院

第 155 條

- 最高憲法法院은 가장 權威있는 Shari'ah 學者들로 構成되며, 共和國評議會 議長이 指名하고, 立法議會에서 選出한다. 最高憲

法法院은 다음 問題에 對한 最終判決을 擔當한다.

- a. 憲法改正의 合憲性
- b. 法的效力을 지닌 決議案과 法令의 合憲性
- c. 共和國評議會 議長 및 委員과 首相, 長官에 對한 裁判
- d. 立法議會 委員의 選舉에 關한 紛爭審査

第 156 條

- 最高憲法法院의 院長 및 法官들은 共和國評議會 議長이 出席한 立法議會 特別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宣誓한다.

“ 나는 神의 經典과 先知者들의 律法을 遵守하고, 나의 宗教, 祖國, 國民들을 爲하여 忠誠을 다하며 共和國體制와 革命目的을 守護하고, 國家의 憲法과 法律을 尊重하며, 國民의 自由, 利益, 財產 및 尊嚴性を 重要視하고 國家의 主權과 獨立保存을 爲해 最善의 努力을 傾注하고 國家의 安全을 保衛할 것을 全知全能하신 神의 이름으로 宣誓합니다. 神께서 나의 盟誓의 證人 되리로다 ”

第 157 條

- 最高憲法法院의 決定은 官報에 發表된다. 이 決定에 對한 反對를 提起할 수 없으며, 이 決定은 國家機關 및 모든 部處와 法院에 對해 拘束力을 갖는다.

第 158 條

- 最高憲法法院의 構成節次, 運營原則은 法律로 定한다.

第 6 章：憲法改正

第 159 條

- 憲法改正은 立法議會 在籍委員의 過半數以上の 發議로 提案된다. 憲法改正決議는 立法議會 在籍委員의 3 分の 2 以上の 賛成이 있어야 한다.

第 160 條

- 憲法改正節次는 最高憲法法院의 法令으로 定한다.

第 7 章：附 則

第 1 節：總 則

第 161 條

- 예멘 아랍共和國의 首都는 사나이다.

第 162 條

- 國歌, 國旗 및 國徵은 法律로 定한다.

第 163 條

- 法律條項은 公布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法律은 公布以前에 일어난 問題에 대해서는 아무런 效力이 없다. 刑法以外的 法律은 法律에 違反되는 事項을 規定할 수 있다. 但 이 경우 立法議會 在籍委員 3 分の 2 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 164 條

- 法律은 官報를 通해 公布한다.

第 165 條

- 本憲法 發表以前에 公布된 모든 法令, 決議案, 規則 및 訓令은 本憲法에서 規定한 節次나 法律에 依據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지 않는 限, 또한 그 規定이 憲法內容에 違背되지 않는 限 有效하다.

第 2 節：暫定條項

第 166 條

- 憲法에 依據하여 立法議會選舉結果가 發表되고, 第 1 次 會議를 開催할 때까지는 1969 年の 憲法決議案 第 2 項의 規定대로 臨時立法議會가 그 職務를 遂行한다.

第 167 條

- 現 共和國評議會의 任期는 新評議會가 選出될때 까지로 한다.

第 168 條

- 國家非常事態 또는 戰爭事態가 宣布되는 경우 以外에는 本憲法의 效力을 中止시킬 수 없다.

第 169 條

- 本憲法이 發表되면 臨時憲法 및 그 改正案은 效力을 喪失한다. 本憲法 第 166 條와 第 167 條를 勘案하여, 모든 以前の 憲法은 廢止된다.

第 170 條

- 本憲法은 官報에 發表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8. 예멘人民 民主共和國憲法 (1972.5)

序 言

예멘人民과 國土의 統合을 믿고 의지하며, 예멘 人民들은 帝國主義와 植民主義 및 회교指導者와 술탄왕조의 反動的 봉건주의에 對抗하여 용감히 鬪爭했다.

예멘國土의 分割이라는 어이없는 狀況에도 南·北예멘의 共通的 民族鬪爭의 불길은 繼續되었다.

南예멘 人民들은 北예멘 人民들과 힘을 합해 회교지도자 政權을 붕괴시키고 共和國政權을 樹立했다.

北예멘 人民들도 마찬가지로 南예멘 人民들과 힘을 합해 英國植民主義者들에 對抗하여 무력투쟁을 했다.

이러한 鬪爭의 結果로, 1962年 9月 26日 革命으로 北예멘의 反動主義的 회교지도자 政權을 무너뜨리고, 모든 民族民主勢力을 統合, 共和國政權을 樹立했다.

植民主義에 對抗한 예멘 人民의 끊임없는 鬪爭의 結果, 1963年 10월 4日 英國占領軍과 술탄제국에 대한 武力革命을 단행하여, 民族解放戰線의 指導下에 모든 各界 各層의 人民들 - 勞動者, 農民, 知識人, 브르쥬아 및 高位層 人民 - 이 團結하여, 1967年 11月 30日 民族獨立을 이룩했다.

이제 비록 분단의 現實속에서도, 이 地域의 帝國主義者 및 反動분자들에게 對抗할 뿐만 아니라 분단문제의 해소와 國土統合與件마

련을 위해 南·北예멘은 共同의 鬪爭을 繼續할 것이다.

國家民主革命의 業績이 社會主義建設에 貢獻할 수 있도록 自由, 社會發展, 民主主義, 平和 및 外國과의 友好관계擴大를 希望하여, 獨立後의 政治·經濟·社會·文化的 業績을 土臺로 1969年 6月 22日의 改革措置를 起點으로 하여 民族解放戰線이 취한 措置를 效果的으로 實現하기 위하여,

이를 통해 예멘人民의 共通利益增進은 물론, 아랍 革命運動에 革命的 貢獻을 할 수 있다는 確信下에,

統合民主아랍建設을 위한 豫備的 措處로 統合民主예멘樹立을 위한 모든 단합투쟁을 支持하며,

鬪爭과 예멘人民의 努力의 結實을 強化하기 위하여,

예멘人民民主共和國 人民들은 이러한 國家民主憲法을 만들었다.

第 1 章：國家民主社會體制 및 國家體制

第 1 節：政治體制

第 1 條

- 예멘人民民主共和國은 예멘統一民主國을 指向하는 人民民主主義 共和國이다.

第 2 條

- 예멘人民은 아랍民族이며, 國籍은 하나이다.

第 3 條

- 예멘人民民主共和國의 領土는 法으로 定한다.

第 4 條

- 수도는 아덴이다.

第 5 條

- 國기의 모양은, 위로부터 빨간색, 흰색, 검은색 순으로 수평으로 배열하고, 계양대쪽에 하늘색의 삼각형이 있고, 中央에 5각형의 별이 있다.

第 6 條

- 아랍어를 國語로 한다.

第 7 條

- 勞動者들은 共和國의 모든 政治的權限을 行使해야 한다.
- 勞動者階級, 農民, 知識人, 부르조아 간의 굳건한 연계는 共和國 民主革命의 강한 政治的 土臺이다.
- 勞動者階級은 社會指導者 階級으로서의 役割을 擔當한다.

- 軍人, 女性 및 學生은 이러한 연계의 一還으로 人民生産役軍에 속한다.
- 人民民主役軍間의 연계는 民族戰線組織을 通해서 定期的으로 表明한다.
- 民族戰線組織은 科學的 社會主義를 基礎로 人民 및 人民組織의 政治活動을 주도하여 非資本家 노선인 國家民主革命 完成을 위해 社會發展을 추구한다.

第 8 條

- 國家의 目的은 人民의 搾取를 打破하기 위한 科學的 社會主義를 基礎로한 民主革命完成을 위한 社會管理에 있다.
- 이를위해 國家는 서어비스經濟로부터 外國의 구속이 없는 工業, 農業, 生産經濟에로의 經濟發展을 위한 努力을 경주한다.
- 國家는 公共所有權을 保護, 促進, 後援한다.

第 9 條

- 權限은 勞動者의 福祉向上을 위해 存在한다.
- 共和國 勞動者들은 民主的, 自主的으로 選出된 人民會議를 通해 그들의 政治的權限을 行使한다.
- 人民會議는 選舉法에 의거하여 公정한 直接總選舉를 通해 構成한다.

第 10 條

- 18 세 이상의 모든 公民은 選舉權을 갖는다.
- 選舉日現在 21 세에 달한 市民이면 누구나 地方人民會議 委員으로 選出될 수 있다.

- 選舉日現在 24 歲에 달한 者는 누구나 最高人民會議에 選出될 자격이 있다.
- 公民權이나 政治的權利를 剝奪당한자 및 勞動者의 鬪爭에 反對한 結果로 이러한 權利를 유보당한 者는 例外로 한다. 이러한 措置를 要하는 境遇, 持續期間, 관장기관 및 決定에 對한 反對意思 表示方法 等은 法으로 定한다.
- 國家일꾼도 同一한 출마권을 가지며, 이 境遇 그 公職으로부터 辭退할 必要는 없다.

第 11 條

- 國家權力機構 및 行政府는 中央集權的 民主主義 原則에 의거해 統制된다.

第 12 條

- 國家는 統一民主아랍 實現을 위한 분위기조성의 一環으로 統一民主에 對한 建設을 위해 努力한다.

第 13 條

- 國家는 유엔原則, 世界 人權宣言 및 一般的으로 認定된 國際法 規를 遵守한다.
- 植民主義와 帝國主義에 對한 民族解放運動을 支持하며, 進步的 아랍國家, 아랍民族들, 社會主義者, 進步的 平和愛護國家들과의 關係를 強化한다.
- 예멘人民民主共和國은 其他 國家들과도 平等과 相互尊重을 土臺로 協力關係를 構築하며, 第 3 國에 對해 武力을 使用하지 않는다.

第 2 節：經濟體制

第 14 條

- 國家는 人民經濟를 生産的인 經濟로 發展시키며 그 結實을 人民들 사이에 公正하게 分배한다.
- 個人은 産業 및 社會發展에 對한 貢獻도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는다.
- 社會正義實現이 國家의 基礎이다.

第 15 條

- 外國企業, 銀行 및 保險會社가 國有化되어 公共財產이 되었다.
- 國家가 設立할 國營企業體와 生產業體 및 生産協同體가 設立할 生產業體는 國家經濟發展의 核心이다. 勞動者들은 國營企業體에 參加하여 그들의 責任을 認識해야 한다.
- 國家는 共同所有權을 特別히 保護하고 發達시켜야 한다.
- 國營企業體와 共同生產業體의 理事는 國家代表委員들로 한다.

第 16 條

- 領海 및 領土內的 地上 및 地下資源과 電力資源은 國家의 財產이다.
- 國家는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國家資源을 管理한다.
- 國家는 港灣管理 및 其他 國家利益에 符合하는 業務를 遂行한다.

第 17 條

- 國家經濟는 國家經濟發展計劃에 의거하여 運用된다.

- 計劃案은 勞動者의 參與下에 마련되고 執行된다. 이것은 法的 効力을 가지며 모든 다른法에 우선한다.
- 國家計劃業務를 관장키 위해 閣僚들로 構成된 國家計劃最高會議를 設立한다.

第 18 條

- 私的所有權은 憲法에 의해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과 社會的 義務에 의해 定해진다.
- 所有權은 社會的 責任이며 그 所有權의 使用은 共同福祉에 抵觸되어서는 안된다.
- 상속권은 國家가 統制・保護한다.

第 19 條

- 술탄족, Amir 족, Sheikh 족, 과거 식민정권의 財産 및 農村改革法에 명시된 자의 所有財産은 補償없이 몰수한다. 이 土地는, 가난한 農民, 農村勞動者와 都市와 사막으로부터의 이주민들이 使用한다.
- 土地所有의 範圍는 法으로 定한다.
- 農村改革에 의해 가난한 農民, 農村勞動者 및 都市와 사막으로부터의 이주민들에게 分배된 土地는 國家에 의해 特別히 保護된다. 어느누구도 이 土地를 所有할 수 없다.
- 國家는 社會正義 原則에 立脚하여, 農村勞動者와 農民들의 參與下에 全國家的인 農村改革을 可能限한 短時日內에 施行한다.
- 國家는 農業協同體를 장려하고 國營農場을 設立한다. 土地와 財産은 國家가 管理한다.

第 20 條

- 國家는 國家經濟開發을 위해 個人生産單位를 強化한다.
- 國家는 小商人, 技術者 및 어부들로 하여금 國家經濟開發에 參與토록 격려한다.
- 國家는 이 分野에서의 協同體, 特히 所有關係가 平等한 協同體 設立을 장려한다.

第 21 條

- 國家는 對外무역을 指揮·監督한다. 또한 國內去來部門을 관장하고 이것을 國家經濟의 必須的인 部門으로 開發한다.
- 外國과의 直接的 經濟關係를 樹立하는 것은 國家의 任務이다.
- 國家는 國內去來를 獨自的으로 或은 個人部門과 協力하여, 利益을 人民들간에 公正하게 分배한다.

第 22 條

- 通貨制度和 財政制度는 國家가 決定한다.

第 23 條

- 國家는 保險과 貯蓄을 장려한다.
- 國家는 開發經濟, 社會關係에 의거하여 銀行 및 保險에 대한 責任을 진다.

第 24 條

- 外國人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한 北朝鮮共和國의 財産을 所有할 수 없다.
- 國家經濟發展에 必要的인 境遇나 國家民主解放目標과 法律에 부합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外國資本投資를 許用하지 않는다. 外國資本收入과 使用은 國家가 統制한다.

第 25 條

- 北朝鮮은 經濟主體이다.

第3節：社會·文化體制

第26條

- 國家는 勞動者階級을 保護하며 經濟諸般分野에서 대우를 높인다.
- 國家는 經濟開發을 通하여 生産構造에 대한 人民의 參與를 增大시킨다.

第27條

- 國家는 民主革命의 重要한 일환으로 革命의 要求와 利益에 副應하는 一般教育을 擔當한다.
- 國家는 科學 및 藝術振興을 위한 모든 支援을 하며, 科學, 技術發明과 藝術品의 創作을 장려하고, 保護한다.
- 一般教育이 社會發展의 基礎이며, 모든 人民은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28條

- 國家는 청년을 保護하며, 그들에게 政治的, 文化的, 이데올로기 및 體育教育을 提供한다. 이를 위해 青年組織과 클럽을 育成한다.

第29條

- 家庭을 國家의 支援을 받고 어머니와 어린이는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 國家는 家庭이 그 의무를 遂行할 수 있도록 必要한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措處를 取해야 한다.

第30條

- 國家는 落後地域의 生活水準을 점차 向上시키고, 문맹을 퇴치하여 모든 人民들이 同一한 水準의 生活을 영위하게 한다.

第31條

- 古蹟과 이슬람의 유산을 保護한다.
- 人間文化를 장려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병폐 및 낡은 부족제도과 地方色을 社會로부터 일소하여 國家民主革命遂行을 위한 民族文化를 創造한다.

第32條

- 正義과 人本主義를 土臺로한 平和구현을 위해 民族文化를 장려한다. 進步的 民族유산을 부흥시켜 國家民主革命 力量을 높인다. 이를 위해 도서관 및 文化研究所를 設立하고, 學會設立을 獎勵한다.

第2章：公民과 組織

第1節：公民의 基本權 및 義務

第33條

- 公民의 基本權利 및 義務는 本憲法에 規定된 政治·經濟·社會·文化的 關係의 表示이며, 이것을 遂行함으로써 勞動者는 政治活動을 增加시키며, 社會正義가 保障된다.
- 公民의 基本權利는 國家民主革命目的에 符合하도록 遂行되어야 한다.

第34條

- 人種·血通·宗教·言語·教育水準 및 社會的地位에 關係없이 모든 公民은 權利와 義務에 있어서 平等하다.
- 모든 公民들은 法앞에서 平等하다.
- 國家는 同等한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機會를 提供함으로써 平等保障을 위해 最善을 다해야 한다.

第35條

- 勞動은 모든 人民의 權利이자 義務이다.
- 國家는 國家經濟發展, 國民所得向上 및 民主的勞動條件 導入을 通해 모든 公民에게 勞動의 權利를 確保해야 한다. 勞動者는 民主的勞動條件創造를 위해 特히 勞動組合과 協同體를 通해서 能率的으로 일해야 한다.
- 勞動은 法律로 定한다. 勞動者에게 適正賃金を 保障하고, 獨

單的解雇을 防止하고, 老後保障을 위해서 賃金制度 및 社會保障
制度를 法律로 定한다.

- 어느公民도 그의 職務 遂行으로부터 禁止當하지 아니한다.

第 36 條

- 政治·經濟·社會等 모든 分野에 걸쳐 男女平等이 保障되며,
이를 爲해 必要한 여건을 漸次的으로 마련한다.

- 作業熟練을 爲해 女性勞動者를 特別히 保護한다.

國家는 女性, 特別히 女性勞動者와 어린이들을 特別히 保護하
고, 妊産婦의 境遇 法律이 定한대로 休暇를 주고 俸給도 주
어야 한다.

또한 法律이 定한대로 託兒所와 幼稚園 및 其他 保護所를
設置한다.

- 國家는 革命鬪士家族들을 特別히 保護해야 한다.

第 37 條

- 모든 公民은 教育에 對한 平等한 權利를 갖는다.

- 國家는 社會的 狀況으로 因해 教育에 對한 權利를 剝奪當한
者들을 特別히 保護해야 한다.

- 國家는 漸次的으로 文盲을 退治하고 學校, 大學校 및 文化·
教育研究所設立計劃을 마련한다.

- 以外에 國家는 無料義務教育의 一般化를 爲해 努力한다.

第 38 條

- 모든 公民은 憲法에 規定된 原則에 依據하여, 共和國全分野,

政府・幹部會・都市 및 시골의 國家民主革命遂行을 爲한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計劃에 參與할 權利를 갖는다.

- 모든 公民은 不平 및 提案을 直接 或은 社會組織을 通해 行政部處에 提起할 權利가 있다.

第 39 條

- 個人的自由는 保障된다.
- 犯罪行爲와 關聯해서만 逮捕가 可能하고 반드시 法에 基礎를 두어야 한다.
- 審問을 받을동안 어느누구도 拷問을 받지 않으며 非人間的인 취급을 當해서는 안된다.
- 體刑은 禁止되어 있다.

第 40 條

- 個人은 刑事上의 責任을 진다.
- 個人이 刑事上責任을 지는 境遇는 法律로 定한다.

第 41 條

- 法이 公布되기 前에 發生한 行爲에 對해서 刑罰을 가할 수 없다.
法律에 根據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刑罰도 가할 수 없다.
- 殘酷하고 非人間的인 刑罰을 加해서는 안된다.
- 合法的인 管轄法院에 依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自由를 구속하는 刑罰을 가할 수 없다.

第 42 條

- 모든 公民은 그의 法的權利와 利益을 保護하기 위해 法院에 呼訴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 自己抗辯이 保障된다.
- 國家는 가난한 者에게 法院에 呼訴할 方法과 방어수단을 提供해 주어야 한다.

第 43 條

- 法律에 規定한 境遇에 依據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國籍을 剝奪當하지 아니한다.

第 44 條

- 家庭의 神圣한 權利는 法律에 依해 保護된다.
- 革命의 安全에 影響을 미치는 조처와 關聯된 境遇와 法律에 依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 家庭의 神圣함을 침해 할 수 없다.

第 45 條

- 通信文을 비롯한 모든 傳達手段은 秘密이 保障된다.
但, 法律에 規定된 境遇나 國家와 社會安全을 保護하기 爲한 刑事的措置인 境遇는 例外로 한다.

第 46 條

- 國家의 宗教는 이슬람教이다.
- 다른 宗教에 對한 自由도 保障된다.
- 憲法原則에 違背되지 않는한 宗教 및 慣習에 따른 믿음의

自由는 保障된다.

第 47 條

- 憲法目的에 依據하여, 國家는 科學研究 및 文學·藝術·文化分野의 業績을 尊重하며, 이 業績達成을 爲한 手段을 提供해 주어야 한다.
- 말, 글, 그림 및 다른 手段에 依한 의사표현의 自由가 保障된다.
- 國家의 民主秩序를 強化하고 公民의 自由와 尊嚴性을 해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公衆道德 및 國家安保를 維持하기 爲하여 言論·出版 및 정보매체의 自由를 法律로 規定한다.

第 48 條

- 公民은 憲法精神에 입각하여 集會 및 시위의 權利를 갖는다.

第 49 條

- 모든 公民은 治療를 받을 權利가 있다.
- 國家는 病院·保健所를 設置하고 醫사를 確保하고, 無料保健事業을 施行하고 公民들에게 保健教育을 實施함으로써 이러한 權利를 保障해 준다.

第 50 條

- 共和國內에서의 이주는 保障된다. 但, 法律에서 規定된 境遇와 國家安保 및 公共保健保護를 爲해 必要한 境遇는 例外로 한다.
- 出入國과 移民은 法律로 定한다.

第 51 條

- 모든 公民은 國家, 獨立, 통합 및 民主秩序를 保護할 義務가 있다.

第 52 條

- 모든 公民은 國家所有權을 國家民主革命의 必須的인 物質的 토대로 保護해야 한다.

第 53 條

- 公共業務는 特別한 의무이며 영광이다. 이를 擔當하는 者는 정직하고 最大限 効率的으로 業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法을 遵守하고 全體利益을 優先으로 해야한다.
- 公共業務의 遂行條件, 公務員의 責任 및 公民에 對한 國家의 責任等은 法律로 定한다.

第 54 條

- 모든 公民은 그의 能力에 따라 社會所得增進에 공헌해야 한다.
- 國家는 公民의 所得에 따라 稅金 徵收額을 定한다.

第 55 條

- 南예멘人民共和國公民은 어느 누구도 外國에 향복해서는 안된다.
- 外國人이 國家 및 社會解放과 本憲法原則을 爲한 鬪爭때문에 外國에서 박해를 받을 경우 그에게 政治的亡命을 許用할 수 있다.

第 2 節：組織과 權利

第 56 條

- 國家는 憲法의 目的을 구현하고 勞動者의 政治·經濟·社會 活動을 增大시키는 社會組織의 自發的集會의 權利를 保障한다. 이들 組織은 共和國 或은 政府傘下에 둔다.

第 57 條

- 勞動組合은 勞動者의 利益을 代表하는 社會組織이다.
- 勞動組合은 그들의 利益保護 및 構成員의 民主意識鼓吹等を 擔當한다.
- 勞動組合은 經濟計劃의 實現, 訓練 및 전문역량의 向上, 公共 所有權의 保護를 爲해 組合員을 動員하여 國家民主革命에 參加해야 한다.
- 勞動者는 國有化된 企業 및 公共企業運營에 參加할 權利를 勞動組合을 通해서 行使한다. 勞動組合은 社會的機能을 遂行 함으로써 集團勞動協定을 締結하고, 給料 및 物質的刺戟을 決定하며, 노동규율을 遵守하며, 社會保障制度를 監督하고, 組合員의 作業時間 및 休息時間을 定하며, 勞動者의 住宅問題 및 勞動으로부터 야기되는 분쟁해결을 관장한다.

第 58 條

- 女性團體는 女性의 政治意識鼓吹를 目的으로 모든 女性 및 少女들을 규합하여 家庭에서의 教育的·文化的義務遂行을 通하여 社會에서 生産的役割을 擔當할 수 있게 해야하며, 男性과

同等하게 憲法에 規定한 權利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第 59 條

- 青年同盟은 學生, 青年勞動者, 農民, 知識人으로 構成된다.
이 組織은 訓練·教育·文化 및 勞動者의 鬪爭을 擔當하여 國家民主革命을 遂行한다.
- 同組織은 國家民主革命目的에 依據하여 構成員들의 政治意識을 鼓吹시키며 그들의 科學·技術·娛樂教育을 支援한다.
- 同組織은 人民의 一般的問題解決에 參與한다.
- 또한 文盲 및 後進성 타파에 最善의 역량을 경주하며 構成員들이 여가시간을 利用하여 人民奉仕 및 問題解決에 參與하도록 해야한다.

第 60 條

- 農民들이 勞動을 圓滑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其他 組織의 設立 및 人民을 爲한 文化·科學·藝術 및 娛樂分野의 組織 設置可能性에 對해서는 法律로 定한다.
이런組織의 主要機能은 憲法原則에 依據하여 法律로 定한다.

第 61 條

- 自發的加入을 原則으로 하는 協同體는 生産性 向上을 目的으로 한다. 協同體는 國家經濟開發 協同體所有權保護, 會員의 意識鼓吹等を 擔當한다.
- 이 協同體의 形態 및 構成方法은 法律로써 定한다.
活動 및 管理·統制方法도 法律로 定한다. 이러한 法律은 協同體憲章의 基礎가 된다.

第 3 章：國家機構

第 62 條

- 예멘人民民主共和國의 國家 權力은 勞動者의 힘에 依存한다.
- 憲法의 機能과 目的에 依據하여 人民이 選出한 議會와 人民의 뜻에 따라 形成된 機構를 通하여 國家權力이 行事된다.

第 1 節：最高人民會議

第 63 條

- 最高人民會議는 最高國家權力機關이다.
最高人民會議는 國政原則을 決定하고 政府 및 社會機構를 通해 이를 執行하는 憲法上의 機構이다.
- 最高人民會議는 法律을 公布하고 共和國開發政策 決定을 한다.
同決定은 모든 人民에 대해 拘束力을 갖는다.

第 64 條

- 最高人民會議는 國家의 對內外政策에 關한 基本問題를 協議하고 決定한다. 最高人民會議는 意思決定을 通해 예멘 人民民主共和國의 國家民主革命 完成與件을 마련한다.
- 이를 土臺로, 最高人民會議는 大統領評議會와 內閣의 全般의 政策決定을 擔當한다.

第 65 條 ...

- 最高人民會議는 國家가 樹立하는 國家經濟開發計劃을 協議·決定한다. 이 決定은 法的 効力을 갖는다.

- 最高人民會議은 年間計劃의 執行에 關한 大統領評議會 및 內閣의 報告를 協議하고 內閣이 提出하는 年間 豫算 및 豫算 修正案을 承認하며, 國家決算도 承認한다.
- 新年度豫算이 承認되기 前에는 前年度豫算을 土臺로 事業을 推進한다.

第 66 條

- 最高人民會議은 다음 事項을 承認한다.
 - 防衛・同盟・平和에 關한 國際間 政治協定
 - 國際的 經濟協定
 - 共和國의 領土變更
 - 國家의 財政契約
 - 立法化될 協定
- 이러한 協定의 執行을 爲해서는 法令으로 公布되어야 한다.
- 이 協定은 法律에 依하지 않고서는 改正 또는 取消될 수 없다.

第 67 條

- 非常事態는 大統領評議會에서 宣布하며, 반드시 最高人民會議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 最高人民會議은 法律에 依據하여 非常事態 동안의 大統領評議會 및 內閣의 特別權限을 規定한다.

第 68 條

- 最高人民會議은 101 名의 委員으로 構成되며, 選舉法에 依據하여 公正한 直接總選舉를 通해 選出된다.

第 69 條

- 最高人民會議 委員은 最高人民會議 第 1 次 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宣誓한다.

“ 나는 예멘人民民主共和國의 國家 民主革命課業을 爲해 誠實하고, 獻身的이며 忠誠을 다하여 努力하고, 憲法과 法律을 遵守하며, 人民과 國家의 利益을 保護하며, 國家의 自由, 獨立 및 統一을 守護하기 爲하여 最善을 다할것을 전지전능하신 神과 國家앞에 嚴肅히 宣誓합니다.”

第 70 條

- 最高人民會議는 委員들의 資格의 正當性 問題를 決定한다.
最高人民會議는 決定에 앞서 選舉에 대한 異議事項을 人民檢察院에 回附하여 審의토록 한다.
- 最高人民會議 委員中 出席委員의 3 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資格을 剝奪한다.

第 71 條

- 最高人民會議는 第 1 次會議時에 委員들 中에서 常任委員會 委員을 選出한다.
- 選舉管理委員長은 最高齡者로 한다.
- 常任委員會는 委員長(1 人), 秘書長(1 人), 委員(3 人)으로 構成된다.
- 常任委員會는 憲法에 規定된 任務以外에 最高人民會議를 主管한다.
- 其他 諸任務는 訓令으로 規定한다.

第 72 條

- 最高人民會議은 法律草案審議 및 憲法違反 問題를 擔當할 委員會를 設置한다.
- 同委員會는 國家와 經濟機構의 法律適用問題를 檢討한다.
- 委員會의 數와 後屬節次는 訓令으로 한다.

第 73 條

- 最高人民會議은 다음 問題들을 擔當한다.
 1. 國有化·沒收·所有權의 最大限界
 2. 公共分野의 組織
 3. 產業關係 및 社會保障
 4. 所有權 및 公民關係 商業關係
 5. 貨幣機構
 6. 財政業務, 國庫支出方法, 人民에 對한 財政的 公約
 7. 債務變制, 國富 및 資源의 利用
 8. 國家豫算支出
 9. 兵役義務 및 國防一般原則
 10. 犯罪, 形罰 및 刑事的 節次
 11. 一般赦免
 12. 國籍
 13. 選舉制度
 14. 司法機構 設置 및 司法制度
 15. 地方政府體制 및 地方行政
 16. 公民權 및 個人的 安全

17. 勞動組合, 協同體, 組合 및 其他 團體

18. 大統領評議會 議長 및 그 委員, 閣僚會議 總理 및 委員의 俸給 決定

19. 俸給, 年金, 補償, 下賜金支給

- 이 問題들을 最高人民會議에서 據論할 時期는 大統領評議會가 制定한 法律로 定하는데, 最高人民會議 開會中에 次欺會議에서 承認할 問題들을 提出하여야 한다. 만약 最高人民會議에서 過半數 以上の 承認을 받지 못할 경우, 그 法律은 取消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 74 條

- 大統領評議會와 閣僚會議는 法律案을 直接 提案할 수 있다. 最高人民會議 委員들도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는데 이 경우 委員의 3분의 1 以上이 同意해야 한다.
- 大統領評議會 或은 閣僚會議에서 提出한 法律案은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를 거쳐 關係委員會에 回附되며, 關係委員會는 이를 檢討한 후 그 結果를 最高人民會議에 報告해야 한다.
- 政府機構 法律로 規定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問題들과 關聯하여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에 提案을 할 수 있다.
- 最高人民會議 委員 및 政府機構가 提出한 法律案은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를 通해 憲法·法律委員會에 回附되며, 委員會는 그 法律案을 最高人民會議에서 考憲할 性格인지 아닌지 與否를 檢討한다.
最高人民會議에서 考憲할 問題로 決定된 境遇, 그 法律案은

關係委員會에 提出되고, 關係委員會는 決定事項을 最高人民會議에 報告한다.

- 最高人民會議나 政府機構가 提案한 法律案이 最高人民會議에서 否決된 경우, 그 法案은 1.年이 經過할 때까지는 最高人民會議에 다시 提出될 수 없다.

第 75 條

- 最高人民會議 및 大統領評議會에서 批准한 法律은 大統領評議會 議長이 1個月以內에 官報를 通해 公表한다.
- 特別한 規定이 없는한 이 法律은 公表後 14日만에 効力を 發生한다.

第 76 條

- 最高人民會議는 大統領評議會 議長과 委員을 選出한다.
- 大統領評議會는 最高人民會議에서 그 業務報告를 해야 한다.
- 最高人民會議는 委員 3분의 1 以上の 要請으로 大統領評議會를 改革하거나 委員을 解任시킬 수 있다. 이 問題는 最高人民會議 委員 過半數 以上の 贊成으로 決定된다.
- 大統領評議會 議長이 解任되는 경우, 大統領評議會는 辭任을 해야 한다.

第 77 條

- 最高人民會議는 大統領評議會의 提請으로 閣僚會議(內閣)總理와 委員을 選出한다. 閣僚會議는 最高人民會議에 責任이 있고 答辯에 應해야 한다.
- 閣僚會議 委員도 最高人民會議에 對해 個人的으로 責任이 있

으며, 質問에 談辯해야 한다.

- 閣僚會議 委員의 過半數는 最高人民會議 委員이어야 한다.
- 閣僚會議 選舉가 끝난후에 總理는 任期期間中の 閣僚會議 業務計劃報告書를 提出해야 한다.
- 最高人民會議는 閣僚會議의 業務를 監督한다.
- 最高人民會議는 閣僚會議의 業務計劃과 報告를 協議하고, 總理와 委員에게 그들의 業務에 關한 質問을 할 수 있다. 또한 最高人民會議는 質問에 應할 關係長官의 出席을 要求할 수도 있다.
- 最高人民會議는 內閣의 總理 및 閣僚에 對한 解任을 決議할 수 있다. 總理解任을 決議한 境遇, 內閣은 總 辭退를 해야 한다. 閣僚解任 決議의 경우는 該當長官만 解任된다.
- 그러나 解任投票는 最高人民會議 委員의 3분의 1 以上の 要請이 있을 경우에만 實施되고, 出席委員의 過半數 以上の 贊成으로 可決된다.
- 全體回期中 總理에 對한 解任決定이 두차례 以上 이루어진 경우, 最高人民會議가 解散되고 새로운 選舉를 實施한다.

第 78 條

- 最高人民會議의 任期는 第 1 次會議 開會時부터 3 年으로 한다.
- 次期 最高人民會議 委員選舉는 任期滿了前 마지막 6 日 동안에 實施한다. 最高人民會議는 새로 選出된 最高人民會議가 召集될 때까지 任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 大統領評議會가 同選舉를 要請하고 監督한다.

第 79 條

- 最高人民會議가 非常事態時에 任期가 滿了되는 경우, 過半數 以上의 贊成 또는 大統領評議會의 決議로 그 任期를 非常事態 終了時까지 延長할 수 있다.

第 80 條

- 大統領評議會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와 合意하여 最高人民會議의 召集을 要求하며, 議題를 마련한다.
- 閣僚會議 또는 最高人民會議 委員의 3분의 1은 最高人民會議 召集을 大統領評議會에 要求할 수 있다.
- 大統領評議會 委員 또는 閣僚에 대한 不信任投票를 提案한 最高人民會議는 決定이 이루어질때까지 閉會할 수 없다.

第 81 條

- 最高人民會議는 訓令에 依據하여 委員들中에서 特別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다.
- 最高人民會議는 委員들 中에서 社會問題 質疑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다. 質疑委員會는 證據提示時에 모든 關係當事者들의 意見を 들어보아야 한다. 質疑委員會는 그들 調査結果를 最高人民會議에 提出하고, 最高人民會議가 決定을 내린다.

第 82 條

- 最高人民會議는 會議狀況을 公開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大統領評議會, 閣僚會議 또는 最高人民會議 委員의 4분의 1 以上의 要請이 있을 경우 秘密會議를 열 수 있다.
- 公開會議 및 秘密會議 與否는 最高人民會議가 決定한다.

第 83 條

- 最高人民會議은 委員의 過半數 以上の 出席으로 開會되며, 憲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出席委員 過半數 以上の 贊成으로 決定한다.
- 可否同數일 경우, 그 議案은 否決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 84 條

- 最高人民會議 委員은 最高人民會議에서나 委員會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에 대해 問責받지 아니한다.
- 最高人民會議 委員은 最高人民會議의 同意없이 刑事上의 處罰을 받지 아니한다. 會期中이 아닌 경우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에서 同意를 대신할 수 있다. 但, 次期會議時 最高人民會議가 承認할 것을 條件으로 한다.

第 85 條

-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의 要求가 없는 한 軍人은 絶대로 最高人民會議建物에 出入할 수 없다.

第 86 條

- 最高人民會議 委員은 人民의 國家利益을 代表한다.
- 委員은 有權者들의 提案과 意見을 받아들이고, 質問에 眞實하게 對答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는 有權者들에게 國家民主革命, 예멘과 아랍을 비롯한 世界の 民主的 鬭爭의 目的에 對한 意識을 鼓吹시켜야 한다.

第 87 條

- 選舉區 有權者들은 그 選舉區를 代表하는 最高人民會議 委員

의 解任을 決定할 수 있다. 이 경우 選舉人의 4분의 1 以上の 贊成으로 解任을 要求할 수 있으며, 最高人民會議은 過半數 以上の 贊成으로 解任을 決議한다.

第 88 條

- 最高人民會議만이 委員들의 辭表 受理問題를 管掌한다.

第 89 條

- 最高人民會議의 報酬는 法律로 定한다.

第 90 條

- 最高人民會議 解體決議는 大統領評議會 또는 最高人民會議 在籍委員의 3분의 1 以上の 發議에 依하여, 在籍委員 3분의 2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 2 節：大統領評議會

第 91 條

- 大統領評議會는 最高人民會議의 한 機構로서 最高人民會議가 開催되지 않는 동안 憲法과 法律에서 정한 基本的業務 및 最高人民會議 決議事項을 遂行한다.

第 92 條

- 大統領評議會는 다음의 職權을 行使한다.
 1. 對內 外的으로 共和國을 代表
 2. 最高人民會議 및 地方人民會議選舉日字決定 및 選舉監督
 3. 總理 및 閣僚指名

4. 最高軍事評議會委員任命
5. 法律案의 提議
6. 最高人民會議와 大統領評議會가 의결한 法律의 公布·出版 및 執行命令
7. 國家指導級官僚의 任免
8. 軍隊階級의 設定 및 國軍과 保安部隊指導者任命
9. 大法院法官任命·檢察院長任命 및 監督
10. 法律에서 정한 各種 勳章受與 및 外國에 의한 勳章受與承認
11. 最高人民會議의 承認을 要하지 않는 國際條約 및 協定의 承認
12. 外國公館의 設置 및 外國駐在 外交官의 免職
13. 外國 外交官에 대한 信任狀受與
14. 一般赦免, 刑의 免除 및 減免
15. 政治的亡命의 許容
16. 國家의 內·外的 安全이 威脅을 받을時 國家非常事態 및 總動員令의 宣布
17. 外侵의 威脅이 있을 時 防禦事態의 宣布

第 93 條

○ 大統領評議會는 議長(chairman) 1人, 2~6人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議長과 委員들은 最高人民會議 第1次會議에서 委員중에서 選出된다.

大統領評議會는 그 委員중에서 1~2人의 副主席을 選出할 수 있다.

- 最高人民會議選舉가 새로 實施될 때 大統領評議會도 새로 構成되며, 이때 大統領評議會가 새로 構成될때까지 既存評議會가 계속 任務를 遂行한다.

第 94 條

- 議長은 大統領評議會 職務를 遂行하며, 評議會議決事項에 署名한다.

第 95 條

- 大統領評議會議長은 對外關係에 있어서 共和國을 代表한다.

第 96 條

- 大統領評議會議長 및 委員들은 그들의 任務遂行에 앞서 評議會訓令에서 規定한 형식에 의거하여 最高人民會議에서 宣誓를 해야 한다.

第 97 條

- 大統領評議會는 議長을 통해서 內閣의 責任業務執行結果에 대한 總理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第 98 條

- 大統領評議會는 對內外政策에 관한 意見を 最高人民會議에 通報하여야 한다. 大統領評議會는 最高人民會議에 特定問題에 관한 討議 및 決議案承認을을 提議할 수 있다.

第 99 條

- 大統領評議會 議長과 委員을 最高人民會議에 사표를 提出할 수

있다. 辭表受理決定은 最高人民會議의 在籍 3 分の 2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 議長의 辭表가 受理되는 경우 大統領評議會 全委員이 辭任해야 한다.

第 100 條

- 大統領評議會 議長과 最高人民會議委員들은 任期期間中 自由貿易, 商業 및 産業去來, 國有財産의 買入, 賃借, 賣却 및 自己財産과 의 交換등의 行爲를 할 수 없다.

第 3 節：閣僚會議(內閣)

第 101 條

- 閣僚會議는 國家最高의 行政執行機構이다.
- 閣僚會議는 總理와 閣僚들로 構成된다.
- 副總理와 閣僚의 任期는 閣僚會議에서 정한다.

第 102 條

- 閣僚會議는 最高人民會議에서 規定한바에 따라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國防分野의 國家政策을 執行한다.
- 全 閣僚가 全體的 責任을 지며, 또한 各 閣僚는 自己自身の 分野에도 責任을 진다.

第 103 條

- 閣僚會議는 다음의 職權을 行使한다.
 1. 對外政策의 方向提議
 2. 最高人民會議에 대한 法律案의 提出
 3. 國家經濟計劃案과 年間豫算의 作成 및 執行

4. 最高人民會議 國家企劃委員 任命
5. 國家決算의 作成
6. 憲法에서 定한 管轄權에 依據하여 國際條約 및 最高人民會議
或은 大統領評議會에 提出하기 전에 事前 承認
7. 國家의 內外的 安全保護 및 公民의 權利保護
8. 內閣, 行政機構, 研究所, 政府機構등의 業務指揮 및 調整, 監督
9. 指導級官僚의 任免, 移動 및 懲戒, 國家機構內의 幹部政策監督

第 104 條

- 閣僚會議에 決議는 閣僚 및 委員들에 대해 拘束力을 갖는다.
決議案은 어떤일이 있어도 執行되어야 한다. 閣僚, 委員, 副委員
들은 閣僚會議에 責任이 있고, 質疑에 應答할 수 있다.

第 105 條

- 總理는 閣僚會議의 職務를 遂行하고 閣僚會議의 長이 된다.
- 總理는 全盤的政策執行과 關聯된 모든 問題에 있어서 閣僚會議
를 代表한다.
- 總理는 閣僚會議 決議事項의 執行을 監督한다.

第 106 條

- 總理는 閣僚에게 各 部處 및 그 任務事項에 관한 報告를 要
求할 수 있고, 閣僚는 반드시 報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 107 條

- 各 閣僚는 自己 部處의 業務를 監督하며, 閣僚會議의 政策을
自己部處에서 執行한다.
- 閣僚會議에서 各 閣僚는 自己部處의 所管業務에 責任을 진다.

- 閣僚가 法律執行에 必要한 訓令을 通過시킬 수 있는 경우는 法律로 정한다. 閣僚會議은 不適合하다고 생각하는 閣僚의 訓令을 수정 또는 廢止할 수 있다.

第 108 條

- 所管部處의 訓令에 의한 職員의 任免, 移動, 懲戒에 관해서는 法律로 정한다.

第 109 條

- 閣僚會議 總理와 委員들은 大統領評議會에서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의 參席下에 最高人民會議 委員과 같은 內容의 宣誓를 해야 한다.

第 110 條

- 總理는 閣僚會議의 責任을 遂行할 수 없을 경우 大統領評議會에 辭表를 提出한다.
- 大統領評議會는 辭表를 意見書와 함께 最高人民會議에 送付한다. 最高人民會議의 總理辭表決議는 在籍委員 3 分の 2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 閣僚는 總理에게 辭表를 提出하고, 最高人民會議에서 在籍委員 過半數以上の 贊成으로 決議한다.
- 總理와 閣僚의 過半數가 辭表를 提出할 경우, 最高人民會議는 在籍委員 3 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決議하며, 이 경우 全體 閣僚가 辭任해야 한다.
- 閣僚會議의 任期는 新最高人民會議가 選出될 때 滿了된다. 閣僚會議는 新閣僚會議가 選出될 때까지 職務를 遂行해야 한다.

第 111 條

- 總理는 閣僚들과의 協力이 不可能하다고 判斷될 경우 이 問題를 閣僚會議에 上程해서 適切한 措處를 취하거나 最高人民會議로 하여금 措處를 취하도록 提案을 할 수 있다.

第 112 條

- 第 100 條의 禁止事項은 總理와 閣僚들에게도 그들의 任期期間中 適用된다.

第 4 節：地方機構와 行政

第 113 條

- 地方機構는 예멘人民民主共和國의 國家權力機構의 하나이다. 民主的 中央執權을 토대로 하는 地方機構와 그 行政은 法律로 定한다.

第 114 條

- 地方行政을 執行・統制하는 國家의 地方機構인 地方人民議會의 設立은 法律로 定한다. 地方人民議會의 立法 및 統制에 있어서의 職務, 權限, 義務는 法律로 定한다. 政治, 經濟, 社會關係의 發展에 발맞추어 國家權限을 自由, 平等, 直接總選舉를 통해 選出된 人民議會에 漸進적으로 이양하는것이 法律의 目的으로 한다.

第 115 條

- 예멘人民民主共和國 地方權限은 政府機關, 行政區域에서 行使된다. 行政區域分割은 法律에 의거하여 修正 또는 調整될 수 있다.

第 4 章：民主法律과 裁判

第 116 條

- 法律과 法的節次는 憲法의 內容과 精神에 일치해야 한다. 民主的法律이 國家에 의해 保障된다.
- 大統領評議會와 閣僚會議에서 통과되는 決議案은 法律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法律의 公布는 最大의 宣傳을 기할 수 있도록 法律로 定한다.

第 117 條

- 司法部는 예멘人民民主共和國의 社會體制 및 國家體制를 保護하고, 發展시켜야 한다.
- 司法部는 民主法律을 적용해야 하며 公民의 自由와 平和的인 生活, 權利, 利益 및 人間의 尊嚴性을 保護해야 한다.

第 118 條

- 예멘人民民主共和國은 法律에 依據하여 設置된 法院을 통해 裁判을 實施한다.
- 國家는 共和國大法院을 設置한다.
- 司法部長은 모든 法院의 裁判을 監督한다.
- 法으로 規定되어 있는 경우 特殊法院을 둘 수 있다. 特殊法院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軍事評議會와 軍法會議의 設置
 2. 國家經濟計劃, 商業 및 經濟問題에 관한 法院 및 仲裁裁判所
- 人民法院은 法律의 정한대로 그 職務를 綜合적으로 遂行한다.
- 閣僚會議는 人民法院의 裁判을 監督한다.

第 119 條

- 國家는 正義의 일관성을 保障해야 하며, 民主民法, 勞動法, 家族法, 刑法을 이러한 法律의 原則에 依據하여 公布하여야 한다.
- 國家는 民主的司法機構와 民主的節次導入에 의하여 公民의 訴訟을 迅速하고, 公正하고, 民主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第 120 條

- 法官은 人格과 職務遂行을 통해서 憲法原則에 依據하여 그들의 任務를 遂行한다는 確信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第 121 條

- 法官은 독자적인 裁判權을 가지되 民主的裁判을 위하여 憲法, 法律 其他 적절한 法的節次에 依據한 判決을 해야한다.
- 法律이나 法的節次가 制定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는 獨立以前에 制定된 法律 및 法的節次가 憲法의 原則과 相衝되는 경우 法官은 憲法精神과 國家民主原則에 依據해서 判決을 내린다.

第 122 條

- 法院은 判決을 내리고 判決은 人民의 이름으로 公布된다.
- 法律에서 定한 경우, 紛爭의 性格上 必要한 경우, 國家나 社會道德의 安全이 危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裁判은 公開되어야 한다.

第 123 條

- 國家는 보다 많은 公民들이 裁判에 參與케 해야 한다.
- 勞動者의 裁判參席에 관한 具體的内容은 法律로 定한다.

第 124 條

- 檢察院長은 法罪豫防에 힘쓰고 法罪者들을 裁判에 召喚해야 한다.

또한 그는 留置場 및 保護所에서의 法律遵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檢察院場의 上記 職務에 대해 司法部에 責任을 지며 또한 質問에 應해야 한다.
- 大統領評議會는 檢察院長의 職務를 統制한다.
- 選舉의 妥當性에 대한 抗訴의 경우, 憲法 70 條에 依據하여 檢察院長은 最高人民會議에 그의 議見을 陳述해야 한다.
- 檢察院長의 其他任務는 法律로 定한다.

第 5 章：國防과 安保

第 125 條

- 國軍, 保安部隊 및 人民軍은 公海, 領海, 領土에서 예멘 人民民主共和國의 主權을 保護해야 한다.
 - 國家의 防禦, 社會民主秩序의 保護, 公民의 平和的 生活은 國家가 擔當해야 한다.
 - 國軍, 保安部隊 및 人民軍은 어떠한 攻擊에 대해서도 人民의 國家民主業績을 保護해야 한다.
- 國軍의 保安部隊는 國土建設에 참여한다.

第 126 條

- 國軍의 設立, 組織, 兵役義務에 대해서는 法律로 定한다.
- 國家는 政治的, 軍事的으로 國軍을 強化해야 한다.

第 127 條

- 國軍司令官은 大統領評議會에서 任命하되 司令官이 尙상 그의 職務遂行에 責任을 完遂할 것을 條件으로 한다.

司令官의 義務는 法律로 定한다.

- 國軍司令官은 大統領評議會의 決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면직될 수 없다.

第 128 條

- 國家保衛問題를 取扱하고 國家資源을 動員하며, 國防의 要求에 對應하기 위하여 國防最高委員會를 둔다.
- 國防最高委員會는 大統領評議會의 決議로 設置된다.
- 防禦事態時의 國防最高委員會의 任務는 法律로 定한다.

第 129 條

- 保安部隊의 設置 및 組織은 法律로 定한다.
- 國家는 政治的, 軍事的으로 保安部隊를 強化해야 한다.
- 人民軍의 設置는 法律로 定한다.

第 130 條

- 總司令部는 1年동안 臨時最高人民會議를 設置하여 憲法에 規定한 最高人民會議의 職權을 行事할 수 있다.

第 6 章 : 附 則

第 131 條

- 民族解放機構와 民主國家權力機構에 의해 통과된 모든 法律과 決議案은 憲法의 規定에 의거하여 變更 또는 廢止되지 않는한 有效하다.
- 民族解放戰線機構의 總司令部나 國家의 命令으로 構成된 機構 및 法院의 決議案을 保護할 目的으로 採擇된 모든 決議文, 訓令, 節次, 措處는 憲法의 規定에 의거한 最高人民會議의 特別한 決

정이 없는한 어떤 機構에 의해서도 어떠한 경우라도 비난받거나 改正 廢止되지 아니한다.

第 132 條

- 憲法規定의 變更은 最高人民會議의 在籍委員의 3 分の 1 의 要請이나 閣僚會議 또는 大統領評議會의 要請으로 可能하다.
- 이 경우 修正이 必要한 條項 및 事由를 明示해야 한다.
- 最高人民會議는 改正案을 協議하고, 憲法改正案의 決議는 出席委員의 3 分の 2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 133 條

- 政治組織의 指導部인 總司令部, 卽 民族戰線이 最高人民會議의 選舉要求의 最高責任部이다.
- 大統領評議會와 內閣은 憲法에 의거하여 新大統領評議會와 內閣이 새로 選出될때까지 그들 任務를 遂行한다.

第 134 條

- 第 130 條와 同

第 135 條

- 本 憲法은 直接的으로 拘束力이 있는 法律이다.